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06. 5.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목 차

제 I 장 총괄편	1
1. 2006년도 시행계획 개요	2
가. 추진배경	2
나. 2006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3
2. 2006년도 주요 추진목표	4
3. 2006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방향	6
가. 복지기반 확충	7
나. 교육여건 개선	13
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18
라.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26
4. 2006년도 투융자 계획	33
5. 점검·평가	34
6. 기대효과	35

< 참고 >

-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사업별 투융자 계획

제Ⅱ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40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41
가.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41
나.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53
다.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	74
라.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98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110
가.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110
나.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	139
다.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156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174
가. 인적역량 강화	174
나.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 개발	177
다. 기초생활여건 개선	192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257
가. 향토산업의 진흥	257
나.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구축 및 활성화	267
다.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299
라. 도·농교류 활성화	314

제 I 장 총괄편

1. 2006년도 시행계획 개요

가.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농산어촌의 지속적 발전과 활력증진이 중요
 - 농산어촌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개방 확대에 따른 농림어가 경제의 악화 등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
- 이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을 통한 농산어촌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04.3.5 공포, 6.6. 시행)하여 법적기반 마련
- 정부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개발 정책을 포괄하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05~'09) 기본계획을 수립('05.4)
 -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어촌 지원 사업들을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체계화
-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관계부처별로 업무소관에 따라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 '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수립('05.6)
- '0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기본계획 투용자의 효율성과 계획추진의 신뢰제고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05.12)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6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나. 2006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06년은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의 시행 2차년도로서 삶의질향상 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코자 함
 - 각 부처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06년도 사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06년도 시행계획의 대상사업은 16개 중앙행정기관(13개부처, 3개청)에서 수행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109개 사업임
 - 예산사업 102개, 비 예산사업 7개 등
- '06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농산어촌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도모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등 각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강화, 사업주체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 금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07년 상반기중 점검·평가하여 이를 '08년 예산에 반영
 -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점검·평가단의 현지점검 등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사전점검 실시

2. 2006년도 주요 추진목표

비 전	◇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
--------	--



		최종목표(2009)	2005년까지 실적	2006년 추진목표	
'06 년 목 표	복 지 기 반 확 충	사회안전망 확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 50% ○ 연금보험료 지원등급 : 18등급 - 최고 지원액 : 394천원/년인	○ 40% ○ 12등급 - 224천원	○ 50% ○ 13등급 - 259천원
		보건·의료 기반확충	○ 보건(자)산증축 : 2,243개소 ○ 건강관리실 설치 : 1,436개소	○ 1,387개소 ○ 992개소	○ 217개소(1,604) ○ 158개소(1,150)
		여성 및 노인 복지기반 확충	○ 보육시설 확충 : 722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 163개소 ○ 재가노인복지센터 : 202개소	○ 332개소 ○ 34개소 ○ 74개소	○ 27개소(359) ○ 17개소(51) ○ 16개소(90)
	교 육 여 건 개 선	학 생 의 교육기회 강화	○ 우수교 육성 : 88개교 ○ 학교군 구성 : 86개	○ 14개교 ○ -	○ 30개교(44) ○ 20개
		교 육 비 부담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 고교생 학자금 지원 : 458천명 ○ 대학생 학자금 지원 : 48천명/연간	○ 107천명(잔타) ○ 34천명/연간	○ 98천명(전농가) ○ 34천명/연간

		최종목표(2009)	2005년까지 실적	2006년 추진목표
‘06 년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추진	인적자원 개발	○ 지역개발 교육 10,890명 ○ 지역개발 新직업군 활성화	○ 1,707명 ○ 마을사무장 제도 도입 ○ 2,000명(3,707) ○ 100명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276개 권역 - 어촌 : 190개 권역 - 산촌 : 188개 권역	○ 생활권별 - 농촌 : 36개 - 어촌 : 135개 - 산촌 : 118개 ○ 생활권별 - 농촌 : 20개(56) - 어촌 : 17개(152) - 산촌 : 18개(136)
		기초생활 여건개선	○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 347개소 ○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 6,251개소 ○ 면단위 하수처리장 : 394개소	○ 227개소 ○ 5,097개소 ○ 106개소 ○ 26개소(253) ○ 266개소(5,363) ○ 9개소(115)
목 표	농산 어촌 형 복합 산업 활성 화	향토산업의 진 흥	○ 농공단지 354개소	○ 314개소 ○ 7개소(321)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 축	○ 체험마을 687개 육성	○ 257개 ○ 117개(374)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경관보전직불 2,800ha	○ 470ha ○ 470ha
		도농교류 활성화	○ 1사1촌 자매결연 실적 : 6,000건	○ 8,677건 ○ 3,323건(12,000)

- ※ 1. 2009년 목표는 누계기준임
2. ()는 '06년까지 누계임

3. 2006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방향

- ◇ 고령화·이농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에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기초생활비 부담을 줄여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확대, 농어업재해보상 지원 강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대 등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건강관리실 확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 ◇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
 - 우수고교 육성,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등 교육기회 확대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와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 등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
- ◇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중소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고, 농어촌을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
 - 문화·체육시설, 정보화 인프라,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보완 추진
 - 읍·면 등 중심지와 인구유지, 소득창출이 가능한 배후마을들을 연계한 종합개발 지속 추진
- ◇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관광기반 확충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등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 확충 지원

가. 복지기반 확충

(1)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를 통하여 농산어촌형 사회안전망을 점진적으로 개선

□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특별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건강 보험료 경감 지원율 : ('05) 40% → ('06) 50%
- 가구당 연간 평균 경감액 : ('05) 293천원/년 → ('06) 404천원/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보험료 지원 대상지역 확대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집단취락지구내 농림어업인에 대하여 지원('06.7부터)

□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표준소득월액 13등급(48만원/월)을 기준으로 동 등급이하인 농어민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지원하며, 13등급을 초과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13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지원

- 지원 표준소득 월액 등급 : ('06) 13등급 ('06.1월부터 적용)
- 1인당 연간 보험료 최고 지원액 : ('05) 224천원/년 → ('06) 259천원/년

* 지원인원 ('06년 기준) : 263천명

□ 농어업 재해보상 지원 강화

-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협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 및 가입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장해 공제금보다 낮은 사망 공제금을 장해공제금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
 - 사망공제금 : ('05) 15백만원 → ('06) 25백만원
 - 1급 장해 공제금 : ('05) 25백만원 → ('06) 25백만원
 - 농업인들의 농협 안전공제 가입률을 44% 수준으로 제고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농업인 가입율 : ('05) 41% → ('06) 44%
 - ※ 농어업인들이 가입하는 농작업 안전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제도의 가입율을 74%까지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홍보 강화를 통해 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가입율 제고 추진
 - 어선원의 보험 가입율 : ('05) 70% → ('06) 74%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추진
 -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국고지원율 : ('05) 50% → ('06) 60%
 - ※ 30톤 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국고보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적용 확대를 통한 영세농업인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 농어업인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재산평가에서 농업인 가구의 지출요인 인정 및 기준완화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2)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및
농작업 관련 질환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 확충

□ 공공 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기능보강 및 서비스 확충
 -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상황 및 노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217개소 신·증축 추진
 - 노후보건소, 보건지소 등 신·개축 : ('05) 1,387개소 → ('06) 1,604개소
('06신규 : 217개소)
 - 115개소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장비·차량 등 지원
 - * 농산어촌의 공공보건기관 : 3,329개소(보건소 144, 보건지소 1,280, 보건진료소 1,905)

□ 농산어촌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고령화되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
 - ('05) 992개소 → ('06) 1,150개소 (158개소 신규 설치)
 - * 건강관리실 시설 :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기구, 찜질방, 건강측정기구 등
- 신축보다는 기존건물의 내부시설 보수 및 건강기구 구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 하고, 신규 설치는 운영비 자체조달 등 운영 활성화가 가능한 마을 위주로 추진

(3)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

◇ 농산어촌 여성, 영유아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창업지원 확대

□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농산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 ('05) 332개소 → ('06) 359개소(신규 27개소)
- 산재된 농립어가 및 농립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보육, 휴일 운영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양육비 지원 대상을 경지면적 2.0ha 미만 농어업인에서 5.0ha미만 농립어업인까지 확대
 - 지원범위 : ('05) 2.0ha미만, 31천명 → ('06) 5.0ha미만, 27천명
 - 지원금액 : ('05) 1,836천원/년(월 153천원) → ('06) 1,896천원/년(월 158천원)
 - ※ 지원금액은 5세아 기준
- 농산어촌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 보육 실시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자 : 34,029명)
 - 지원범위 : ('0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80%까지 → ('06)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 여성농어업인센터를 51개소로 확대 설치

-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보육 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
- 여성농어업인센터 : ('05) 34개소 → ('06) 51개소 (신규 17개소)

□ 여성농어업인 출산시 영농어업을 대행해 주는 농어가도우미 지원 지속추진

- 출산시 영농어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기간('06) : 출산전후 30일간
- 지원액('06) :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를 지원

□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 상품성이 있고 판로확보가 가능한 농특산품 및 향토상품 등을 가공·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품질향상 지원
- 지원사업장 개소수 : ('06) 15개소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등 중소농 지원대책 신규 추진

- 65세미만, 농지 3ha미만 농가가 농작업·교통·재해 등 사고를 당한 경우 당해 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 지원
-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4천명, 13억원), 평가후 확대 계획
- 65세이상, 고령단독·편조손 농가 등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
- 각 도별로 인력지원단 9개소 구성·운영(7억원)

(4)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 농산어촌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보호 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 확충

□ 농산어촌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보호 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 해소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 ('05) 74개소 → ('06) 90개소(신규 16)

□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보호체계 기반 조성

○ 농산어촌 지역내에 건강·장수마을 200개소 신규 조성

- 농산어촌 노인에게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체계적 실천방안 지원
·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 제공 등으로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도모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경영이양 직불제 확충

○ 10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72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소유농지를 완전 탈농 조건으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사업물량 : ('06) 4,818ha

나. 교육여건 개선

(1).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 우수고교 집중 육성,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교육기회 제공

□ 농산어촌 우수고교 30개소 육성

- 농산어촌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교단계에서 이촌향도 예방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 부여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원어민 강사 지원, 다목적실, 특별실, 어학실, 기숙사 설치와 장학금 지원 등 혜택부여
- 향후 1군에 1 우수고교를 선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모델 정착
 - 우수고교 육성 : ('05) 14개교 → ('06) 44개교(신규 30개교)

□ 농산어촌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내실화

- 농산어촌 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농수산계고의 학과개편과 이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 구입 지원 등

□ 학교군 구성·운영으로 소규모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 통학거리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학교군 (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인력 및 시설 공동운영으로 교육의 질 제고
 - 학교군 구성 : ('06) 20개 학교군

□ 한국농업전문학교 내실화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후계 농업인 육성

-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분야 학과신설 및 장기현장 실습 교육 내실화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 농산어촌 지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제공
 - 전라남도 곡성군 시범지역 학교 재배치 : 28교 → 14교
- 전라남도 곡성군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비 등 지원
 - 대상학교 : 14개교(초등학교 8, 중학교 3, 고등학교 3)

□ 농산어촌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복식수업 운영을 지원체제 마련으로 소규모학교 활성화 지원
 - E-learning 지원등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형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학교밖에서 충족되고 있는 다양한 과외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습능력 향상 등 교육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풀제 활용, 지역사회 문화시설과 문화자원 활용 및 교재·교구 지원 등을 통한 방과 후 교육 활성화로 농산어촌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 등 교육기회 확대
- 방학캠프 운영지원
 - 먼 지역이하 초등학생의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방학캠프 운영 지원
 - 대상학교 : ('06) 2,070개교

(2)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

◇ 고교생,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 확대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전 농어가로 확대

○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어가로 한정하던 제한을 폐지('05이후)

- 지급대상 : ('05) 107천명 → ('06) 98천명

- 지원단가(인문계 기준) : ('05) 769천원/연 → ('06) 843천원/연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 지원인원 : ('05) 연간 26천명 → ('06) 연간 26천명(학기당 13.2천명)

- 지원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농림어업인 자녀인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은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농과대 2학년생 이상중 졸업후 영농종사 희망자 및
농어업인 자녀중 성적우수·저소득층 자녀

- 지원인원 : ('05) 연간 8,000명 → ('06) 연간 8,000명

* '04 2학기부터 지원

□ 농산어촌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 농산어촌 학교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 급식비 일부 지원 : 연간 180일
- 지원대상 : ('05) 754천명 → ('06) 751천명

- 전국의 자영농·수산계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 지원단가('06) : 3,090원/일, 1인당 연간지원일수 260일
- 지원대상 : ('05) 3,050명 → ('06) 2,854명

□ 농산어촌 장애아 교육 지원

-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60개소의 순회교육비 등 운영비 지원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 등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와 특수교육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 지원

□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을 위한 교실 개·보수비 지원

- 지원규모 : ('06) 150학급

-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 만 5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이하 가구

- 지원인원 : ('05) 81천명 → ('06) 142천명

- 만3,4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

- 지원인원 : ('05) 32천명 → ('06) 155천명

(3)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 농산어촌 학교에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정보화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추진

□ 농산어촌학교 우수교원 확보

- 유능한 교장을 농산어촌 학교에 초빙하고 희망교원에 대하여는 농산어촌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내실화 도모
 - 교장 초빙·공모제를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특성화 중·고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 운영('06년 9월, 50개교)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도입하여 농산어촌 지역 초등 교사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농산어촌 학교 교원중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원 교원사기 진작 및 우수교원 유치체제 마련
 - 지원대상('06) : 4,955명, 지원금액('06) : 50천원/월

□ 교육정보화 지원

- PC 보급을 확대, 인터넷 통신회선 고도화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PC 1대당 사용학생을 5명으로 줄이고 인터넷 통신회선을 2Mbps로 교체
 - 농산어촌을 포함한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원활하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실시

□ 농산어촌지역에 시·군단위로 Community Center를 운영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를 결합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시·군단위로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각종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조정
 - 기존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 자원봉사자, 교사, 기타 전문가 등 우수강사인력 지원망 구축

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1) 인적역량 강화

◇ 지역에서 상향식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및 지원시스템 마련

□ 농산어촌 활성화를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이장 등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시행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 육성과정, 동기화 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교육 과정, 특별과정 등
 - 세부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시행을 민간기관 중심으로 추진(위탁 방식)하여 농촌지역개발 교육시장 활성화 유도
 - 교육 실시인원 : ('05) 1,707명 → ('06) 2,000명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과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이해 제고 및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 마련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검색·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 농산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제도 시행
 - 지원내용('06) : 100명 지원(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2)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

◇ 생활권별(배후마을 - 면소재지 - 소도읍) 기능과 역할에 맞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속 추진

□ 농산어촌 마을권역의 종합정비로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

- 농촌경관 유지·보전, 주변환경정비, 지역잠재자원의 특성화 등 농촌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 기초생활환경 정비시설 및 지역혁신을 위한 S/W관련사업 등 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 : ('05) 36개 권역 → ('06) 56개 권역(신규 20, 착공기준)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생활환경 개선사업, 단기 임산물소득원 개발사업, 산촌휴양기반 조성, 마을경관 조성 등을 지원
 - 산촌종합개발 : ('05) 118개 권역 → ('05) 136개 권역(신규 18개)
 -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 사업계획 수립 시 시·군등의 행정지원 및 관련전문가의 컨설팅을 연계하여 추진

- 개발여건이 구비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심 향·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원 확충을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부업·복지·관광시설 확충으로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여 생산,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돌아오는 어촌 건설
 - 다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사업을 우선 지원
 - 어촌종합개발 : ('05) 135개 권역 → ('05) 152개 권역(신규 17개권역 포함)
 - 권역내 이미 구비된 각종 수산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대상 사업을 선정·추진

□ 주요 읍·면을 농산어촌의 중심지로 육성

- 주요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과 생활편의 및 소득 문화기반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추 소도시로 육성
 -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원
 - 소도읍 육성 : ('05) 43개지역 → ('06) 66개지역 (신규 23)

(3) 기초생활여건 개선

◇ 주거, 상·하수도, 교통,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낡고 험악하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마을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 정비
 -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한도 상향조정 : ('05) 30백만원 → ('06) 40백만원
 - 지원조건 : 연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
 -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철거 등 지원
 - 주택개량 등 : ('05) 396천동 → ('06) 406천동(신규 10천동)
- 5개 마을에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 마을 및 농가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주거공간기법 도입으로 농촌고유의 전통성을 살린 합리적 공간정비로 농촌 주거생활의 가치향상과 농촌 체험 소비자들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농촌주택 리모델링 및 옥외공간 정비 등 지원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수납공간계획에 의한 리모델링 및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주택내부 개선
 - 텃밭, 담장·정원 조성,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마을에 어울리는 생태적 환경 조성
 - 시범마을수 : ('05) 10개 마을 → ('06) 15개 마을(신규 5개 마을)

□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

- 면단위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확대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 ('05) 227개소 → ('06) 253개소(신규 26개소)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농산어촌의 소규모 자연마을(50호 이하)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 ('05) 5,097개소 → ('06) 5,363개소(신규 266개소)
- 농산어촌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확대 : ('05) 106개소 → ('06) 115개소(신규 9개소)
- 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
 - 마을하수도 정비 : ('05) 2,309개마을 → ('06) 2,436개(신규 127개)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된 농산어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
 - 소하천 정비 : ('05) 12,955km → ('06) 13,139km (신규 184km)
-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 소규모 비위생매립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군단위 또는 광역단위 처리 시설을 유도하여 오염원 산재를 방지
 - 폐기물처리시설 수 : ('05) 121개소 → ('05) 130개소(신규 9)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30원/kg)으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 농산어촌 도로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 농산어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 농어촌도로 정비 : ('05) 18,618km(포장율 : 30.2%) → ('06) 19,114km(신규 495.6km)
- 전국 읍·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구입자금 및 대폐차비 지원 추진('06 : 1,800만원/대)
- 선령 10년 이상된 노후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 특성에 맞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으로 대체 추진
 - 차도선형 여객선 : ('05) 28척 → ('06) 29척(신규 1척)

□ 면단위 기초생활환경 종합정비 본격 추진

-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300개면에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
 - 마을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 정비
 - 마을회관, 빈집정비, 소공원, 담장정비, 주택 신축·개량 등 생활환경 개선
 - 농촌정주기반 확충 : 800개면을 대상으로 실시('06 : 300개면)
-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 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 오지종합개발 :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실시('06 : 207개면)
 - 도서종합개발 : 410개 도서를 대상으로 실시('06 : 145개도서)

□ 과학·문화·예술·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 농산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센터,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
 - 공공도서관 : ('05) 210관 → ('06) 217개관(신규 7개관)
-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 휴게시설, 산책로, 조깅로 등을 구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 ('05) 4,977개소 → ('06) 5,077개소(신규 100개소)
-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인 과학·문화공간 조성
 - 복합문화공간 조성 : ('05) 39개소 → ('06) 51개소(신규 12개소)
 - 테마과학관 조성 : ('05) 8개소 → ('06) 13개소(신규 5개소)
- 산림자원의 영구보전·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박물관 건립
 - 산림박물관 : ('05) 9개소 → ('06) 15개소(신규 6개소)
-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방문화원별(224개)로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공연·전시등의 관람, 판소리 배워보기 등 문화체험과 향교·서원체험 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산어촌의 정보화기반 확대

-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인프라 환경구축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
 - 초고속 인터넷망이 미구축된 50가구 미만 1,6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
-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정보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서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 추진
 - 정보화 마을 조성 : ('05) 280개소 → ('06) 304개소(신규 24개소)
- 농업경영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05) 4개 → ('06) 22개(신규 18)
- 영농과 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양성하여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어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농업인정보화 교육 : ('05) 437천명 → ('06) 492천명(신규 55천명)
 - 어업인정보화 교육 : ('05) 20천명 → ('06) 27천명(신규 7천명)
 -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 : ('05) 210명 → ('06) 261명

라.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1) 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하여 농산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

□ 향토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단지 육성

- 농공단지에 향토자원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특화 단지로 지정·육성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업종 유치로 농촌형 일자리 창출
 - 농공단지 조성 : ('05) 314개소 → ('06) 321개소(신규 7개소)
 - 총 고용인원 : ('04. 12월말 현재) 115천명
- 입주업체 기술·경영지도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

□ 향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토자원의 발굴 및 DB화

- 지역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향토산업 육성
 - 기본계획이 수립된 19개 향토자원에 대한 개발 로드맵 수립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이농 예상 농어업인의 전업 및 취업 지원
 - 훈련인원 : ('06) 864명

(2) 농산어촌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소득 향상 추진

□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 농산어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
 - 녹색농촌체험마을 : ('05) 123개마을 → ('06) 190개마을(신규 67개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 ('05) 66개마을 → ('06) 97개마을(신규 31개마을)
 - 문화역사마을 : ('05) 10개마을 → ('06) 12개마을(신규 2개마을)
 - 어촌체험마을 : ('05) 58개마을 → ('06) 75개마을(신규 17개마을)
-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건전한 체험형·문화형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연구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산림휴양시설 확충
 - 자연휴양림 : ('05) 100개소 → ('06) 106개소(신규 6개소)
 - 수 목 원 : ('05) 22개소 → ('06) 42개소(신규 20개소)
- 어촌의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하여 어항시설과 연계시킨 어촌 관광통합모델 개발·조성
 - '06년에 7개소(어촌·어항복합공간 3개소, 다기능어항 1개소, 어촌 관광단지 3개소) 공사 추진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17개소 실시
- 갯벌, 철새도래지, 습지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 학습형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레포츠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 ('05) 178개소 → ('06) 230개소(신규 52개소)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 ('05) 24개소 → ('06) 39개소(신규 15개소)

□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 창출

- TV 및 인터넷 홍보,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초청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그린맵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 개최
- 농산어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통해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농산어촌 체험·휴양 안내 정보 제공
- 방문객이 안심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보험 가입 확대 및 대국민 홍보
 - 보험가입마을 : ('05) 20개 마을 → ('06) 65개 마을(신규 45개 마을)
- 제5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 선정·홍보

□ 농산어촌 체험마을지원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도입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조체제 유지
- 지자체 장이 주도하는 그린투어 포럼을 결성하여 정책제안, 공동 실천방안 마련 등 공동연계 추진
- 사후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확대

□ 향토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과 문화를 연계한 지역별 대표축제 및 유망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농산어촌 관광과 연계체계 구축
-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 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정부 지정 축제로 지원
 - '06년에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14개를 집중 육성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38개 유망축제 발굴·지원
- 여행상품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로 관광객 적극 유치

(3)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득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경관보전 직접지불 시범사업 추진('05~'07)
 -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에 경관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이행결과를 평가
 - 경관보전직불 사업량: ('06) 470ha
 - 직불금 : 1,700천원/ha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예 :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야생화 등)

□ 지역별 고유경관 조성 및 생태숲 조성

-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생식물단지를 조성
 - 자생식물단지 : ('05) - → ('06) 2개소(설계 1, 조성1)
- 산림생태계가 보전된 숲 조성 및 복원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자연학습 공간 제공
 - 지역, 기후, 생태천이 등을 고려한 생태숲 조성
 - 생태숲 조성 : ('05) 16개 → ('06) 21개소(신규 5개소)

□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와 정책프로그램의 신규 도입 및 기존시책 조정에 관한 로드맵 마련
 - 농촌경관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농촌경관지표 제정 기초 작업 수행 및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추진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 지원
 - 조건불리지역은 낮은 농업생산성과 낮은 소득수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지원도 부족하여 지역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 필요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통한 특색있는 농촌개발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조건불리 직불 사업량 : ('05) 31,000ha → ('06) 173,000ha
 - 직불금 : 밭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4) 도·농교류 활성화

◇ 농산어촌 체험관광, 향토산업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농교류촉진 및 도시자본의 농산어촌 유입 활성화 추진

□ 1社1村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및 내실화

- 민간주도로 1사1촌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정착화
 -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 추진
 - 농촌사랑 범국민 운동본부를 사단법인화
 - 1사1촌 교류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부실사례 정리, 우수사례 홍보 등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추진
- 1사1촌 운동 추진 매뉴얼을 개발하여 단계별 1사1촌 운동 활성화
 - 초기단계의 인적교류 중심에서 자본 등 물적 교류로 확대
 - 1사1촌 운동 신규 참여기업, 단체 확보를 위한 메뉴 개발
 - ※ 1사 1촌 자매결연실적 : ('05까지) 8,677개 마을

□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운동 추진

- 도시민의 집단적 농촌유치를 위해 도시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 확충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지원
 -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등 기초 생활기반시설을 지원
 - ※ 전원마을 조성('06) : 25개마을
- 도시은퇴자들의 농산어촌 이주를 촉진하고자 은퇴자마을의 상품화 및 홍보를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콘테스트」 개최

□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체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농촌을 방문하고 이해하며,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농림어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 여름휴가철 집중 홍보를 통해 도농교류의 사회적 붐 조성 및 새로운 여가·휴가 문화의 정착 계기 마련
- 농림어업인과 도시민간 이해증진과 교류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해 농·소·정 협력사업 추진
 - 소비자단체, 여성농업인단체 등 주관으로 도시소비자, 청소년 등의 농업·농촌 현장체험활동 등 추진
-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을 정례화하여 도농교류활성화에 적극적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홍보

□ 도농교류 활성화를 전담 지원하는 도농교류센터 운영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추진
 -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등 1사1촌 운동 추진 지원
 - 농촌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 등

4. 2006년도 투융자 계획

□ 2006년도 투자 규모는 4조 2,746억원으로 이는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총액 20조 2,731억원의 21.1%

○ 국비는 2조 2,409억원으로 2006년도 전체 투자 규모의 52.4%

○ 지방비는 1조 8,971억원으로 전체의 44.4%, 민자 등 기타는 1,366억원으로 3.2% 차지

○ '05년의 3조 4,064억원 대비 1.25배 증가 수준

□ 분야별 투융자 규모

○ 부문별로는 복지 5,959억원(13.9%), 교육 8,290억원(19.4%), 지역개발 2조 2,738억원(53.2%), 복합산업 5,759억원(13.5%)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계획 투융자		A/B
		2006(A)	'05~'09총액(B)	
총투자소요	34,064	42,746	202,731	21.1%
○ 국 비	17,445	22,409	115,527	19.4%
- 119조재원	8,936	9,287	76,862	12.1%
- 관련재원	8,509	13,122	38,665	33.9%
○ 지방비	15,612	18,971	81,659	23.2%
○ 기 타	1,007	1,366	5,545	24.6%

5. 점검·평가

- ◇ 투융자의 효율성과 기본계획 추진의 신뢰 제고를 위한 '0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추진
- ◇ '05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점검·평가체계 보완 등

- '07년 상반기에 '06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추진
 -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06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상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
 -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단에 제출
 - 평가단은 자체평가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 평가단은 점검·평가 결과를 위원회 등에 보고
- 평가결과를 토대로 '08년도 투융자계획 등 조정 추진
- '05년도 점검·평가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점검·평가시스템을 보완하여 환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조정, 현지 점검 실시, 업무담당자와 인터뷰 실시 등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평가 실시
 - '05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시·도는 시·도, 시·군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점검·평가단은 외부전문가, 농림어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구성
 - 시·도에서는 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보완

6. 기대효과

-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산어촌 대책들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하므로서 시너지 효과 기대
 - 그 동안 각 부처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농산어촌 정책을 분산·추진하여 왔으나, 삶의질 향상 위원회를 통한 총괄·조정으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됨

-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05) 40% → ('06) 50%
 - 노후 보건소 등 신·개축 : ('05) 1,387개소 → ('06) 1,604개소
 - 농산어촌 국공립보육시설 : ('05) 332개소 → ('06) 359개소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 ('05) 74개소 → ('06) 90개소
 -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 ('05) 14개교 → ('06) 44개교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 지원단가 : ('05) 769천원/년 → ('06) 843천원/년

- 정부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로 대국민 만족도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삶의질 향상 대책에 대해 농어업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점검·평가단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참 고 >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사업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06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합 계	7,655	9,366	3,547	1,841	22,409	18,971	1,366	42,746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소계)	3,535	0	561	327	4,423	1,515	21	5,959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1,359	-	-	-	1,359	-	-	1,359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673	-	-	-	673	-	-	673	
1-1-3-0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183	-	-	-	183	-	-	183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	180	-	180	-	-	180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36	-	-	8	44	-	-	44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573	-	-	-	573	287	-	860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	-	319	319	271	-	590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40	-	-	-	40	39	-	79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	-	4	-	4	-	-	4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	3	-	3	-	-	3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5	-	-	-	5	6	-	11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	49	-	49	48	-	97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	-	322	-	322	323	-	645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364	-	-	-	364	364	-	728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	-	-	-	45	6	51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	-	-	-	-	26	6	32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농업인 영농지원)	20	-	-	-	20	-	9	29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2	-	-	-	2	2	-	4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	-	2	-	2	2	-	4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	-	-	-	1	-	-	1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28	-	-	-	28	27	-	55	
1-4-2-3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	1	-	1	-	-	1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76	-	-	-	76	75	-	151	
1-4-3-0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175	-	-	-	175	-	-	175	

(단위 : 억원)

사 업 명	'06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소계)	981	0	2,044	6	3,031	5,180	79	8,290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168	-	72	-	240	240	-	480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	-	-	-	-	125	-	125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66	-	-	6	72	-	-	72	
2-1-2-1 학교군 구성·운영	30	-	-	-	30	30	-	60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	-	-	-	-	6	-	6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	-	-	-	2	2	-	4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	-	-	3	3	-	6	
2-1-3-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	-	-	-	-	447	-	447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	-	-	-	675	-	675	
2-1-3-5 방학캠프 운영 지원	10	-	-	-	10	10	-	20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38	-	-	-	38	37	-	75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	1,972	-	1,972	1,972	-	3,944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	-	-	-	874	-	874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483	-	-	-	483	-	-	483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	-	-	-	-	-	76	76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	-	-	-	-	466	-	466	
2-2-3-2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	-	-	-	-	17	3	20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30	-	-	-	30	30	-	60	
2-3-2-1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수당 신설	28	-	-	-	28	-	-	28	
2-3-2-2 교원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60	-	-	-	60	-	-	60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지원	63	-	-	-	63	63	-	126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	-	-	-	183	-	183	

(단위 : 억원)

사 업 명	'06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소계)	2,549	7,064	514	1,438	11,565	9,921	1,252	22,738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14	-	-	-	14	5	1	20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3	434	-	-	467	109	-	576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	309	-	-	309	73	4	386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	183	-	-	183	73	-	256	
3-2-2-1 소도읍 육성사업	-	617	-	617	1,234	1,710	1,069	4,013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	-	-	-	-	-	0	
○ 농어촌 주택개량(농특세 10%)	180	-	360	720	1,260	540	-	1,800	
○ 농어촌 마을정비(마을하수도 정비)	933	-	-	-	933	686	-	1,619	
○ 농어촌 빈집정비	-	-	-	-	-	39	-	39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	-	2	-	2	2	-	4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군특회계)	-	1,154	-	-	1,154	289	-	1,443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군특회계)	-	353	-	-	353	88	-	441	
3-3-2-3 면단위 하수도	667	-	-	-	667	285	-	952	
3-3-2-4 소하천 정비	497	-	-	-	497	497	-	994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109	-	-	-	109	156	-	265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30	-	-	-	30	-	-	30	
3-3-3-1 농어촌도로 정비	-	-	-	-	-	3,961	-	3,961	
3-3-3-2 교통서비스 강화	-	-	-	-	-	-	-	0	
○ 농산어촌 버스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	-	-	-	-	212	-	212	
○ 농산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	-	-	-	-	19	-	19	
3-3-3-3 국고여객선 건조	16	-	-	-	16	-	-	16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1,900	-	-	1,900	-	-	1,900	
3-3-4-2 오지개발촉진사업	-	1,083	-	-	1,083	464	-	1,547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	900	-	-	900	386	-	1,286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01	-	-	101	39	-	140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	-	-	20	20	20	-	40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	-	15	15	-	-	15	
3-3-5-5 지방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	-	30	30	-	-	30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	-	-	36	36	110	-	146	
3-3-5-7 산림박물관 건립	-	30	-	-	30	31	-	61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	-	62	-	62	35	-	97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	90	-	90	88	176	354	
3-3-6-3 정보화 인프라 구축	5	-	-	-	5	-	-	5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7	-	-	-	7	-	-	7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25	-	-	-	25	-	2	27	
3-3-7-2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4	-	-	-	4	4	-	8	
3-3-7-3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29	-	-	-	29	-	-	29	

(단위 : 억원)

사 업 명	'06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소계)	591	2,302	428	70	3,391	2,356	12	5,759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	-	3	-	3	-	-	3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260	-	-	260	298	-	558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13	-	-	-	13	-	-	13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68	-	-	68	67	-	135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25	-	-	25	25	-	50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	-	-	35	35	18	-	53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	69	-	-	69	62	7	138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8	35	202	-	245	35	-	280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0	
○ 산림휴양공간 조성	-	176	214	-	390	127	-	517	
○ 수목원 조성	-	124	-	-	124	125	-	249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0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132	-	-	132	132	-	264	
○ 문화관광자원개발	-	1,030	-	-	1,030	1,030	-	2,060	
4-2-2-1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1	-	-	-	1	-	-	1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8	-	-	-	8	-	-	8	
4-2-3-0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평가·관리체계 구축	2	-	-	-	2	-	-	2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	-	35	35	35	-	70	
4-3-1-0 경관보전 직불제	6	-	-	-	6	2	-	8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	4	-	4	-	-	4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	-	-	-	-	-	5	5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0	
○ 자생식물식재	-	-	5	-	5	5	-	10	
○ 생태숲조성	-	123	-	-	123	123	-	246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523	-	-	-	523	220	-	743	
4-4-2-0 도시민 농산어촌주택갯기 활성화	-	260	-	-	260	52	-	312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22	-	-	-	22	-	-	22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8	-	-	-	8	-	-	8	

제 Ⅱ 장 부 문 별 시 행 계 획 편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가.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1) 개 관

□ '06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로 복지증진 도모
 - 경감률 : ('03) 보험료의 22% → ('04) 30% → ('05) 40% → ('06이후) 50%
 - 경감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농어업인 일제조사 실시
-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 : 최고지원액 ('05) 224천원 → ('06) 259
 - 표준소득월액 지원기준등급 : ('05) 12등급 → ('06) 13등급
 -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액 : ('05) 112천원~224천원 → ('06) 119천원~259천원
 -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상 강화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05년 : 사망 1,500만원, 1급장해 2,500만원 → '06년 : 사망 2,500만원, 1급장해 2,500만원
 - 홍보강화를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고, 1인당 재해공제 가입구좌(1인 1구좌)를 축소함에 따라 재해공제 가입 기회 확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제고 추진
 - 보험가입대상척수 대비 보험가입율 : ('05) 70% → ('06) 74% → ('11) 90%
 - 어업인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 추진
 - *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율 : ('05) 10~50% → ('06) 10~60%
 - *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율 : ('05) 60% → ('06) 70%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하여 농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농어업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특례제도 도입)

□ 예산 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건강보험	135,865	-	-	-	135,865	-	-	135,865
농어업인국민연금	67,270	-	-	-	67,270	-	-	67,270
농작업재해보상	18,295	-	-	-	18,295	-	18,295	36,590
어선원재해보상	-	-	18,000	-	18,000	-	-	18,000
합 계	221,430	-	18,000	-	239,430	-	18,295	257,725

□ '07년도 추진 방향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적격대상 농어업인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지원 표준소득월액 : ('06) 13등급 → ('07) 14등급
- 농작업 안전 공제료의 단계적 지원확대와 홍보강화를 통한 가입율 제고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강화
- 어선원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어업경영 안정망 확충
 - 시행초기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
- 농어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업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2) 세부과제

<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농어업인의 의원, 병원등 의료 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 의료기관 이용부담 완화로 건강검진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질병의 사전 예방가능

○ 사업추진방향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완화
- 농어업인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경감을 통한 의료 복지 강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총괄), 복지부(협조), 국민건강관리공단(집행)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민) → 보험료 납입(농어민→공단)
→ 보험료지원(농림부→공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농산어촌 및 준농산어촌지역 농어업인
- 사업 규모 : 599천명

- 지원형태 : 농어업인에 대한 경감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원
- 지원조건 : 건강보험료의 28% 추가지원(국고 100%) → 총 50%경감 지원
- 총사업비 : 135,865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4년부터
- 재원형태 : 국비보조(농특세)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66,614	-	-	-	66,614	-	-	66,614
2006	135,865	-	-	-	135,865	-	-	135,865
(증△감)	69,251	-	-	-	69,251	-	-	69,251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격대상 농어업인이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엄기훈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1)

<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보건복지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 사업추진방향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추진절차 : 농어업인 신청(가입자) → 농어업인 대상자 확인(공단) → 대상자 보험료 납부 확인(공단) → 국고지원금 확정 및 요구(공단, 매월) → 예산지원(복지부→공단) → 예산지원(공단)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당연적용·임의계속·특례) 가입자
- 사업규모 : 농어업인 가입자 262천명, 672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소득별 차등 지원(국고지원)
 - 표준소득월액 13등급 미만 시, 연금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 표준소득월액 13등급 이상 시, 13등급 연금보험료의 50% 정액지원
 - 지원형태 : 직접 수행(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

- 지원조건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인에 대한 적용조건
 - .. 농업인 : 1,000m²이상을 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임업인 :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 어업인 :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1년 중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농어업인의 지원대상자 결정
 - .. 농업, 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자
 - ..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 3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고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60,540	-	-	-	60,540	-	-	60,540
2006	67,270	-	-	-	67,270	-	-	67,270
(증△감)	6,730	-	-	-	6,730	-	-	6,73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수준을 단계적 확대 등 현실화하여 현행 표준 소득월액의 13등급기준에서 14등급 보험료수준으로 지원기준 향상
 - 지원대상 : 농어업인 가입자 252천명
 - 지원수준 : 1인당 9,900원 ~ 23,400원
- 농어업인중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강화
-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가입을 제고

(사업담당자 : 연금정책팀 오두석 사무관, 연락처 : 02-2110-6406)

<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기계의 각종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사업추진방향

-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의 단계적 지원확대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재해보장수준 강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자금교부 요청(농협→농림부)→자금교부(농림부→농협)→ 가입신청(농업인)→공제증권발급(농협)→정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18,295백만원
- 사업 시행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 : 768천건
- 사업 주요내용 : 농협재해공제 가입비 지원

- 지원단가 : 46,140원
- 재해시 보상 : 사망시 25백만원 보상

○ 예산

- 사업기간 : '96년부터~
- 재원형태 : 국비(농특세) 50%, 자부담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11,368	-	-	-	11,368	-	11,368	22,736
2006	18,295	-	-	-	18,295	-	18,295	36,590
(증△감)	6,927	-	-	-	6,927	-	6,927	13,85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업인 안전공제료의 단계적 지원확대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강화
- 홍보강화로 가입을 제고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엄기훈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1)

<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해양수산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어선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
-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을 제고 추진
 - 보험가입대상척수 대비 보험가입율 : ('05) 70% → ('06) 74% → (11) 90%
- 어업인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 추진
- 시행초기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
 - 어업인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현지간담회 등 실시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제4조(보험료 국고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해양수산부) → 보험가입(어업인 → 회원조합) → 보조금 지급신청(회원조합 → 보험지부 → 중앙회 → 해양수산부) → 보조금 지급(해양수산부 → 중앙회) → 보험사업 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중앙회 ↔ 해양수산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시행대상 : 연근해 어업인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소유자(가입대상: 약 86천척) 중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국고보조율)
 - 순보험료 : 10톤미만 60%,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 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의 70%
- 사업 주요내용
 - 어업인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활동 강화
 - * 어선원보험 가입율 : ('05) 70% → ('06목표) 70% → ('11목표) 90%
 - 어업인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노력 지속 추진
 - *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율 : ('05) 10~50% → ('06) 10~60%
 - *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율 : ('05) 60% → ('06) 70%
 - 시행초기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
 - * 현지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수립

○ 예산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20,891	-	20,891	-	-	20,891
2006	-	-	18,000	-	18,000	-	-	18,000
(증△감)	-	-	△2,891	-	△2,891	-	-	△2,891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어선원 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어업경영 안정망 확충
- 시행초기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

(사업담당자 : 수산경영과 박신철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62)

<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적용 확대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 사업추진방향

- 농어업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특례제도 도입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장기관(시·군·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급여신청(본인, 친족 등) → 조사(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 급여결정(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 급여실시(생계, 주거비) → 확인조사(매년 1회 이상, 수급자 적정여부) → 보장중지(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사유 발생시)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전체수급자 중 농어업인 가구 특례수급자
-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05.7월)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완화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인정('04.6월)
 -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미만 소유자(임차한자 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 *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 농어업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 예산

- 사업기간 : '04. 6 ~ 계속
- 재원형태 : 지자체 보조사업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2,150,984	-	2,150,984	682,195	-	2,833,179
2006	-	-	2,319,530	-	2,319,530	733,156	-	3,052,686
(증△감)	-	-	168,546	-	168,546	50,961	-	219,507

※ 기초생활보장 급여 전체 예산임(의료 및 자활급여 제외) -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특례대상자들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이 집행되므로 별도의 예산 및 실적파악 곤란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업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사업담당자 : 기초생활보장팀 이일현 주무관, 연락처 : 2110-6220)

나.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1) 개 관

□ '06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응급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산어촌 군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
 - 군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에 시설, 장비 및 인력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기초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
-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물 및 의료장비를 지원
 - 15년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을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 지원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여 민간병원과 차별화 되는 공공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립대병원 및 보건소와의 연계 강화
- 농산어촌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158개소)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 회복환경 조성 및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
 -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 농업활동에 따른 농업인의 재해발생정도, 재해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여 재해예방 및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재해 원인 규명 및 재해 경감방안 개발연구 등에 포괄적으로 지원
- 인트라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원격진료 상담 추진
 - 시·도별 농작업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9개소)
- 안전영농구역(Safe farm Zone) 조성 시범 사업 9개소 추진
 - 농업인의 직업성질환 현황 파악 등 건강수준 및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담당지도사, 마을운영위원 등에 대한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실시
 - 현황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개선방안 도출
 - 농작업환경 및 작업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비 보급, 운동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예산 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류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산어촌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3,667	-	-	770	4,437	-	-	4,437
공공보건기관 기반확충	57,292	-	-	-	57,292	28,646	-	85,938
지역거점 공공 의료기관 육성	-	-	-	31,904	31,904	27,097	-	59,001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충	3,987	-	-	-	3,987	3,913	-	7,900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등	-	-	400	-	400	-	-	400
농작업재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300	-	300	-	-	300
안전영농구역 조성시범사업	540	-	-	-	540	540	-	1,080

□ '07년도 추진 방향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추진
- 농어촌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분담 추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인력 등 지속적인 기능 보강
- 운영비 절감 또는 자체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 보건소,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교육·검진실시 등 활용 촉진
- 농작업재해 장기추적 연구마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농작업 보조도구를 개발하여 농업인의 간접적인 복지지원 강화
- 농작업재해 예방·관리의 유관기관 관련자, 외부전문가, 정책입안자,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추진
 - 농작업 안전사고 감시체계 가동으로 해당 질환 및 조사대상 범위 확대
- '06년(1차년) 안전영농구역조성사업 시범마을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 추진하고, 마을과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 정립 추진

(2) 세부과제

<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응급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산어촌 군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와 인력 등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응급시설의 법정기준 충족률 향상 및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 인력을 배치하여 응급환자 진료
- 농어촌 지역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제고하여 사망률 및 불구율 개선

○ 사업추진방향

- '09년까지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국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 '07년까지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지역에 기초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에 인프라 지원
- '09년까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이미 있는 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취약 진료권을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지원조건 : 응급의료시설·장비보강 및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 사업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절차 : 기본계획 수립(복지부) → 응급의료취약지 현황 조사 및 현지 실사 → 대상지역 공모(복지부) → 취약지 신청(시·도) → 대상지역 심사·선정(복지부) → 사업비 교부(복지부 → 시·도) → 사업시행(시·군)

○ 사업내용(신규사업)

- 사업 대상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
 -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 ※ 사업대상 지역은 현지 실사 후 결정
- 사업 규모
 - 군지역 의료기관 2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
 - 지역응급의료기관 22개소
- 지원금액
 - 군지역 의료기관 : 개소당 167백만원(국비 167백만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 개소당 35백만원(국비 35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 재원형태 : 국고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3,667	-	-	770	4,437	-	-	4,437
(증△감)	3,667	-	-	770	4,437	-	-	4,437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추진
 - 1년 시한으로 지원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비용 확보 불가 (응급의료 원가 보존율 68%에 불과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1일 내원환자가 15명에 불과함)

(사업담당자 : 의료자원팀 최순택 사무관, 연락처 : 031-440-9125)

<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보건복지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물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조성
-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 공공의료부문의 시설·장비 현대화
- 보건소 전산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건축연도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을 우선지원
- 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 설계·장비 심의 등 기술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제19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지침 수립 및 시도에 통보 → 각 지자체별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사업 대상기관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시·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군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시 설		의료장비		전산장비		차 량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332	57,292	217	55,132	89	1,708	6	293	20	160
보 건 소	67	14,391	17	12,805	24	1,134	6	293	20	160
보 건 지 소	165	31,861	100	31,287	65	574	-	-	-	-
보건 진료소	100	11,040	100	11,040	-	-	-	-	-	-

※ 공공보건기관 현황('05.12현재) : 보건소 144, 보건지소 1,280, 보건진료소 1,905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사업대상 기관 선정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전산장비	방문보건차량	계
부산	-	-	-	19,233	-	8,000	27,233
대구	-	265,608	-	-	-	-	265,608
인천	-	672,549	392,267	13,333	-	-	1,078,149
울산	-	492,156	-	-	-	-	492,156
경기	-	295,120	404,176	92,000	33,766	24,000	849,062
강원	385,392	3,031,886	432,773	228,833	25,000	24,000	4,127,884
충북	1,210,122	2,135,695	745,809	62,000	-	24,000	4,177,626
충남	1,199,606	4,258,936	1,328,457	218,533	107,231	24,000	7,136,763
전북	4,028,609	3,403,088	1,851,721	337,265	-	16,000	9,636,683
전남	2,650,909	7,855,179	3,134,972	369,024	55,000	24,000	14,089,084
경북	1,308,903	6,405,461	1,238,451	214,733	-	16,000	9,183,548
경남	2,021,666	2,152,753	1,380,224	87,867	71,533	-	5,714,043
제주	-	318,405	130,756	65,000	-	-	514,161
계	12,805,207	31,286,836	11,039,606	1,707,821	292,530	160,000	57,292,000

○ 예산

- 사업기간 : 1994년 - 2014년(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 2/3, 지방비 1/3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56,942	-	-	-	56,942	28,471	-	85,413
2006	57,292	-	-	-	57,292	28,646	-	85,938
(증△감)	350	-	-	-	350	175	-	52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앞으로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분담이 필요
 - 앞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는 기초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방문보건 사업, 만성질환 관리, 재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량지원, 의료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예정임

(사업담당자 : 보건정책팀 정찬우 주무관, 연락처 : 2110-6301)

<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노후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능개편을 통해 동 병원 경쟁력 확보 및 포괄적·지속적인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임직원의 혁신교육을 통하여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방향

- 시설·장비의 현대화,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공공성을 강화 및 국립대병원·보건소와의 연계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모델을 제시하여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각 시·도,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각 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복지부) → 국고보조금 신청(선정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유) → 국고보조금 교부(복지부) → 사업추진(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40개 병원(지방의료원 34, 적십자병원 6)
- 지원형태 : 기금 50% · 지방비 50%
- ※ 일부 기금 100%

- 지원조건 : 사업계획의 적절성, 의료수요·공급, 장비 교체·구매의 시급성 및 적절성 등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신축·이전, 모델사업, 시설·장비보강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시설·장비보강
 - 혁신 및 서비스촉진 교육 : 공공병원 임직원 대상 교육
 -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민건강증진기금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등	소계			
2005	-	-	-	42,405	42,405	39,105	-	81,510
2006	-	-	-	31,904	31,904	27,097	-	59,001
(증△감)	-	-	-	△10,501	△10,501	△12,008	-	△22,509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이전·신축사업 : BTL사업으로 재원확보('05-'06년, 강진의료원 추진 중)
 - 모델사업 : 34개 지방의료원 중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가능한 기관을 선정(1~3개소 지원)
 - 시설·장비보강 : 13개소 지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3~4개 병원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 혁신 및 서비스촉진교육 : 40개 공공병원 직원 800명 교육
-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지원 : 11개 병원에 각 1억원씩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사업담당자 : 공공의료팀 이능교 사무관, 연락처 : 031-440-9134)

<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 회복 및 건강 증진
- 농촌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 회복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
-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
-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적합성 현지조사(시·군) → 우선순위를 정하여 마을 추천(시·군→시·도) → 시군별 사업량 검토 조정(시·도) → 예산 신청(시·도 → 농촌진흥청) → 예산 확정 지원(농촌진흥청→시·도→시·군) → 사업대상마을 확정(시·군) →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마을 및 시·군) → 사업추진(마을 및 시·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지원 조건에 맞는 농촌 마을
- 사업 규모 : 158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50백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조건

- 기본조건 : 반경 3km 이내에 피로회복 시설(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 등)이 없는 마을, 지방비 지원, 마을기금 활용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마을
- 선정 우선순위 : 농작업환경이 열악한 마을, 인근 피로회복시설로부터의 거리가 먼 마을, 운영비 절감시설을 설치할 마을, 활용 가능한 농가인구수가 많은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에 동의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마을, 마을 주민 간에 화합이 잘 되고 마을내 조직 활동이 활발하며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고 타 사업의 추진효과가 높은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피로회복 시설 설치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샤워실 또는 목욕실
 - 권장시설 : 찜질방, 게이트볼장, 조리실, 휴식실, 노인실, 심야전기, 태양열 이용시설, 식품가공실, 건강정보실 등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구입 : 벨트맛사지, 안마의자, 찜질기, 헬스 자전거, 아령, 체중계 등 마을민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 및 기구 활용 : 마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 및 찜질방 가동 일수,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
-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 건강관리교육, 요가, 단전호흡, 피로회복 마사지, 농작업체조 등 프로그램 실시. 보건소, 한의원, 병원 등의 협력 유치로 무료 검진 및 의료지원 확보
- 운영비 확보 지원 : 지방비 지원, 소득원 확보, 출향인사 후원 촉진 등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인천
158	6	13	15	25	24	23	25	19	5	1	2

○ 예산

- 사업기간 : '96년 - '08년(총 13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 60, 지방비 4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2,700	-	-	-	2,700	2,700	-	5,400
2006	3,987	-	-	-	3,987	3,913	-	7,900
(증△감)	1,287	-	-	-	1,287	1,213	-	2,500

* 균특회계(농특세전입금)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효율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 심야전기, 태양열 이용 시설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설치 촉진
 - 식품가공실, 구판장 등 운영비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촉진
 - 지방비 운영비 지원, 기타 운영비 확보 방안 마련 촉구
-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 촉진
 - 보건소,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교육, 검진 등 실시
 - 생활체육협의회 등과 연계한 운동프로그램 지속적 실시
-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과 이금옥 생활지도관, 연락처 : 031-299-2871)

<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활동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따라 농부증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발생이 증가하므로 장기추적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합한 예방관리 기술 개발 지원
- 향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성 질환 및 사고에 대한 재해통계 및 재해판정 기준 등을 마련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재해 진단기준 개발('06~'09)
 - 작목 및 농업활동에 따른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발생정도, 재해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여 향후 업무상재해 예방 및 보상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06~'09)
 - 농업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작업환경 요소 및 노출수준을 평가
 - 유해가스, 농약,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유해 작업환경 안전기준 설정
- 인간공학적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지원('06~'09)
 - 유해 작업요소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작업 보호구 및 보조장비 등을 개발하여 농업인 업무상재해 경감 : (현재) 18종 → ('09까지) 60종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작업재해 장기추적 연구군 조성(코호트 군, '06년 1,000명 내외) 및 농작업 보조장비 개발
- 지원금액 및 형태 : 4억,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업무상재해 원인규명 및 재해 경감방안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지원
- 시도별 농작업재해 장기추적 연구마을('06)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	1	1	1	1	1	2	1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	-	400	-	400	-	-	400
(증△감)	-	-	400	-	400	-	-	4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작업재해 장기추적 연구마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구추진 - 마을 대표자, 외부전문가, 관련기관 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과제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연구조사 방법, 결과 등을 공유
- 1차 장기추적조사 기간을 4년으로 하며 매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 농업인 업무상재해 경감을 위한 농작업 보조도구를 개발하고 산업재산권화 하며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의 간접적인 복지지원을 강화
- 농촌진흥청과 해당 부서는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안전 향상을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이경숙 연구관, 연락처 : 031-299-0470)

<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 업무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보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의료비 및 손해를 최소화함
-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액 : 근로자 1,000만명, 약 10조
- 농작업재해로 인한 손실액 추정 : 농업취업인구 200만명, 약 2조
-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재해예방 정책, 제도 및 지역단위 농업안전보건 사업을 수행하므로 국내에서도 향후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해통계 등을 마련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 안전보건 센터」 설치를 위한 TFT 구성·운영
- 농촌진흥청 농기계, 농약, 농작업 건강관련 연구·지도 부서로 구성
-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의료계, 인간공학, 산업계 등 산학관련 협력체 구축 운영
- 워크숍 등을 통해 농작업 안전보건 연구지도 및 정책사업관련 의견수렴
- 농작업 재해 질환 및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 농작업 안전모델 농가 인증, 중앙 관리조직의 구성 및 주요 정책방향
- 농작업안전관리를 위한 우선 작목 및 작업개선 로드맵 도출
- 인트라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원격진료 상담
- 인트라넷을 통한 원격 진료상담 실시('07~'09)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운영 : ('06) 9개소 → ('09) 165개소
- 농작업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감시체계 구축(9개소) 및 농작업 안전보건 TFT 및 산학관련 협력체 구축·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3억,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작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지원 및 농작업 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지원
- 시도별 농작업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06)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	1	1	1	1	1	2	1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	-	300	-	300	-	-	300
(증△감)	-	-	순증	-	300	-	-	3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작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의 강화가 요구되고 이를 관리할 중앙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추진
 - 유관기관 관련자, 외부 전문가, 정책입안자, 농업인 단체 등 대상 워크숍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를 시작으로 해당 질환 및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 농촌진흥청과 해당 부서는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안전 향상을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이경숙 연구관, 연락처 : 031-299-0470)

< 1-2-3-3. 농작업 안전모델(Safe Farm Zone) 조성 시범사업(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작업 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및 능력 향상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실천 종합 모델 마을로 육성
- 전문가 컨설팅 등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마을 및 작목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 추진
- 지도, 연구, 학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추진
-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력 기반 조성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 기초조사 및 심사(시·군) →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마을 추천(시·군→시·도) → 검토 후 대상 마을 확정(시·도) →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마을) → 세부 사업추진계획수립(마을, 시·군, 시·도) → 사업추진(마을, 시·군, 시·도, 중앙) → 기술지원 및 평가(시·도, 중앙)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설원예(채소, 화훼, 버섯 등),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리)

- 사업 규모 : 9 마을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1.2억원, 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농작업조건 : 주작목 농가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크며 농작업 유해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
 - 사업참여도 : 참여농업인수가 최소 50명 이상으로 전체 농업인 중 참여 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마을
 - 사업기반 : 이장/지도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마을민 조직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며 마을공동시설의 관리 활용이 잘되는 마을 등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건강수준 및 농작업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황 파악,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담당 지도사, 마을 운영위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실시
 - 현황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개선 방안 도출 : 올바른 작업자세, 농기계 · 기구의 안전가동, 보호구 사용, 밀폐공간 안전 작업, 유해물질 안전 보관 등
 - 개선안 실행 : 농작업환경 및 작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비 보급,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요법 실시,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	1	1	1	1	1	2	1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2년(총 7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540	-	-	-	540	540	-	1,080
(증△감)	540	-	-	-	540	540	-	1,08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6년도 사업마을을 대상으로 1차 년도에 도출된 개선방안의 지속적인 실행과 정착을 위하여 교육 및 기타 지원 추진
-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 정립 추진
- 타 지역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유도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과 심미옥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875)

다.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

(1) 개 관

□ '06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농산어촌에 국공립보육시설 27개소를 신축하여 도시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농산어촌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까지 우선 확대
-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에 대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 규모 5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
 -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지원 시작
-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기간 30일, 도우미 지원기준 단가 30천원/1일
- 사고농가 및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고농가 영농지원 4천명, 취약농가 가사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단 운영 9개소
- 여성농업인의 농외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여성농업인 창원지원센터 운영 9개소
 - 농촌일감맞기 사업장 중심으로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등 품질향상 지원(15개소)
 -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추진 대상자 중 정보화 능력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지원

□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보육시설확충	-	-	4,874	-	4,874	4,873	-	9,747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	-	32,259	-	32,259	32,259	-	64,518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742	-	-	-	15,742	15,742	-	31,484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0,620	-	-	-	20,620	20,620	-	41,240
여성농어업인 센터설치확대	-	-	-	-	-	4,530	613	5,143
농가도우미지원	-	-	-	-	-	2,574	641	3,215
취약농가인력지원	2,053	-	-	-	2,053	-	880	2,933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203	-	-	-	203	202	-	405
생산제품 품질 향상지원	-	-	225	-	225	225	-	450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00	-	-	-	100	-	-	100

□ '07년도 추진방향

- 농산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확대 및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유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전체 농어가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
- 여성농어업인센터 확대 설치,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유도
- 취약농가 인력지원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창업지원,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및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2) 세부과제

<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여성가족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력의 안정된 사회참여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에 매년 보육시설을 27~50개소씩 확충
- 다양한 방안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시설 신축이외에 민간보육시설 매입을 통한 국공립시설 설치
 - 주공임대 보육시설을 무상제공받아 국공립시설로 운영
 - 농촌지역의 경우 보육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소규모(20~60명)로 건립토록 유도
 -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인 경우 2층에도 신축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상 규제 완화함
 -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실은 1층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 절차
 - 시군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지역 결정하여 세부운영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도에 송부

- 시·도 :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육시설 설치 수급사항 등을 파악하고 검토의견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송부
- 여성가족부 : 각 시도별 확정내시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사업 규모 : 27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국공립시설 신축비 지원 : 361백만원/개소(100평기준)
 - 국고보조율 : 건축비에 대하여 50%지원
 - *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단가 및 보조율 인상
(지원단가 : 239→361만원, 보조율 : 40→50%)
 - 국고보조비 지원대상 : 시군구에서 부지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0년(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6,406	-	6,406	15,612	412	22,430
2006	-	-	4,874	-	4,874	4,873	-	9,747
(증△감)	-	-	△1,532	-	△1,532	10,739	412	12,683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 지자체별 수급분석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담당자 : 보육지원팀 이재란 사무관, 연락처 : 02-2100-6835)

<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보육지원(여성가족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지역 취학전 만5세아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금년부터 우선 확대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여성부 → 시·도 → 시·군·구 → 보육아동(보육시설)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06년부터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353만원)이하 까지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우선 확대(05년도 80%까지 지원)

※ '06년도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4인 가구 기준 318만원)이하 까지 지원

- 지원단가 : 월 158천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 사업규모 : 34,029명

- 사업 주요내용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26,214	-	26,214	26,214	-	52,428
2006	-	-	32,259	-	32,259	32,259	-	64,518
(증△감)	-	-	6,045	-	6,045	6,045	-	12,090

※ '05년도 집행실적 추정치 26,700백만원(29,085명)의 117% 적용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수준 유지
- ※ 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수준까지 지원

(사업담당자 : 보육재정팀 한강희 사무관, 연락처 : 02-2100-6826)

<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

○ 사업추진방향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을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 '06년도 추진계획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추진절차

- 농업인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및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실적을 근거로 지원금을 매월 농업인 계좌에 입금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어가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27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지원금액)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0세	'05.3.1 이후 출생	175,000	수업료 및 급식비
1세	'04.3.1 ~ '05.2.28	154,000	
2세	'03.3.1 ~ '04.2.28	127,000	
3세	'02.3.1 ~ '03.2.28	79,000	
4세	'01.3.1 ~ '02.2.28	79,000	
5세	'00.3.1 ~ '01.2.28	158,000	

※ 참고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50천원, 1세 308천원, 2세 254천원, 3~5세 158천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4세	28,000	79,000	수업료 및 급식비
5세	56,000	158,000	

※ 만5세아에 대하여는 연1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

※ 연령기준은 보육료와 동일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19,154	-	-	-	19,154	19,154	-	38,308
2006	15,742	-	-	-	15,742	15,742	-	31,484
(증△감)	△3,412	-	-	-	△3,412	△3,412	-	△6,82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전체 농어업인의 자녀로 확대하고, 0-4세에 대한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06) 5ha 미만 → ('07이후)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확대
 - 지원단가 : ('06)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 ('07이후) 단계적으로 70%까지 확대

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추진절차

· 농업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매월 농업인에게 계좌입금

※ 지원대상 결정내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0~5세)를 둔 여성농업인 등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48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지원금액)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단, 5세아는 50%)

· 연령별 월 지급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고
0세	'05.3.1 이후 출생	87,500	
1세	'04.3.1 ~ '05.2.28	77,000	
2세	'03.3.1 ~ '04.2.28	63,500	
3세	'02.3.1 ~ '03.2.28	39,500	
4세	'01.3.1 ~ '02.2.28	39,500	
5세	'00.3.1 ~ '01.2.28	79,000	
6세	'99.3.1 ~ '00.2.28	79,000	'06년 1,2월분만 지급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	-	-
2006	20,620	-	-	-	20,620	20,620	-	41,240
(증△감)	순증	-	-	-	20,620	20,620	-	41,24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전체 농어업인의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06) 5ha 미만 → ('07이후)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확대
 - 지원단가 : ('06)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단가의 25%(5세아는 50%) → ('07이후) 단계적으로 35%(5세아는 70%)까지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성주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5)

<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사업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등 연차적으로 설치 확대
-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농림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고시
 - 도 :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선정, 사업비 배정, 사업실적 평가 등
 -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이송, 사업비 교부, 센터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 센터 운영자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시행, 사업추진 결과보고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각 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센터 운영자
- 사업규모 : 전국 5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센터당 112백만원, 지방비 85% · 자부담 15%
- 사업 주요내용
 - 필수사업 :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 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 시·도별 운영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1	4	3	3	5	6	4	14	6	6

※ 경북은 자체 보육정보센터 12개소 포함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재원형태 : 지방비 85%, 자부담 15%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3,176	546	3,722
2006	-	-	-	-	-	4,530	613	5,143
(증△감)	-	-	-	-	-	1,354	67	1,421

※ '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전환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위주로 지속적 설치 확대 유도
- 필수사업 외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의 내실화 유도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성주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5)

< 1-3-3-1. 농어가도우미 지원 확대(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어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어업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어업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사업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어업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 기준 720천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사업으로 추진
- 농어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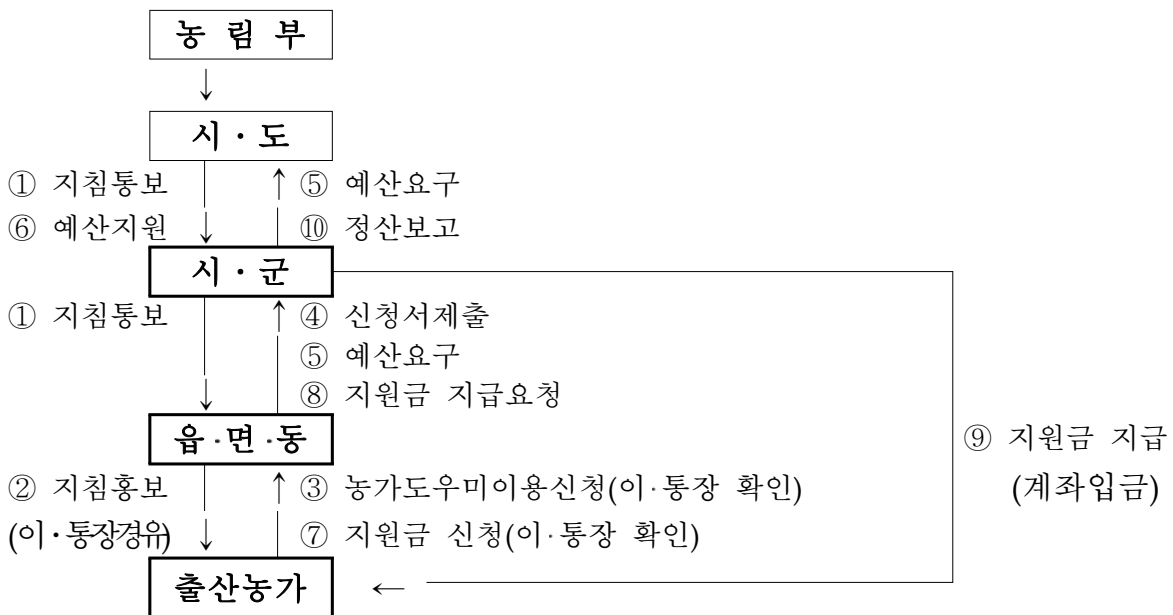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내용은 지방이양전 '04년도 기준임. 각 자치단체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 :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

-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조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국고 12,000원, 지방비 12,000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어업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예산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재원형태 : 지방비 8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2,304	576	2,880
2006	-	-	-	-	-	2,574	641	3,215
(증△감)	-	-	-	-	-	270	65	335

※ 지방비는 분권교부세로서, 농어가도우미 사업비는 농업비항목(농어가도우미사업 등 6개사업)으로 통합 배정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 등의 복지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및 이용범위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본 사업을 지속 확대·발전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상목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9)

<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사고농가 영농지원,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희인력을 농촌의 취약농가에 연계하는 도농 인력지원체계 구축
- '06년에는 일부 시·군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질병·교육도우미제도 도입 검토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등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고농가 영농인력지원 >

- 사고가 발생한 농업인(65세미만, 3ha미만)이 농협(읍·면·동 지역농협)에 영농인력지원 신청 → 사실 확인(지역 농협) → 영농인력자료제공(인력지원단, 농가 자체추천 가능) → 영농인력 및 노임 지원(지역 농협) → 확인평가(농림부)

< 고령취약농가 가사인력지원 >

- 고령취약농가 현황조사 및 지원대상농가 선정(지역 농협) → 인력자료 제공(인력지원단) → 가사인력 및 실비 지원(지역농협) → 확인 평가(농림부)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사고농가 영농지원 : 농지소유면적 3ha미만 농가의 65세미만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65세이상 고령단독·편조손 농가,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사업 규모(사업량)
 - 사고농가 영농지원 : 4천명
 - 취약농가 가사지원 : 인력지원단 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고농가 영농지원 : 사고농가당 농촌평균임금(남자 57천원/1일, 여자 38)의 70%, 10일 이내, 민간보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도별 인력지원단 운영비(112.6백만원/개소)의 70%, 민간보조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사고농가 영농지원 : 국비 70%, 자부담 30%
 - 취약농가 가사지원 : 국비 70%, 농협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2,053	-	-	-	2,053	-	880	2,933
(증△감)	2,053	-	-	-	2,053	-	880	2,933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희인력을 농촌의 취약농가에 연계하는 농촌 인력지원단을 구축하여 차질없는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체계 확립
- '06년의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상목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9)

<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농외 경제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및 재촌영농(在村營農)을 지속하게 함
- 여성농업인 능력 활용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의 틈새시장 수요 충족
-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및 세계화 기반 구축

○ 사업추진방향

- 농촌자원을 이용한 여성 보유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도
- 신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제품 생산 및 전문 기술지도 강화
-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등 지속적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사업절차 : 사업내용, 사업가물량 등 예산편성 요령, 시도 시달 (농진청)
⇒ 사업계획 수립,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여성농업인)
⇒ 사업 물량 확정, 시도 시달(농진청)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타당성 심사·확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 국비, 지방비 지원신청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지원 여부 결정(농촌진흥청)
⇒ 사업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진청에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외소득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05백만원 (개소당 45백만원, 국비 50%)
- 지원조건
 - 소자본으로 여성특유의 솜씨를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마을단위,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 주요내용 : 전통식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사업을 위한 작업장 및 기구 설치, 기술습득, 포장개발, 유통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사업량 (개소)	9	1	1	1	1	1	1	1	1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6년(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202.5	-	-	-	202.5	202.5	-	405
(증△감)	202.5	-	-	-	202.5	202.5	-	40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여성이 보유한 솜씨를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도록 장려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창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이수자 우선 선정
- 사업대상을 전통식품에서 다양화하여 농산물 가공분야 (수공예품, 천연염색, 임가공 등) 로 확대하여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자원과 조은희 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9)

< 1-3-5-2.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농촌진흥청)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일감맞기 사업체의 상품성 제고로 판로확대와 소비촉진 유도
-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지역 특색 있는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추진방향

- 기존 농촌일감맞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제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
- 지역성과 상품특성을 살린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제품의 차별화·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 농촌일감맞기 사업장 중심 품목별 연구회 및 시군단위 공동 브랜드화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 사업가물량 등 예산편성 요령, 시도 시달 (농진청)
⇒ 사업계획 수립,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여성농업인)
⇒ 사업 물량 확정, 시도 시달(농진청)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타당성 심사·확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 국비, 지방비 지원신청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지원 여부 결정(농촌진흥청) ⇒ 사업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진청에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추진 대상자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50백만원 (개소당 30백만원, 국비 50%)

- 지원조건

- 농촌일감맞기사업장 중에서 농외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우선 지원
- 지역별로 농촌일감맞기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별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었거나 필요한 경우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개발, 상표등록, 매뉴얼 제작 등
-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소형화·고급화·다양화)
-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장재질개선, 포장방법개선 등
-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소포장 개발, 표준출하 규격 맞춤 등
- 홍보물 제작 : 제품 소개를 위한 리플렛, 카타로그, 홍보물의 제작 기획, 디자인 편집, 사진촬영, 제작물 인쇄 등
- 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완

- 시도별 배분내역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개소)	15	2	1	1	1	2	2	3	2	1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16년(총 1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225	-	225	225	-	450
2006	-	-	225	-	225	225	-	450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체 조직 위주의 사업추진 지도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도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자원과 김희순 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

<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농외 경제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취약한 경영, 마케팅, 제조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여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사업장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고객편의성을 감안한 쇼핑 시스템 등 쇼핑몰 기반 시스템의 개선
- 우먼팜 통합사이트의 재구축 및 선정된 보완농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사업추진방향

- 안정적 운영체계의 구축으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지원 강화
-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제고 및 자가 운영능력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계획 등 시도 시달 (농진청)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여성농업인) ⇒ 사업 물량 확정, 시도 시달(농진청) ⇒ 사업추진(농진청) ⇒ 사업결과 보고 (시군농업기술센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

○ 사업 내용 (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추진 대상자
- 지원금액 및 형태 : 100백만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농촌일감맞기사업장 중에서 농외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정보화 능력이 우수한 자
- 컨설팅으로 사업장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유형별 우수 센터로 선정된 시군 우선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우먼팜 유지개선 : 농가별 홈페이지 보완개발, 기능 개선, 위탁운영 등
- 농촌일감맞기 사업장의 경영능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6년(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100	-	-	-	100	-	-	100
(증△감)	순증	-	-	-	100	-	-	1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외소득 활동지원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 중 사업추진 우수자 대상 컨설팅 및 우먼팜 신규 개설 지원
-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창업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별로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추진으로 사업 효과 증대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자원과 김희순 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8)

라.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1) 개 관

□ '06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기능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05년 56개소 → '06년 16개소)
- 지역사회중심의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3종)을 위한 1차년도 연구 수행('06-'08)
 - 농촌지역의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과 노인복지수준 진단지표 개발 지원
-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생활 유도 등 장수문화 정립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300개소('05년 100, '06년 200) 육성 지원
-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의 확충
 - 경영이양계획('04-'13) : 48.2천ha

□ 예산 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2,750	-	-	-	2,750	2,750	-	5,500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개발	-	-	100	-	100	-	-	100
농촌건강장수 마을육성	7,600	-	-	-	7,600	7,500	-	15,100
경영이양직불제	17,491	-	-	-	17,491	-	-	17,491
합 계	27,841	-	100	-	27,941	10,250	-	38,191

□ '07년도 추진 방향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22개소) 설치 지속 지원
 - '06년 신축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16개소)에 대한 의료장비, 목욕용 차량 등 장비비 지원
- 자생적인 마을중심의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노인의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농촌진흥기관·공무원·마을 등 3요소를 활용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자족마을로 육성
- 보조금 지급단가 상향조정,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연령 및 지급한도 확대 등을 통하여 경영이양직불제가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개선 추진

(2) 세부과제

<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보건복지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 해소를 위해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적 편차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농어촌 지역 공공부문 기본 인프라 확충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농어촌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군·구
- 사업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시·군·구) → 예산 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총액 55억, 16개소 신축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3억 4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도별 1개소 이상 설치지원(광역시 지역 제외)
- 지원조건 : 사업신청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한해 설치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현황)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6	1	1	2	1	2	4	2	3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1,209	-	-	-	1,209	1,814	-	3,023
2006	2,750	-	-	-	2,750	2,750	-	5,500
(증△감)	1,541	-	-	-	1,541	936	-	2,477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22개소 설치 지원
 - 농어촌 지역 중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 '06년에 신축된 재가노인복지센터 16개소에 대한 장비비 등 지원
 - 노인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의료장비, 목욕용 차량 등을 지원

(사업담당자 : 의료자원팀 송한목 사무관, 연락처 : 031-440-9634)

< 1-4-2-3.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개발(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리적 조건, 인구밀도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사회중심의 자생적인 노인 보호체계 구축 기반 조성
- 농촌지역의 다양한 노인보호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인 수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노인 인력활용 및 복지 욕구 충족

○ 사업추진방향

- 노인보호자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노인봉사원 프로그램 개발('06~'08)
 - 노인수발을 위한 마을단위 인적자원의 특성별 활동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여 대상자별 전문화된 노인수발 기술 프로그램 개발 : 2종
- 지역사회중심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단위 老-老돌봄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06~'08)
 - 老-老돌봄 운영체계에 대한 한·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마을단위 老-老돌봄 적용을 위한 문제점 및 운영방안 도출
 - 노인에 의한 노인보호활동 사례분석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1종
- 농촌지역 노인복지수준 진단지표 개발 지원('06~'08)
 -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균형을 위하여 노인복지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역노인복지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고령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마을단위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老-老돌봄 운영 및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2종
- 지원금액 및 형태 : 1억,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촌지역 마을단위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8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	-	100	-	100	-	-	100
(증△감)	-	-	순증	-	100	-	-	1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초기이므로 자생적인 마을중심의 노인보호활동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주민들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마을 대표자, 외부전문가, 관련기관 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과제 관련 협의를 추진
-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검증 작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 향상
-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촌노인의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
- 농촌진흥청과 해당 부서는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윤순덕 연구사, 연락처 : 031-299-0495)

<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등 4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
- 농촌노인에게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는 일거리참여로 생산적인 활동과 생활환경 정비, 건강증진, 사회활동참여 등 체계적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성공적인 노년생활 영위와 생활의 질 향상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문화 조성과 장기적 도시민 유치 효과
 - * 2005년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농촌생활만족도 55.4%

○ 사업추진방향

- 생산적인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도모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 노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자원화로 연계
-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정비 등 종합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령화 대책(문제해결)의 시범 운영
- 건강한 노인, 여성조직체 협력으로 거동 불편노인의 안전 체계 구축
- 도시은퇴자, 소모임 등 도·농 교류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강화
- 3년간 예산지원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심의회, 대상마을 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마을추천(시군→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시·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 및 농촌건강 장수마을 운영(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 사업규모 : 300개 농촌건강장수마을('05년 100개, '06년 200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5천만원, 국고 50%·지방비 50%(개소당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 55세 이상의 예비노인 중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 전승이 가능하며, 주민협의를 거쳐 합의가 된 마을
 - 노인들의 농업·공예품 제조 등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운동, 학습활동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왕성한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마을
 -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복지기반이 되어 있으며 노인생활지도마을, 농촌 여성일감 갖기, 향토 음식 맥 잇기 등 가급적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이 기존에 투입되어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마을 우선
 - 일반 마을 중 마을의 중심 주제 발굴이 가능하고 마을민의 협동심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노인과 마을민간의 교류가 활발한 마을 등
 - 사업추진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어 사후관리가 가능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경제적·심리적 여유 갖기
 - 식생활, 운동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지원으로 장수의 조건 갖추기
 - 학습·사회활동 촉구를 통한 뇌의 활동 촉진으로 노화 방지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를 통하여 안전 생활 유도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업량	'06신규사업	200	1	1	3	-	1	-
	'05계속사업	100	1	2	2	1	1	1
	소 계	300	2	3	5	1	2	1
사업비	합 계	7,500	50	75	125	25	50	25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7	45	20	27	13	20	15	31	6
	8	12	5	11	12	16	13	11	4
	25	57	25	38	25	36	28	42	10
사업비	625	1,425	625	950	625	900	700	1,050	250

○ 예 산

- 사업기간 : '05년 - '11년(총 7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2,230	-	-	-	2,230	2,100	-	4,330
2006	7,600	-	-	-	7,600	7,500	-	15,100
(증△감)	순증	-	-	-	5,370	5,400	-	10,770

* 농특회계(특이소요)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 대표자, 지도자 교육, 마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교육 강화
 - '05, '06년도 장수마을을 모델로 신규마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제 강화
- 농촌진흥기관·공무원·마을 등 3요소를 활용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자족마을로 육성
 - 진흥기관(교육 및 마케팅), 공무원(연구·상품개발), 마을(생산활동) 등
 - 어르신이 공경 받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조성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과 박경숙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877)

< 1-4-3-0.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13년까지 고령·은퇴농업인의 30%(97천호)를 경영이양시켜 쌀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 쌀 전업농 45.1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45.4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농가당 1.01ha 영농규모를 확대 및 생산비 절감

○ 사업추진방향

- '13년까지 97천명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3.5천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 81.6천ha('04~'13년 48.2천ha)의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이양함으로써 '13년 쌀 전업농 경영목표 면적 430천ha 달성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고령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신청(농업인→농촌공사) → 현지조사(농촌공사) → 대상자선정·심의(농촌공사) → 대상자 통보(농촌공사→신청 농업인)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약정체결(농촌공사↔농업인)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농촌공사→농업인) → 사후관리(농촌공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10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72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소유농지를 완전 탈농 조건

- 한국농촌공사 또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ha당 일정금액을 지급
- 사업 규모 : 81,558ha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45,367ha)
- 사업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451억원 ('05년까지 기투자액 : 1,268억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국고 100%)
 - 지급상한 : 2.0ha까지
 - 지원연령 및 단가
 - < 63세 ~ 69세 농업인 >
 - * 매 도 : 만 70세까지 ha당 241천원을 매월 분할지급(연간 2,896천원/ha)
 - * 임 대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
 - < 70세 ~ 72세 농업인 >
 - * 매도·임대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
 - (’04.2월 FTA비준시 추가된 지원대상, ’06년까지 한시 시행)

○ 예산

- 사업기간 : 1997년 ~ 2013년 (총 17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농특회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22,103	-	-	-	22,103	-	-	22,103
2006	17,491	-	-	-	17,491	-	-	17,491
(증△감)	△ 4,612	-	-	-	△ 4,612	-	-	△ 4,612

* 사업물량 : '05년 7,267ha, '06년(P) 4,818ha

□ '07년도 추진방향

- 고령·은퇴농업인에게 169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4천ha의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이양함으로써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 경영이양직불제가 규모화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개선 추진
 - 경영이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급단가 상향조정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연령 및 지급한도 등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농산경영과 이재욱 서기관, 연락처 : 02-500-1769)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1) 개 관

□ '06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성화된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 도모
-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실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특성화고 지원 및 종합고를 통합형고로 개편 운영 추진
-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농촌관광 증가 등 농업·농촌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 등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추진
- 통학거리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소규모학교를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및 체육관, 도서실 등 공동 활용시설 구비
- 전남 곡성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 강화
- e-learning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형의 교육자료 개발 및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청 단위 적용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교수학습센터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에 활용가능한 원격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지도 및 교원 연수요원으로 활용
 - 학교 환경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 배치 및 교포원어민 유치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적·물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의 교육적 효과 제고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 기회 부여
 -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방학캠프 운영프로그램 시행
- 농어촌지역에 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교실 개·보수비 지원 및 저소득층 가구의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비 지원

□ 예산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우수고교 육성	16,800	-	7,200	-	24,000	24,000	-	48,000
실업계고 특성·내실화	-	-	-	-	-	12,500	-	12,500
한국농업전문학교 운영	6,608	-	-	600	7,208	-	-	7,208
학교군 구성·운영	3,000	-	-	-	3,000	3,000	-	6,000
적정규모학교 육성	-	-	-	-	-	614	-	614
복식수업교재등 개발	200	-	-	-	200	200	-	400
원격교육 콘텐츠 보급	300	-	-	-	300	300	-	600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	-	-	-	-	44,649	-	44,649
방과후 교육활동	-	-	-	-	-	67,450	-	67,450
방학캠프 지원	1,035	-	-	-	1,035	1,035	-	2,070
농촌 유치원설치	3,750	-	-	-	3,750	3,750	-	7,500
유치원유아교육비	-	-	197,195	-	197,195	197,195	-	394,390

□ '07년도 추진방향

- '07년까지 농산어촌 1군1우수고 88개소를 선정 육성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실업계고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보수교육 및 Network 구축사업 추진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 등 확산 추진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한 타지역 확산 방안 마련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학교에 교육프로그램·자료제공이 필요한 교육청을 선정하여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도농간 영어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시 지원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습지도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 시·도 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 권장
- 만5세아 전체수의 70%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및 두자녀 교육 병행 실시

(2) 세부과제

< 2-1-1-1.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에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학생의 도시유출방지 및 도시 유학에 따른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군 1우수 고교 집중육성
-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사업 방향

- 농어촌 1군에 1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색화된 우수고등학교 모델 육성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04. 2. 23.)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4.)
- '05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지원계획 수립통보 ('05. 3)

□ '06년도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청
- 수혜자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학생
- 집행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선정(시·도교육청)→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 군단위 고등학교

- 사업규모 : 전국 농산어촌 군단위에 1군 1우수고 88개 선정 지원
 - * '06년 신규 30개 선정 지원 168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교육과정 운영, 학생선발 등에 자율 부여(자율학교 지정)
 - 교장 초빙·공모제 우선실시 및 교사 선발권 학교장에게 권한 부여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원어민 강사 지원, 기숙사 확충, 다목적실, 특별실, 어학실 설치, 장학금 지원 등

○ 예산

- 사업기간 : '95년~(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6,065	-	-	-	6,065	6,065	-	12,130
2006	16,800	-	7,200	-	24,000	24,000	-	48,000
(증△감)	10,735	-	7,200	-	17,935	17,935	-	35,87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촌에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학생의 도시 유출방지 및 도시 유학에 따른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군 1우수 고교를 연차적으로 집중육성 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07년 까지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88개 선정 추진
 - ☞ 기초자치단체수 : 234개(시 77개, 군88개, 구69개)
 - ※ 열악한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대응투자 비율완화 검토 필요

(사업담당자 : 교육복지정책과 윤권수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45)

<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의 실업계고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농산어촌 실업계고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로 농산어촌 교육복지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 농산어촌지역의 종합고를 통합형고로 개편 운영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05.5.12, 교육혁신위원회)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05.12.6, 부총리 결재)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 교육감 및 교장
- 사업추진절차
 - 교육인적자원부 : 실업계고 혁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 등
 -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 :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전환 승인요청(학교장) → 검토 후 승인(시·도 교육감) → 행·재정적 지원(시·도 교육감) → 사업수행(학교장)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의 실업계고교
- 사업규모
 -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 20개학과(학교)
 - 통합형고 개편·운영 : 5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당 5억원,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학교장이 시·도 교육감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사업승인
 -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
- 사업내용
 - 학과개편, 특성화고 및 통합형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구비
 - 변경된 학과에 맞게 교원들에 대한 연수 실시 등

○ 예산

- 사업기간 : '05년~'14년(10년)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 계			
2005	-	-	-	-	-	18,925	-	18,925
2006	-	-	-	-	-	12,500	-	12,500
(증△감)	-	-	-	-	-	△6,425	-	△6,42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방비 확보·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
 - 연초 사업계획 수립 보고 등
-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서 농산어촌 실업계고 지원 활성화 유도
-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
- 직업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사업담당자 : 과학실업교육정책과 김홍순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00)

<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목적>

-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와 DDA/FTA협상체결 등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농촌의 회생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육성

<기대효과>

-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1,2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95.1% 영농에 종사('05년 조사)

○ 사업추진방향

-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농촌관광 증가 등 농업·농촌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장기현장실습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습교육생 학교 소집교육 강화 및 실습교육비 지원금액 증액
-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Network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신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신설 운영
- 우수학생 유치 등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명변경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설치령(2003.2.24대통령령 제17910호)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

- 사업추진절차 : 계획수립 보고(학교→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 심사 및 결과 통보(농림부 및 농촌진흥청→학교)→ 사업 시행(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한국농업전문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재학생 720, 졸업생 1,433)
- 사업 규모(사업량) :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육운영(1)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100%(농특회계,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육운영 : 6,400백만원(재학생 성적 장학금 20백만원 포함)
 -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시범운영 : 208백만원
 - 국내·외 장기현장실습교육생 보상공금 : 600백만원(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 국내·외 장기현장실습교육 보상공금은 추후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신청
- 지원조건
 - 학교 입학 후 재학기간 동안 입학금, 수업료 및 숙식비를 전액 지원
 - 졸업 후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 종사
- 사업 주요내용
 - 우수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 강화 등

○ 예산

- 사업기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농특회계,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6,204	-	-	600	6,804	-	-	6,804
2006	6,608	-	-	600	7,208	-	-	7,208
(증△감)	404	-	-	-	404	-	-	404

* 2006년도 기금 600백만원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06.5.현재 까지 확정되지 않았음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관광학과 증설 및 학교 교육운영 예산에 재학생 장학금 확대 반영
- 신규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교육 실시
-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보수교육 및 Network 구축 사업 추진

(사업담당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백영목, 연락처 : 031-229-5161)

< 2-1-2-1. 학교군 구성·운영(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고, 교육인력·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으로 소규모 학교 운영 정상화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04.2.2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05.4.)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선정(시·도교육청)→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 초, 중학교
- 사업규모 : 20개 학교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및 공동 활용시설(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등) 구비
 - 이동수업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제공
 - 지원액 : 30억원(20개학교군×3억원×5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재원형태 : 국비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3,000	-	-	-	3,000	3,000	-	6,000
(증△감)	3,000	-	-	-	3,000	3,000	-	6,0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확산

(사업담당자 : 교육복지정책과 윤권수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45)

< 2-1-2-6.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교육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군단위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제공
- 적정규모학교 재배치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 예산절감 : 연간 63억원(인건비 46억원, 운영비 17억원)

※ 교직원 감축 : 120명(교원 98명, 일반직등 22명)

○ 사업추진방향

- 전남 곡성군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 시설 현대화에 따른 냉·난방비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전라남도교육감·곡성교육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추진계획 수립(도교육청)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지역교육청·단위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전라남도 곡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 사업규모 : 14교(초 8교, 중 3교, 고 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614백만원, 특별교부금 100%
- 지원조건
 - 학교재배치 : 15원, 26교, 2분교장→ 8원, 14교
- 사업 주요내용
 - 초·중학교 교과활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고등학생 방학중 심화보충학습 지도비 지원
 -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냉·난방비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09년(총 5년)
- 재원형태 : 특별교부금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614	-	614
2006	-	-	-	-	-	614	-	614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타 지역 확산 방안 마련
-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율 확대 유도

(사업담당자 : 교육복지정책과 정오채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45)

<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효율적인 복식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체제 기반 마련으로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에 기여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복식수업 운영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방향

- e-Learning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형의 교육 자료로 개발
-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자료 및 교육청 단위 적용 프로그램 개발
- 학교, 교육청, 연구기관 협동으로 연구, 개발, 적용(연구학교) 동시 추진
-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현장교원 적극 참여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농특회계)에 대한 「중기(‘05~’09) 사업계획」
- 농어촌특별회계(1318-212-305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추진계획수립 및 운영(사업기관)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전라남도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복식수업 교재 개발(6종),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과제), 복식수업 연구학교 운영(5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4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선정
-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협력 사업자를 적극 참여시켜 추진

- 사업 주요내용

< 복식수업 교재 개발 : 6종 >

- 기존 개발된 텍스트 형의 교수·학습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멀티형 콘텐츠로 개발
- 획일적인 방식은 지양하고, 소규모 학교의 상황 및 복식학급의 구성 유형에 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시간, 공간, 활동 등 상황, 조건에 따라서 담당교사가 재구성하여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로 제공

<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2과제 >

- 소규모 벽지학교 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의 해결 방안 접근을 위하여 교육청-학교-협력기관 간 '복식학교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 복식수업 교재 개발로 인한 교사업무 부담 해소 및 교육과정 통합 운영에 따른 교과서 재구성 문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 연구학교와 연계하여 추진

< 복식수업 연구학교 운영 등 : 4개교 >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으로 기존 복식학급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학력신장 기여
- 학교, 교육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및 지원체제 개발·적용 연구
- 농산어촌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 시도별 배분내역 : 국비 2억원(전라남도 교육청)

○ 예 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총 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200	-	-	-	200	200	-	400
(증△감)	200	-	-	-	200	200	-	400

* 농특세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자료 제공이 필요한 교육청을 선정하여 추진
- 자체 사업으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교육청에 우선 대응 투자
-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사업담당자 : 교육과정정책과 김태운 교육연구사, 연락처 : 02-2100-6285)

<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다양한 교과목 이수 확대를 위한 접근방향 모색 및 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한 원격교육 지원 체제 여건 조성
- 정규수업을 지원·보완하는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기회 제공

○ 사업추진방향

- 기존 개발되어 있는 교과 외에, 학생의 요구는 있으나 지원이 미흡한 교과 중심으로 개발·보급
- 교과의 특성에 따른 동영상, PDA, CD-Title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
- 교수학습센터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에서 활용 가능한 원격교육 콘텐츠로 개발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농특회계)에 대한 「중기(‘05~’09) 사업계획」
- 농어촌특별회계(1318-212-305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추진계획수립 및 운영(사업기관)

○ 사업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경상남도교육청
- 사업규모(사업량)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10종),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2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보조(시·도교육청)
- 지원조건
 -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선정
 -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협력 사업자를 적극 참여시켜 추진

- 시도별 배분내역 : 국비 3억원(경남남도 교육청)

- 사업 주요내용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10종 >

- 개발이 미흡한 보통교과와 실업계 전문교과 중 활용성이 높은 실습 교과목 중심으로 개발
- 실습 기자재로 접근하기 어려운 교과 내용을 실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습 보완이 가능한 자료로 개발·보급

<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2과제 >

- 향후 초·중등교육에서 교과목 이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원격·사이버교육의 활용방안 탐색 연구
- 일반계 및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격교육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작용 연구학교 운영
- 원격교육 전문연구기관, 대학을 지정하여 정책연구 수행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총 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300	-	-	-	300	300	-	600
(증△감)	300	-	-	-	300	300	-	600

* 농특세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정규수업을 지원·보완하는 측면의 교수·학습 지원용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이 시급한 교육청을 선정하여 추진
- 자체 사업으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교육청에 우선 대응 투자
-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사업담당자 : 교육과정정책과 김태운 교육연구사, 연락처 : 02-2100-6285)

< 2-1-3-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영어교육 수준 제고
- 농산어촌 원어민 배치를 통하여 도시와의 원어민 접근도 격차 해소

○ 사업추진방향

-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근무교 영어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지도 또는 교원연수 요원으로 활용
- 교육청 또는 교육연수원에 배치하여 초·중등교원 연수요원으로 활용
- 초청인원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2006년도 초청 및 배치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 배치기관에 적합한 자질 소유자 초청 및 배치
 - 교육연수원과 학교 환경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배치
- 교포 원어민 유치 확대

○ 사업추진근거

- '94. 7. : '국제화교육 추진 종합계획'(교육부 중점과제)
- '95. 5. : 교육개혁과제 중 '외국어교육 강화' 및 '세계화교육 강화'
-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12.30)
- '04. 2. 17. 『사교육비경감대책』 :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05. 5. :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모집·홍보(재외공관/교원대) → 심사·선발(재외공관/교원대)
 → 시·도 배정 및 고용계약서 작성(교원대/시·도교육청)
 → 고용계약 체결(재외공관/교원대)[입국] → 사전연수(교원대)
 → 학교 배치(시·도교육청) → 직무 연수(시·도교육청)
 → 활용 평가(시·도교육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사업규모 : 초청인원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2006년도 초청 및 배치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 '05.12.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인원 : 1,179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100%

* 국립학교(40개교 41명)는 100% 국고보조('06.예산 1,043백만원)

-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주요내용

- 초청 인원의 확대 : 시·도 자체 계획에 의거
-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서 계획한 인원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중학교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교육여건 낙후 지역 우선 배치

※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2005.5)」

-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 추진

→ '10년까지 전 중학교(소규모·농어촌 학교 포함)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

구 분	'06	'07	'08	'09	'10
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750명	1,300명	1,850명	2,400명	2,900명

○ 예산

- 사업기간 : '95년~(계속)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 '07.부터 국고(농특회계) 지원 예정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33,029	-	33,029
2006	-	-	-	-	-	44,649	-	44,649
(증△감)	-	-	-	-	-	11,620	-	11,62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국고 지원

- 도농간 원어민 영어 교육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무성 확보
- ※ '07부터 국고(농특회계)를 확보하여 지원 예정 : 국고(농특회계) 60%, 지방비 40%

(사업담당자 : 영어교육혁신팀 우종선 교육연구관, 연락처 : 02-2100-6593)

<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소질·적성 개발 등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 방과 후 보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활동을 지원
- 학교 밖에서 충족되고 있는 다양한 과외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지방자치단체·지역교육청·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성 제고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시·도교육감

※ 2002. 3월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업무 위임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 기초자치단체(15개군)

- 사업추진절차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기본계획수립(시·도교육청) → 예산확보 및 지원(시·도교육청)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 공모(교육부) →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 · 교육청) → 사업계획서 심사 후 최종 선정 (교육부) → 사업시행(지자체 · 교육청)

○ 사업 내용(기존 및 신규 사업)

< 방과후교육활동 지원(기존) >

- 총사업비 : 505억원(2006)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초 · 중 · 고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교육소외 지역 · 계층을 위한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역교육청 단위 순회강사 확보 및 강사비 지원
 - 교재 · 교구, 통학버스 등 운영비 지원
 - 지역사회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 활용
 - 문광부의 문화 · 예술교육 관련(국악 · 연극 · 영화 등) 강사풀제 활용 확대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신규) >

- 총사업비 : 169.5억원(2006)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읍면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 사업 규모 : 15개 기초자치단체 선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100%(특별교부금 50%, 지자체 부담 50%)
- 지원조건 :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자생력을 갖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모델 개발을 희망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에 상응하는 대응투자 의지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
- 시도별 배분내역 : 1개 군지역 당 11.3억원
- 사업 주요내용
 -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여 학교별로 프로그램 특화 또는 학교간, 학급간 교육대상 확대 및 시설 개방

- 다양한 지도강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내 재직 교원, 인근 중소도시 학원 강사, 지역소재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강사의 질 관리 노력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 재원형태 : 지방교육재정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34,300	-	34,300
2006	-	-	-	-	-	67,450	-	67,450
(증△감)	-	-	-	-	-	33,150	-	33,150

* 예산 내역은 전국 학교의 방과후 교육 관련 학교별 예산의 총합임(농산어촌 지역 포함)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지역 학생에게 학습지도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 학습·문화공동체 구축 유도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자생력을 갖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담당자 : 방과후학교기획팀 권성연 사무관, 연락처 02-2100-6590)

< 2-1-3-5. 방학캠프 운영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내실화로 교육 복지 증진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학습으로 문화적 지체 현상 완화

○ 사업추진방향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 기회 부여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
-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도시체험학습으로 인한 학부모 경비 부담 완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
 -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보고('04.2.23)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세부계획수립(시·도교육청)→도시문화 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해당학교)→계획 검토 및 선정·지원(시·도교육청)→도시체험학습 운영(해당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면지역 이하(도서벽지 포함) 초등학교
- 사업 규모 : 면지역이하 초등학교 중에서 사업 신청학교(2,070개교 대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한 학교당 100만원 내외, 국고 50% · 지방비 50%
 - ※ 국고 1,035백만원
- 지원조건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가 제출한 도시문화체험학습 계획서 심사 후 학교 규모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
 - ※ 교육부는 시도별 면지역 이하 학교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은 계획서 심사 후 차등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문화체험학습 실시
 - .. 문화유적 : 사찰, 성터, 궁궐 등 유적지 및 문화재
 - .. 공공기관 : 시청, 소방서, 교육청 등
 - .. 문화시설 : 각종 전시회, 영화관, 도서관
 - .. 산업시설 : 산업체, 공장, 백화점 등
 - .. 체육시설 : 운동장, 경기관람 등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4	5.5	16	·	·	8	136.5	114.5	66	147.5	119.5	149,	135	125.5	8	1035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08년(총 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1,035	-	-	-	1,035	686	-	1,721
2006	1,035	-	-	-	1,035	1,035	-	2,070
(증△감)	-	-	-	-	-	349	-	349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시·도 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권장
- 단위학교는 전년도 운영 결과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체험학습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 여건에 따라 방학이나 학기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
- 학부모의 추가적인 경비 부담은 가급적 억제
- 교과와 관련이 없는 체험활동은 지양

(사업담당자 : 초중등교육정책과 노현정 교육연구사, 연락처 : 02-2100-6246)

<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공립 유치원 신·증설로 질 높은 유아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추진방향
 - 유아교육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공립 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교실 개·보수비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 사업추진절차 : 지원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자체계획 수립 및 집행(시·도 교육청)→ 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시·도교육청)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총사업비 : 37.5억원(150학급×50백만원×50%)
 - 사업규모 : 150학급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재원형태 : 국비(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	-	-
2006	3,750	-	-	-	3,750	3,750	-	7,500
(증△감)	3,750	-	-	-	3,750	3,750	-	7,5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6년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하여 '07년이후 사업 계속여부 등 추진방안 마련
(사업담당자 : 유아교육지원과 황건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6377)

<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교육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만5세아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
- 저소득층 만3·4세아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아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확대('04년도 신규)
- 저소득층 가정으로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 취원시 둘째 자녀 이상의 교육비 일부 지원('05년도 신규)
 - ※ 동 사업은 농어촌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소득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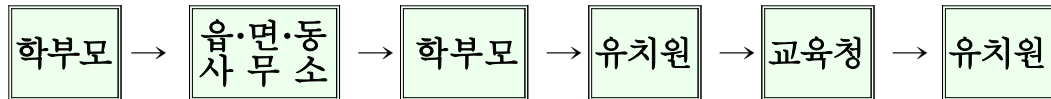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전체 만5세아 13.2%('05)→24.0%('06)
 - ※ 보육시설 포함 : 30%('05)→50%('06)
 - 지원인원 : 81천명('05)→142천명('06)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전체 만3·4세아 3.1%('05)→15.7%('06)
 - 지원인원 : 32천명('05)→155천명('06)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확대
 - 지원인원 및 금액 : 17천명, 월 3만원 이내 → 10만명, 월47천원 이내
- 지원범위 및 지원액 증액으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범위 확대
 - 만 5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수준이하(4인가족기준 318만원)
 - 만 3,4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수준이하(4인가족기준 247만원)
 - 지원액 증액
 - 국·공립 : 월 53천원(급식비 포함)
 - 사 립 : 월 158천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 사업추진절차

(증명발급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지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약 307천명
 - 만5세아 : 142천명
 - 만3,4세아 : 155천명
 - 두자녀교육비 : 10천명
- 사업 주요내용 : 저소득층 가구의 만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비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99년-계속(만5세아), '04-계속(만3·4세아), '05-계속(두자녀 이상)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83,564	-	83,564	83,564	-	167,128
2006	-	-	197,195	-	197,195	197,195	-	394,390
(증△감)	-	-	113,631	-	113,631	113,631	-	227,262

※ 만 5세아, 만 3·4세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전체 예산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 전체 수의 70%(보육시설 포함)까지 확대
-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및 두자녀 교육비 병행 실시

(사업담당자 : 유아교육지원과 황건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6377)

나.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1) 개 관

□ '06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전농가로 확대('05이후)
 - ('05) 107천명, 813억원 → ('06) 98천명, 874억원
- 농산어촌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확대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전국 농과대 2학년생 이상중 졸업후 영농종사 희망자와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중 성적우수·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지원을 통해 선도 농업인 육성 기반조성 및 잠재 인력군 확충
-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자영 농수산계고 급식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60개소의 운영지원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지원 및 지역 장애인, 장애인가족, 특수교육 관련자에게 특수교육 정보, 장애인 진로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추진

□ 예산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	-	-	-	-	87,428	-	87,428
대학생 학자금 융자	48,288	-	-	-	48,288	-	-	48,288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과계열대학생 학자금 보조	-			-	-	-	7,612	7,612
초중고생 급식비지원	-	-	-	-	-	46,600	-	46,600
자영농업계고 급식비지원	-	-	-	-	-	1,469	277	1,746
자영수산계고 급식비지원	-	-	-	-	-	114	114	228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3,000	-	-	-	3,000	3,000	-	6,000
합계	51,288	-	-	-	51,288	138,793	8,049	198,130

□ '07년도 추진방향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 지속 추진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용자 학자금의 회수율제고로 사업비 확충
 - 학자금 지원 : ('06) 26천명, 700억원 → ('07) 32천명, 941억원
 - 회수율 : ('06) 90% → ('07) 91%
- 재원확대를 통한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확대
-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지원확대
- 급식대상자가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급식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
- 농산어촌 지역(군단위) 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70개소 운영 지원
 -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관리, 지원,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농어촌 지역 교육청이 담당

(2) 세부과제

<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 대하여 연간 평균 843천원의 교육비 지원

○ 사업추진방향

-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전 농가로 확대('05이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부터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

- 사업추진절차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보호자 → 이장경유 → 읍·면·동·장)
→ 학적확인 조회(읍·면·동·장 → 학교장)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읍·면·동·장 → 보호자)

- 지원근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사업규모('06)

- 지원인원 : 98천명 수준(1인당 889천원정도)
- 지원금액 : 874억원 수준

- 사업주요내용

- 지원금액 : 해당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제외 : 국가, 자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자에 대하여는 지원가능

○ 예산

- 사업기간 : '9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82,800	-	82,800
2006	-	-	-	-	-	87,428	-	87,428
(증△감)	-	-	-	-	-	4,628	-	4,628

※ '05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교부세(국비) 지원분은 지방비에 합산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
- 농림어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한철수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7)

<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93년 UR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어촌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지원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하여 농산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 '05년도 1인당 평균 지원금액 : 253만원

○ 사업추진방향

- 농림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 및 농산어촌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대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시행주체 : 농림부
- 사업위탁 : 한국학술진흥재단
- 추진절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국고를 출연하여 학자금 융자·회수 등의 사업추진
 - 학자금 신청(대학생) → 접수·추천(대학교) → 심사·선정(학술진흥재단) → 학자금 송금(대학교) → 학자금 지급(대학생)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제1호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 사업규모('06)
 - 지원인원 : 26천명 수준(학기당 13.2천명)
 - 지원금액(용자금) : 700억원 수준('06년 출연금 48,288백만원)
 - ※ 용자금 = 당해연도 출연금 + 용자회수금
- 사업주요내용
 -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 용자
 -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출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12,733	-	-	-	12,733	-	-	12,733
2006	48,288	-	-	-	48,288	-	-	48,288
(증△감)	35,555	-	-	-	35,555	-	-	35,55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06) 26천명, 700억원 → ('07) 32천명, 941억원
- 용자학자금의 회수율을 제고시켜 사업비 확충
 - ('06) 90% → ('07) 91%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한철수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7)

<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양성
 - 우리 농업을 지식집약적 첨단산업으로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선도농업인의 육성기반 조성 및 잠재인력군 확충
-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진행중인 쌀 협상 및 DDA협상과 FTA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활력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도시소재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하숙비 등의 생활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사업추진절차 : 지침홈페이지 공고 → 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서 등록(대학생) → 출력 후 대학에 신청서 제출 → 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천(대학 → 농촌희망재단) → 장학생 확정(재단) → 장학금 지원(재단 → 농업인 통장)

○ 사업내용(기존사업)

< 영농희망장학생 >

- 지원대상 : 전국 농과 대 2학년생 이상 중 졸업 후 영농종사희망자
- 선발인원 : 학기당 2,000명

- 지원액 : 학기당 120만원이내(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액의 80%수준), 농업인은 60만원
- 선발방법 :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

< 성적우수장학생 >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저소득층 자녀
- 선발인원 : 학기당 2,000명
- 지원액 : 학기당 100만원이내
- 선발방법 : 학교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할당하여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를 거쳐 확정

○ 예산

- 사업기간 : '04. 2학기 ~ (계속)
- 재원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100%
- 지원형태 : 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	10,485	10,485
2006	-	-	-	-	-	-	7,612	7,612
(증△감)	-	-	-	-	-	-	△2,843	△2,843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희망장학금 지원내용과 재단 사업 홍보 강화
- 재원의 확대를 통한 학자금 지원 확대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상목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9)

<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
- 농산어촌지역 학부모 급식비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지원 확대
- 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 사업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농산어촌 초등학교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시·도교육청)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시·도교육청) → 예산지원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 → 사업시행(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학교 초등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초 750,537명에게 식품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 466억원,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시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

- 사업 주요내용 : 급식비 일부 지원(연간 180일)

- 시도별 배분내역 : 시도별 지원학생수 기준

○ 예산

- 사업기간 : '06년(계속사업)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62,600	-	62,600
2006	-	-	-	-	-	46,600	-	46,600
(증△감)	-	-	-	-	-	△16,000	-	△16,000

※ 2005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은 466억원 이었으나, 연간 지원실적은 626억원으로 증가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지원 확대

○ 교육복지 증진을 통한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농산어촌지역 급식비 지원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요청

(사업담당자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김동로 주무관, 연락처 : 02-2100-6397)

< 2-2-3-2.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 지원(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
- 자영농과생 급식비 643천원(기숙사생) 부담경감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의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도교육감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사업추진절차
 - 급식비 지원신청서 제출(도교육감 → 도지사) → 급식비 지원통보(도지사 → 도교육감) → 급식비 지원(도교육감 → 해당 학교장)
- 지원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 11. 3)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전국 11개 농과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생

- 사업규모('06)

- 지원인원 : 2,422명 수준
- 지원금액 : 15억원 수준(지방비 및 교부세)

- 사업주요내용

- 지원단가 : 기숙사생 3,090원/일, 비기숙사생 1,030원/일

※ 국비 예산외 지방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대상 학생에 대한 양질의 급식을 위해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집행도 가능

- 지원일수 : 연간 260일

○ 예산

- 사업기간 : '86년 - (계속)
- 재원형태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1,303	246	1,549
2006	-	-	-	-	-	1,469	277	1,746
(증△감)	-	-	-	-	-	166	31	197

※ '05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교부세(국비) 지원분은 지방비에 합산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급식대상자가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급식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한철수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7)

<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해양수산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촌에 정착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인력 양성

○ 사업추진방향

-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어업인후계자를 육성하고, 우수한 수산전문인력의 어촌정착 유도를 위하여 수산계고등학교 자영수산학과 학생의 식비 일부를 보조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자영수산과 급식비 보조금 지급신청(해당학교 → 교육청)
- 보조금 교부신청(교육청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교육청)
- 보조금 정산(교육청 → 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추진배경
 - 젊은이들이 어촌을 떠나는 현실에서 어촌에 정착하여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어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젊은 어업인 양성

- 사업대상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4개 수산계고
 - 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 · 신안압해중고, 경북 포항해양과학고
-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87조(보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별표(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수산계학교 육성방안('86 교육부)

○ 예산

- 사업기간 : '87 ~ 계속
- 재원형태 : 도비(분권교부세 포함) 50%, 교육인적자원부 3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132	132	264
· 충남	-	-	-	-	-	46	46	92
· 전남	-	-	-	-	-	46	46	92
· 경북	-	-	-	-	-	40	40	80
2006	-	-	-	-	-	114	114	228
· 충남	-	-	-	-	-	26	26	52
· 전남	-	-	-	-	-	46	46	92
· 경북	-	-	-	-	-	42	42	84
(증△감)	-	-	-	-	-	△18	△18	△36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4개 수산계고(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 · 신안압해중고, 경북 포항해양과학고)에 대한 급식비 지원 계속 추진
- 급식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학생수 감소에 대한 적정 계획 수립

(사업담당자 : 수산경영과 김동욱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61)

< 2-2-4-2.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향후 순회교육 및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확대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지역(군단위)의 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순회교육 확대 지원 및 지역의 장애인, 장애인 가족, 특수교육 관련자에게 특수교육 정보, 장애인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업무 수행 기능 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관리, 지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관할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가 수행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순회교육)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규모 요구 신청(시도교육청)→ 사업요구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교육부)→ 지원계획 통보(교육부)→ 시도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역교육청 지원계획 통보(시도교육청)→ 사업 집행계획서 수립 및 집행(지역교육청)→ 사업집행결과 보고 (시도교육청)→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교육부)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의 가정, 시설 및 일반학급, 특수학급의 장애학생
- 사업규모 : 60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1억원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지역선택·결정
- 사업주요내용
 - 순회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 학생 추가 교육지원(학교 수업시간 이외 별도 시간 편성하여 치료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홈페이지 개설 운영)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만 3세부터 취학전 유아)
- 시·도별 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국비	지방비	계	비고 (지원센터수)
인천	50	50	100	1
울산	50	50	100	1
경기	200	200	400	4
강원	200	200	400	4
충북	200	200	400	4
충남	400	400	800	8
전북	250	250	500	5
전남	500	500	1,000	10
경북	300	300	600	6
경남	800	800	1,600	16
제주	50	50	100	1
계	3,000	3,000	6,000	60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09년(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900	-	-	-	900	900	-	1,800
2006	3,000	-	-	-	3,000	3,000	-	6,000
(증△감)	순증	-	-	-	2,100	2,100	-	4,2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지역(군단위)의 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70개소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순회교육 확대 지원, 지역의 장애인, 장애인 가족, 특수교육 관련자에게 특수교육 정보, 장애인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업무 수행 등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관리, 지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농어촌 지역교육청이 담당

(사업담당자 : 특수교육정책과 정동일 연구사, 연락처 02-2100-6385)

다.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1) 개 관

□ '06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교육감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8개도로 확대하여 부족한 농산어촌지역 초등교사의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 추진
- 초빙교장 임용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응모요건중 지역제한 폐지, 임용추천 심사강화 등 제도활성화 도모
 - '06.9월부터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 농산어촌 학교 교원중 순회근무, 복식수업 담당교사에게 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제공으로 교원사기 진작
- 농산어촌 학교 교직원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원에게 주거편의 제공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이하 지역에 실시 하되,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ICT활용 교육 등 e-learning 지원체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교체주기가 도래한 PC교체와 함께 동영상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환경 개선
-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여성농업인 센터 등 사회교육 현황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기관·단체에서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자원봉사자, 교사, 기타 전문가 등 우수 강사인력 지원망 구축

□ 예산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농산어촌학교 교원근무수당	2,810	-	-	-	2,810	-	-	2,810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현대화	6,000	-	-	-	6,000	-	-	6,000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6,300	-	-	-	6,300	6,300	-	12,60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	-	-	-	18,305	-	18,305
합 계	15,110	-	-	-	15,110	24,605	-	39,715

□ '07년도 추진방향

-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 편입학제 확대를 적극 권장
- 교원 초빙·공모제 시범학교에 대한 학교 운영의 자율권 부여, 운영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06년 9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실시
 - 1차 : '06. 9 ~ '08. 9, 2차 : '07. 3 ~ '09. 3, 3차 : '07. 9 ~ '09. 9
- 농산어촌학교 교원근무수당 지급 및 교원사택 확충·신설 사업은 1년간 시행 실적을 점검하여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 시행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확충사업 지속 추진
 -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과 연계 및 단위학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PC보급 및 인터넷 통신환경을 지원함에 있어 도·농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ICT활용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노후 PC의 주기적 교체 및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추진
- 농산어촌 사회교육 조직망 및 프로그램 통합 운영 추진
 - 시·군을 중심으로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방법, 협력·상호보완 등 센터로서의 기능 개발

(2) 세부과제

< 2-3 -1-1.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교육인적자원부)>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교원들의 도시지역 근무 선호경향으로 교대 졸업생들의 농어촌지역 근무 기피 및 도단위 지역 교육청의 현직 초등교원 이탈 등 부족현상 발생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04.3.5)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사업추진방향

-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당해 지역 교육대학에서 별도전형으로 선발하여, 졸업후 당해 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 임용 후 당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2~4년) 의무 복무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2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입학·편입학), 제31조 (학생의 선발),
- 제33조 (대학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등) 및 제34조제2항 (특별전형)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 단위 시·도교육청과 관내 교육대학
- 사업추진절차 : 교육감과 교대총장간 협약 체결 → 교육감 시·군별로 일정 인원 추천→ 교대 신입생 선발 →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 졸업후 의무복무 부과

○ 사업 내용

- 현행 4개도 (전남, 강원, 충북,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8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로 확대
- 신(편)입생 선발방법
 - 입학대상 : 교육감이 추천한 자
 - 선발인원 : 교육감과 교대총장이 협의 결정
 - 선발방법 : 해당 교대총장이 결정
- 장학금 지급 : 교육청 예산 반영 적극 권장
- 임용시험 응시 제한 및 복무 의무
 - 교육감 추천 신(편)입생은 졸업 후 반드시 당해 교육청의 임용시험에 응시
 - 임용 후 2~4년간 의무복무 (추천대상자 선발 및 입학모집요강에 명시)
- 위반 시 제재 : 장학금 환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기회 제한(2~4년간)
 - 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사적계약(각서 등)에 의해 실효성 확보
 - 시·도 초등교사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한 응시기회 제한

○ 추진방법

- 확대 시행방안 시·도교육청 및 교육대학에 통보 : '06. 4월 중
-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대학에 추진 권장 유도 ('06.4~10월)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 권장
 - 교대 총장 협의 및 교무·학생처장 회의 등을 통하여 추진 권장

○ 예산 (시·도교육청별 자체예산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1년부터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지원액 : 4개교육청에서 선발된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200만원 지급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편입학 확대 적극 권장

(사업담당자 : 교원양성연수과 황영준 사무관, 연락처 : 02-2100 - 6320)

<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유능한 교장을 농산어촌 학교에 초빙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내실화 도모

○ 사업 추진 방향

- 초빙교장 임용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응모 요건 중 지역제한 폐지, 임용 추천 심사 강화 등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 농어촌 1군 1우수교 등 혁신의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에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기 위해 '06년 9월부터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 사업 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02.9)

□ '06년도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 사업내용(기존 사업)

- 시·도 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빙교장제 실시 확대
 - 시·도교육감은 지역실정,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 실시학교를 지정
 - 시·도교육감이 농산어촌 학교를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에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초빙교장제 제도 개선 추진

-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하여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마련,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초빙교장제 점진적 확대와 제도 개선' 추진
- 우리부 시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송부하여 최종안 수립을 요청, 최종 개선안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06.9~)

- 농·어촌 지역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특성화중·고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06년 50개교)인 시범 운영
- 특성화중·고 약 20개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에게 공모기회 부여
-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교장 임용추천 심사 강화 및 2년 주기의 정기적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담보

○ 예산 : 비예산사업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교원승진임용제도 최종 개선방안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개정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06년 9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실시
 - 1차 : '06. 9 ~ '08. 9, 2차 : '07. 3 ~ '09. 3, 3차 : '07. 9 ~ '09. 9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에 대한 학교 운영의 자율권 부여, 운영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업담당자 : 교원정책과 마소정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10)

< 2-3-2-1.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수당 신설(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학교 소속 교원 중에서도 특히 업무가 가중되는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에게 수당 지급
- 농산어촌 근무 기피 문제 완화 및 우수교원 유인체제 마련을 통하여 농산어촌교육의 질 제고

○ 사업추진방향

-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순회근무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에게 월 5만원(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 3만원) 지급
-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농산어촌 수당지급규정 제정 및 시·도교육청 통보 → 기본계획(보조금 교부계획 포함) 수립(내부결재) → 시·도 교육청에 기본계획 시달(보조금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토록 행정사항 명기) → 시·도 교육청 보조금 교부(운영지원팀, 경리) → 집행 잔액은 반납(불용처리)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
- 사업 규모 : 4,955명 ('06.1.19.현재)
- 지원금액 및 형태 : 교사 1인당 월 50천원지급(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30천원)
- 지원조건
 - 순회교사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겸임근무 또는 순회근무를 명받아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사(초·중등교육법 제5조의 병설학교 겸임교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통합운영학교 겸임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복식수업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소규모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복식학급 담당교사 (복식수업이 아닌 수업도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 농산어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호의 해당 지역
- ※ 학교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의 해당 지역과 비해당지역의 경계지점에 소재하여 '농산어촌'인지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농산어촌'으로 간주함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 교사에게 수당지급
 - 현재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순회 근무하는 학교가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 필요

- 시도별 배분내역 : '06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사업
예산 1/4분기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시도	복식수업수당			순회교사수당			1/4분기 지원액 계 (천원)
	해당 교원 수 (명)		1/4분기 지원액 (천원)	해당 교원 수 (명)		1/4분기 지원액 (천원)	
	30천원 지급 대상자	50천원 지급 대상자		30천원 지급 대상자	50천원 지급 대상자		
부 산	6	0	540	0	2	300	840
대 구	0	9	1,350	0	14	2,100	3,450
인 천	38	1	3,570	7	3	1,080	4,650
광 주	0	4	600	0	20	3,000	3,600
대 전	1	0	90	0	0	0	90
울 산	6	2	840	0	29	4,350	5,190
경 기	37	72	14,130	45	219	36,900	51,030
강 원	284	77	37,110	170	169	40,650	77,760
충 북	33	48	10,170	12	394	60,180	70,350
충 남	52	77	16,230	10	390	59,400	75,630
전 북	33	70	13,470	9	350	53,310	66,780
전 남	277	163	49,380	70	348	58,500	107,880
경 북	191	242	53,490	72	338	57,180	110,670
경 남	56	47	12,090	22	327	51,030	63,120
제 주	10	13	2,850	0	86	12,900	15,750
계	1,024	825	215,910	417	2,689	440,880	656,790

※ 1/4분기 지원액 산출근거 : 지급대상자×월지급액×3월
(월지급액 : 50천원. 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30천원)

※ 각 시·도 연간 소요액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된 농특회계 예산에서 시·도간 조정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4년(총 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2,810	-	-	-	2,810	-	-	2,810
(증△감)	순증	-	-	-	2,810	-	-	2,81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6년도와 동일하되 1년간 시행 실적을 점검하여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행

(사업담당자 : 교원정책과 조대훈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36)

< 2-3-2-2. 교원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원에게 주거편의 제공
-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4.)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 주체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수혜자 : 농어촌 학교 교원
- 사업 집행 절차 : 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교육청)
- 지원 형태 및 수준 : 지자체 보조(시·도교육청)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개요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편의 제공
 ※ 농어촌의 문화·복지시설 낙후, 교통 불편, 자녀 교육문제, 가족과의 별거 및 주거환경 열악 등 어려움이 있는 교원근무여건 개선
- 사업규모 : 도서·벽지지역 사택 150호
- 지원액 : 60억원(150호×40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2010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6,000	-	-	-	6,000	-	-	6,000
(증△감)	6,000	-	-	-	6,000	-	-	6,0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6년도와 동일하되 1년간 시행 실적을 점검하여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행

(사업담당자 : 교육복지정책과 윤권수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45)

<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교육 및 문화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에 집중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본환경을 개선함으로써
-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케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및 방과 후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이하 지역 실시 하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는 제외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국고(농특)과 지방비 1 : 1 매칭펀드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학교도서관 계획 수립 추진
 - 단위학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4.)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청, 단위학교
- 사업절차 : 기본운영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운영계획수립(도교육청) → 사업 공모(도교육청) → 대상학교 공모 제출(해당학교) → 계획 검토 및 선정(도교육청) → 사업시행 준비(해당학교) → 예산지원(교육부→도교육청→지역교육청, 학교) → 사업시행(해당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학생수 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10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제외 단, 교육감이 인정할 경우 300명 이하 학교도 가능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 이하 지역

- 사업규모 : 252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당 5천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농특(국고) 50%, 지방비 50% Matching Fund

-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자료구입비, 1%이상 도서관운영비로 편성

- 사업 주요내용

-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도교육청별 배분내역('06년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학교수)

(단위 : 학교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2	31	29	16	31	30	38	38	32	7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3년(총8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6,300	-	-	-	6,300	6,300	-	12,600
(증△감)	순증	-	-	-	6,300	6,300	-	12,6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확충 사업 지속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과 연계 추진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국고(농특)와 지방비 1 : 1 매칭펀드로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 마련 추진
 - 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학교도서관 계획 수립 추진
 - 단위학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사업담당자 : 지식정보기반과 홍강표 주무관, 연락처 : 02-2100-6555)

<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교육인적자원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ICT 활용 교육 등 e-러닝 지원체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PC 보급, 인터넷 통신회선 고도화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사업추진방향

-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급
- 교체 주기에 도래한 PC 교체와 함께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환경 개선

○ 사업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정보화), 제23조의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 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모든 교과교육에서 10%이상 ICT 활용)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인프라 보급 기준 제시(교육인적자원부) → 인프라 보급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활용(학교)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초·중등학교
- 사업규모 : 전국 초·중등학교(10,559)
- 지원 금액 및 형태 : 전액 지방비 추진사업

- 사업 주요 내용

- PC 1대당 학생 5명 수준으로 고도화
-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 속도를 2Mbps로 증속

○ 예산

- 사업 기간 : '97. - 계속
- 재원 형태 : 지방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22,118	-	22,118
2006	-	-	-	-	-	18,305	-	18,305
(증△감)	-	-	-	-	-	△3,813	-	△3,813

※ 지방비 산출근거

- '05년 : 총 투입액(1,427억원) x 농어촌 학생수 비율(15.5%)
- '06년 : 총 예산액(1,181억원) x 농어촌 학생수 비율(15.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환경을 지원함에 있어 도·농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아울러 ICT 활용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노후 PC의 주기적 교체 및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담당자 : 지식정보정책과 이선희 사무관, 연락처 : 02-2100-6545)

< 2-3-6-0.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운영(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시·군지역내 주민교육관련 기관·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관리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
 - 교육·문화·복지를 결합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등으로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지역의 교육관련 인력·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 농산어촌지역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결·체계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시행주체 : 농림부
 - 추진절차 : 사회교육관련 실태조사(시·도) → 운영계획수립(농림부) → 운영 계획 통보(시·도)
- 사업내용(신규사업)
 - 실태조사 :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여성농업인센터 등 사회교육시설 현황
 - 운영계획 수립
 - 시·군단위로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센터, 농협 등 각종 기관·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조정
 - 기존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 자원봉사자, 교사, 기타 전문가 등 우수강사인력 지원망 구축
- 예산 : 비예산사업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사회교육 조직망 및 프로그램 통합운영
 - 시·군을 중심으로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방법, 협력·상호보완 등 센터로서의 기능 개발
 - 시·군에서 매년 분기별(또는 반기별)로 종합프로그램 발간 및 홍보체계 구축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한철수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7)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가. 인적역량 강화

(1) 개 관

□ '06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순회교육), 특별과정 운영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 농촌지역개발 관련 표준교재 마련
 - 지역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검색·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 출향도시민 대상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 농산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제도 시행

□ 예산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인적 역량 강화	1,420	-	-	-	1,420	480	120	2,020

□ '07년도 추진 방향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개발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 확충·운영

(2) 세부과제

< 3-1-1-0.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개발리더, 참여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사업추진능력 배양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 강화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방향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및 승인(농림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정산(농림부)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림부) →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및 선정(시·도) →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 및 선정(시·군·구) → 협약체결(마을, 사무장, 시·군·구) → 업무수행(사무장) 및 추진상황 점검, 채용비용 지급 등 사후관리(시·군·구)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지역주민 등
- 사업규모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시스템 마련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 마을사무장 1인당 월100만원(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사업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계적인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순회 교육), 특별과정 운영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마련
- .. 지역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검색·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 .. 출향도시민 대상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 .. 농산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 체험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제도 시행

- 시·도별 배분내역(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단위 : 개소(명), 백만원)

구분	계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00	1	16	17	5	9	17	18	7	7	3
사업비	600	6	96	102	30	54	102	108	42	42	18

* 사업비는 국고기준임

○ 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재원형태 : 정액보조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257	-	-	-	257	-	95	352
2006	1,420	-	-	-	1,420	480	120	2,020
(증△감)	1,163	-	-	-	1,163	480	25	1,668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 확충·운영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전영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2)

나.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 개발

(1) 개 관

□ '06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적 소도시로 육성
 - '06년에는 194개 소도읍중 66개 읍에 대하여 지원
- 소도읍을 거점으로 배후 농산어촌마을은 영농권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므로써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 도모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56개 권역(계속 36, 신규 20)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권역당 70억원 이내)
 -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 소도읍의 서비스권역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소재지(중심마을)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안 마련
 -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부업·복지·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17개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권역당 35억원 규모)
 -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지원
 - 53개 산촌마을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법정리당 14억원 지원)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 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지역의 잠재자원 개발, 소득화사업, 경관 형성, 커뮤니티 형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 유도
 - 지역주민·지자체 및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 추진

□ 예산 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촌마을 종합개발	3,250	43,400	-	-	46,650	10,850	-	57,500
어촌 종합개발	-	30,917	-	-	30,917	7,315	414	38,646
산촌 종합개발	-	18,279	-	-	18,279	7,350	-	25,629
소도읍육성	-	61,700	-	61,700	123,400	170,960	106,893	401,253
합 계	3,250	154,296	-	61,700	219,246	196,475	107,307	523,028

□ '07년도 추진 방향

-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완료 위주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 '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6개 소도읍중 14개 읍 완료
 - '07까지 계획된 어촌종합개발 160개권역중 미개발 8개권역 완료
- 신규착수지구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평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시행의 타당성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소도읍 대상지역은 지역개발·건축·문화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소도읍 육성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개 읍을 선정
- 지역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적자원 육성계획에 의해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업시작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산촌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경영마인드, 인재 양성 등 사업추진역량 함양
-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및 홍보
 - 농산어촌 지역별 특색 있는 정비유형 개발 및 성공사례 등 적극 홍보

(2) 세부과제

< 3-2-1-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을 농촌다운 경관의 유지·보전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기대효과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농촌권역의 종합정비로 지역개발 효율성 증대
 - 농촌고유기능 활성화로 농촌의 농촌다움 회복
 - 농촌지역에 잠재된 인적·물적자원을 활성화하여 농촌관광 등을 통한 농외 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 사업추진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 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
-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시·군→시·도→균형위·농림부)
→ 예비타당성조사(농촌공사, 전문가)→기본계획수립(공사 작성→시·군 수립→시·도 확정)→시행계획수립(시·군)
→ 사업시행(시·군)→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농어촌의 면지역
- 사업 규모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을 우선 지원
- '06사업비 : 43,400백만원(계속 33,400, 신규 10,000)
 - 계속사업 : '05년도에 사업착수한 36개 권역에 대한 계속사업 추진
 - 신규사업 : '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40개 권역중 20개 권역 신규 착공
 -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후 '06.9월이후 착공
- 사업 주요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S/W 관련사업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 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 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도시민유치계획 : 마을재개발, 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 공급계획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 사업비 지원 : 권역당 3~5년간 70억원 범위내(국고 80%, 지방비 20%)
- 계획수립 : 3,250백만원(예비타당성조사 1,200, 기본계획 2,000, 행정경비 50)
 - 시·도지사가 신청한 30개 권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계획수립 전문 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이중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되는 20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예산

- 사업비는 권역당 70억원 범위내 3~5년간 지원(국고 80%, 지방비 20%, 균특)
- 예비타당성조사 40백만원/권역당, 기본계획 100백만원 (국고 100%, 농특)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21,650	42,820	-	-	64,470	10,705	-	75,175
2006	3,250	43,400	-	-	46,650	10,850	-	57,500
(증△감)	△18,400	580	-	-	△17,820	145	-	△17,675

* 농촌주택융자금('05예산 15,600백만원)은 '06이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됨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2005년도 기본계획수립한 40개 권역중 2006년 착수(20개 권역)에서 제외된 20개 권역과 2006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20개 권역에 대해 지자체별 균특 회계 예산 확보를 통해 신규 사업착수
- 50개 권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40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한준희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1)

<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촌의 부족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
-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부업·복지·관광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돌아오는 어촌건설

○ 사업추진 방향

-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지원
- 선정된 권역의 중심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
- 권역별로 타 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개발
 - ※ 선정된 권역은 미리 권역의 적정규모, 합리적인 투자방향 등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지원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권역 선정(5~10개 어촌계)→권역별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확정(시·도지사) → 예산지원(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시행 및 관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군·구(어촌계)
- 사업 규모 : 225개 권역중 17개 권역('05년까지 135개 권역 완료)
 - '07까지 1단계 160개 권역 중 미착수 8개 권역 완료
 - '07이후에는 2단계 65개 권역에 대해 '13년까지 지속 추진
- 지원금액 및 형태 : 권역당 35억원 규모(2단계 50억원 규모)
 - '03년 이전 계속권역 :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부담 5%
 - '03년 이후 신규권역 : 국고보조 80%, 지방비 15%, 자부담 5%
- 지원조건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전 미리 각 시·도의 대상권역중 당해연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권역별로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 단, 사업집행주체가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실시한 권역은 제외함
 - 사업집행주체는 권역별 기본계획서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대상 권역의 투자규모를 감안, 세부사업시행계획을 투명성 있게 확정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대상사업중 어촌계 시행사업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권역의 범위가 1개 시·군·구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군·구의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체의 심의만을 받아 결정
 - ※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시 관광전문가를 포함하여 어촌관광활성화가 가능한 사업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주요내용
 - 다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시설사업을 우선지원
 - 권역내 이미 구비된 각종 수산시설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다수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업지원 시설 및 수산물 생산 저장 유통시설 등 소득기반시설외의 소득사업(식사, 숙박, 목욕탕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수)

(단위 : 권역)

계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비고
17	1	1	1	12	1	1	

※ 권역별 '05년 착수하여 2개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3년(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15%, 자부담 5%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25,426	-	-	25,426	7,098	293	32,817
2006	-	30,917	-	-	30,917	7,315	414	38,646
(증△감)	-	5,491	-	-	5,491	217	121	5,829

※ 균특회계(농특세전입금)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7까지 당초 계획된 160개 권역 중 미개발 8개 권역 완료
- '07이후에는 1단계사업 종료 후 어업인 수요가 큰 동 사업에 대해 2단계 개발 (65개 권역) 지속 추진
- 낙후어촌의 생산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하여 정주생활환경개선 사업 으로의 전환 검토
 -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증가 및 젊은 층 탈어촌으로 어촌의 공항기 상태 지속
 -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복합생활공간 조성
- 어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유도
 - 연안역을 이용한 어촌체험마을조성 등 생태체험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 어촌의 전통생활방식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체험 거리 조성

(사업담당자 : 어촌어항과 전성래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56)

<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산림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전 국토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도모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사업추진방향

- 산촌 소득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개발하여 파급효과 거양
-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 사업계획 수립, 시·군 등의 행정지원 및 컨설팅을 연계하여 추진
- 산촌체험, 녹색관광 도입 등 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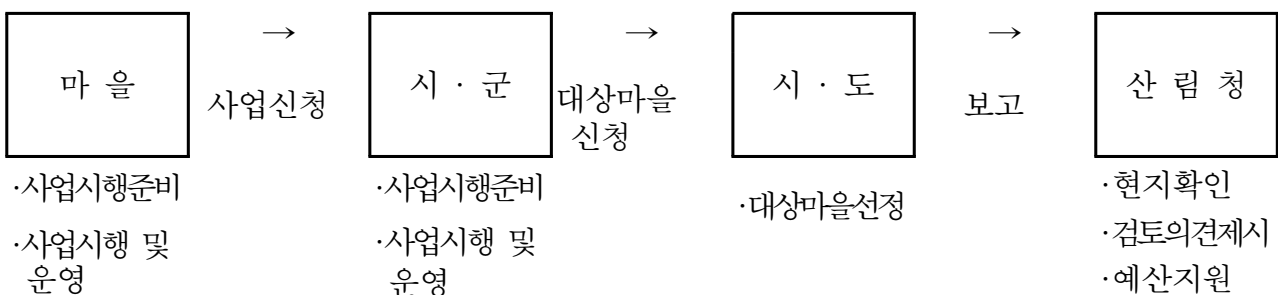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 (산촌의 진흥),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제23조(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법정리 또는 자연마을
- 사업규모 : 53개 산촌개발 마을('05년까지 118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법정리당 14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조건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의 산촌마을
 - 주민합의와 산주 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각종 시설물의 부지 확보, 대표자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능력이 구축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소득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취락구조개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 단기임산소득원 개발
 - 산촌 휴양기반 조성사업, 마을경관조성,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산촌종합개발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3 (18)	8 (2)	13 (3)	4 (2)	5 (2)	9 (3)	5 (2)	6 (3)	3 (1)

※ ()는 '06 신규 마을 개소수

○ 예산

- 사업기간 : '95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14,539	-	-	14,539	5,825	-	20,364
2006	-	18,279	-	-	18,279	7,350	-	25,629
(증△감)	-	3,740	-	-	3,740	1,525	-	5,26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산촌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경영마인드, 인재양성 등 사업추진역량 함양
 - 전문가의 컨설팅, 마을리더 및 주민들 교육·선진지 견학실시
- 현행 2년인 조성기간을 3~5년으로 장기화하여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정착 되도록 지도
- 산촌개발에 성공한 마을 적극 홍보

(사업담당자 : 경영지원과 진현무 사무관, 연락처 : 042-481-4193)

< 3-2-2-1. 소도읍육성사업(행정자치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추소도시로 육성
 - 2003년부터 10년간 소도읍내 정주여건 조성에 총12조원을 투자할 경우
 - 총27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소도읍에 33만1천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 80만여명의 인구유입 등 인구의 균형적 재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공동연구 보고자료

○ 사업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높은 거점소도읍을 선정하고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선택과집중」 지원방식으로 추진
- 지원대상 선정은 시군의 제안서를 심사하는 「상향식공모제」 방식 채택
- 단체장 책임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육성협약제도」 도입

○ 사업추진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신청(시·군→시·도) → 대상지역 심사(시·도 → 행자부) → 대상지역 확정(행자부) → 육성협약체결(행자부, 시·도,시·군) → 사업시행(시·군)
- ※ 선정지역 : 총 66개('03년 14, '04년 22, '05년 7, '06년 23)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12조(국비2조, 지방비2조, 타부처국비, 민자 등 기타 8조)

- 사업규모 : 194개 소도읍('01.11.9 지정·고시)중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4년
간에 걸쳐 100억원 분할지원
- 지원금액 : 617억(균특회계)
- 지원조건 : 국비 50%·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확충, 관광활성화사업 등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억원)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7	10	10	13	15	43.5	57.5	46	77	47.5	116.5	95.5	70.5	15

○ 예산

- 사업기간 : '03년 - '12년(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43,700	-	43,700	87,400	130,314	106,828	324,542
2006	-	61,700	-	61,700	123,400	170,960	106,893	401,253
(증△감)	-	18,000	-	18,000	36,000	40,646	65	76,711

□ '07도 사업 기본방향

- 소도읍을 배후농어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6개 소도읍을 지속적으로 추진
 - '03년 선정된 14개읍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평가 분석
- 시도로부터 추천된 소도읍 대상지역을 지역개발·건축·문화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소도읍육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개소도읍을
'07 대상지역으로 선정(194개읍중 86개읍 선정)

(사업담당자 : 균형발전팀 최석순 사무관, 연락처 : 02-2100-3855)

<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도시, 소도읍의 서비스권역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소재지(중심마을)를 군당 2~3개소 적극 육성
-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기초서비스,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배후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서비스 기능을 보강
-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복지시설을 면소재지에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 역할 회복을 통한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200개소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3년간 70억원이내 지원
 - 5일장 등 실질적인 중심면소재지 기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
 - *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존시설 현대화, 시가지 정비 등
 - 우선, '07~'09기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과정을 거쳐 확대 추진
- 소도읍과 함께 농어촌 서비스중심지로 기능하도록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인근 마을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절차에 준하여 추진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07~'18년
- 총사업비 : 14,200억원(국고 11,400, 지방비 2,800)
- 사업규모 : '07이후 10년간 농어촌 면소재지 육성 200개소
 - 교육·문화시설·복지회관, 주민쉼터, 체육공원, 소공원, 건강관리실 등
 - 도로 확포장 등 시가지정비, 승강장, 공동주차장, 조경시설, 조형물설치, 간판정비, 향토문화 발굴·보전 및 축제 개최 등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 개소당 70억원을 2개년에 걸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예산 : 2007년 이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	-	-
2006	-	-	-	-	-	-	-	-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촌지역의 중심면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 '07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10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 '08~'09기간에 시범사업 실시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한준희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1)

다. 기초생활여건 개선

(1) 개 관

□ '06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불량주택 4.5천동을 개량하고 빈집 6.6천동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을 개발 보급
- 간이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면지역 110개소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광역·지방상수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면지역 자연마을 266개 마을에 지하수를 이용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
- 농어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위해 하수처리장 52개소 설치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4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폐비닐 100천톤을 수거
- 농어촌지역 교통원활을 위해 농어촌도로 496km를 정비하고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및 공영버스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낙도 도서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수단의 제공을 위해 노후여객선 대체건조비(100톤급 1척) 지원
-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소득기반 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 및 도서 종합개발사업을 시행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지방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산림사료의 보전 및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테마과학관 및 산림박물관 건립 추진
-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소외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정보격차를 해소
 - 정보화마을 24개를 조성하고, 전국 농어촌지역 50가구 미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미구축 마을(1,612개소)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 농업경영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농산물 홍보, 직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 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및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 어촌정보화사랑방 50개소 개설 등 디지털 어촌을 구축하고, 연간 7,000명의 어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 지역농협·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 활용 및 농업정보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를 선정하여 선도자로서 농가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예산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어촌주택개량	18,000	-	36,000	72,000	126,000	54,000	-	180,000
농어촌 빈집정비	-	-	-	-	-	3,910	-	3,910
마을하수도정비	93,300	-	-	-	93,300	68,600	-	161,900
농촌주거모델보급	-	-	175	-	175	175	-	350
면단위생활용수개발	-	115,376	-	-	115,376	28,844	-	144,220
마을단위생활용수개발	-	35,297	-	-	35,297	8,824	-	44,121
면단위 하수도사업	66,667	-	-	-	66,667	28,572	-	95,2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0,900	-	-	-	10,900	15,602	-	26,502
농촌 폐비닐수거	3,000	-	-	-	3,000	-	-	3,000
소하천정비	49,686	-	-	-	49,686	49,686	-	99,372
농어촌도로	-	-	-	-	-	396,134	-	396,134
교통서비스 강화	-	-	-	-	-	23,100	-	23,100
국고여객선 건조	1,600	-	-	-	1,600	-	-	1,600
농촌정주기반확충	-	190,000	-	-	190,000	-	-	190,000
오지종합개발	-	108,300	-	-	108,300	46,416	-	154,716
도서종합개발	-	90,000	-	-	90,000	38,571	-	128,571
공공도서관 건립	-	10,086	-	-	10,086	3,919	-	14,005
생활체육시설	-	-	-	2,000	2,000	2,000	-	4,000
복합문화공간 조성	-	-	-	1,500	1,500	-	-	1,500
문화체험프로그램	-	-	-	3,000	3,000	-	-	3,000
테마과학관,사이언스숍건설	-	-	-	3,600	3,600	11,000	-	14,600
산림박물관 건립	-	3,050	-	-	3,050	3,050	-	6,100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정보화마을 조성	-	-	6,227	-	6,227	3,510	-	9,737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조성	-	-	9,000	-	9,000	8,800	17,600	35,400
정보화인프라 구축	480	-	-	-	480	8	20	508
농업인정보화교육	2,501	-	-	-	2,501	-	222	2,723
디지털어촌구축	696	-	-	-	696	-	-	696
농업·농촌정보화선도지산정	400	-	-	-	400	400	-	800
농어업관련정보제공확대	2,946	-	-	-	2,946	-	-	2,946

□ '07년도 추진방향

- 도시민들의 전원으로의 회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 귀농·귀향자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식수난이 심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식수문제 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예산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 완료된 지역 우선 추진
-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농지 및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교통개선을 위해 농어촌도로를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분권교부세로 지자체실정에 맞도록 추진
- 정주기반확충, 오지·도서종합개발 등 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지역안배보다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선
- 농어촌지역의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유선방식으로 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 독립가구에는 위성인터넷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농업인의 심화단계 정보화교육 수요충족을 위해 중기 및 전문과정을 확대 실시
- 농업농촌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 및 농업인 정보이용 활성화

(2) 세부과제

< 3-3-1-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행정자치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 향상 도모
-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오염방지
- 마을하수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공원, 조경, 편익시설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마을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 이용에 따른 사회문제화 예방

○ 사업추진방향

-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빈곤층,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발전 도모
- 체감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방식의 주택개량·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
- 4대강유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보전이 긴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시설의 보급 확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 시설관리체계 구축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시·군) → 검토·취합·보고(시·도) → 사업계획확정(행자부) → 예산지원(행자부 → 시·도 → 시·군) → 시행(시·군) → 결산(지자체)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3,458억원(주택개량 1,800 마을정비 1,619 빈집정비 39)
- 사업규모 : 주택개량 4,519동, 마을(하수도)정비 127마을, 빈집정비 6,617동

- 지원조건 : 주택개량융자금(국비 30%, 주택기금 40%, 지방비 30%)
마을(하수도)정비 마을당 10억 정액보조, 빈집정비 전액지방비 부담
- 주요내용 : 농어촌 주택개량·빈집철거,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 예산

- 사업기간 : 1976~2014(1995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이후 사업확대)
- 재원형태 : 국비 등 융자·보조(마을정비는 양여금법폐지로 국고보조로 전환)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구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 특	재 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 어 촌 주택개량	2005	18,000	36,000	-	72,000	126,000	54,000	-	180,000
	2006	18,000	36,000	-	72,000	126,000	54,000	-	180,000
	(증감)	-	-	-	-	-	-	-	-
마을(하수도) 정 비	2005	90,300	-	-	-	90,300	95,600	-	185,900
	2006	93,300	-	-	-	93,300	68,600	-	161,900
	(증감)	3,000	-	-	-	3,000	△27,000	-	△24,000
농 어 촌 빈집정비	2005	-	-	-	-	-	4,171	-	4,171
	2006	-	-	-	-	-	3,910	-	3,910
	(증감)	-	-	-	-	-	△261	-	△261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5도2촌, 고령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이 전원으로 회귀하는 국가적 모델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농어촌 주거모델개발 및 정주지원 확대추진('05.3.22 국정과제 조정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무주택자, 귀농·귀향자를 위한 100㎡이내 신축 농어촌주택 융자지원
 - ※ 농어촌주택개량과 동일하게 세대당 4천만원(연리 3.4%, 5년거치 15년상환)
 -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표준설계도서의 개발·보급
 - ※ 우수 농어촌주택 및 주거단지 모델 발굴을 위한 설계·시공 우수작품을 공모 시상 및 표준설계도서 제작(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및 주거단지 유형별)
 - 다목적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무인자동감시·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환경부 다목적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에 따라 기존마을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매년 전체 국비지원액의 10%, 2006년 국비90억원)
 - 다목적댐 상류지역 신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 업무분야 전담추진
 - ※ 행정자치부에서는 마을내 하수관거시설을,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을 전담해 추진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사업담당자 : 균형발전팀 최석순 사무관, 연락처 : 02-2100-3855)

<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마을 및 농가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주거공간기법 도입
-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합리적인 공간 정비로 농촌주거생활의 가치 향상 및 쾌적성과 편안함 증진

○ 사업추진방향

- 농촌전통테마마을 민박농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관광 여건 조성
-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주택내부 개선 또는 텃밭, 담장·정원 조성,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마을에 어울리는 생태적 환경조성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제2조 2항,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30조),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농특위 대통령 보고자료, 2005.12)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대상마을선정(도농업기술원) → 대상농가 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농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행(농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가주택 진단 및 설계, 기술지도(시군농업기술센터, 관련 전문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농가
- 사업규모(사업량) : 5마을, 마을당 5농가 이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70백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농업·농촌 체험학습, 농가숙박 및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농촌생활 활성화와 도농문화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 마을중에서 본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내의 친환경요소를 도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민박 가능 농가로서 건축물 이력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 농가

- 사업 주요내용 : 농촌주택 리모델링 및 옥외공간 정비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수납공간계획에 의한 리모델링
- 생울타리, 조류·야생동물·곤충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태적 식재, 정원 조성
- 건물외벽 녹화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활용, 문화생활·휴식공간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마을수)

(단위 : 개소수)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경 북
5	1	1	1		1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20년(총 17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175	-	175	175	-	350
2006	-	-	175	-	175	175	-	350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시민의 농촌체류형 관광이 수요와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 어촌 체험마을 증가를 고려하여 사업량 확대
- 농촌체류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숙박공간 제공, 노후화된 농가주택, 고가의 친환경 소재 소요, 농가 및 마을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맞춤형 설계 및 컨설팅 필요 등의 제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단가 상향조정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자원과 김희순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2)

<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환경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간이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 도시 수준의 상수도를 설치, 양질의 풍부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 면단위 상수도보급률 : 35.2%('04)→ 50%('07) → 75%('14)로 향상

○ 사업추진방향

- 1단계사업('94~'04)이 완료됨에따라, 2단계사업 300개소의 지방상수도사업을 국고지원하여 상수도보급률을 2014년까지 75%를 향상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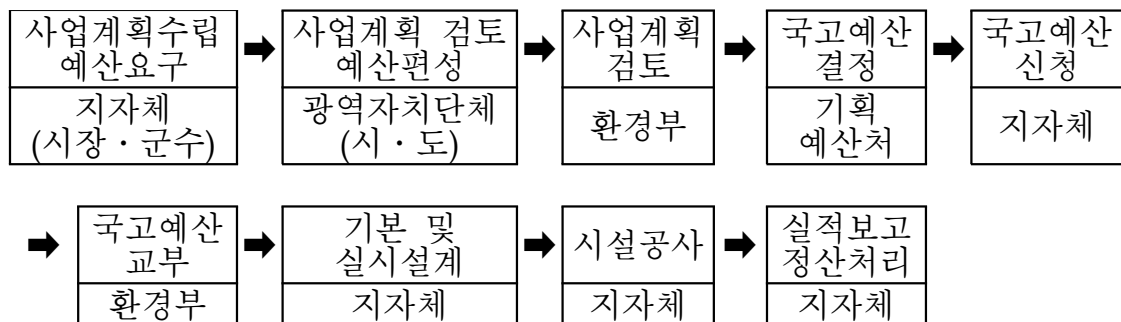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94. 1. 농어촌 지방상수도 장기계획수립
- '96. 3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면단위 미급수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지방상수도 110개소(신규 26개소, 계속 8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지원 50억원('07년부터 50억원 한도액 폐지)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07신규사업부터 국고 70%로 조정)
- 사업 주요내용
 - 정수장 건설 : 174,970톤/일
 - 송·배수관로 건설 : 3,932km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백만원)

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	1	10	10	11	15	14	16	20	11	2
115,376	1,500	7,615	9,000	8,326	18,576	19,897	14,359	22,425	9,176	4,322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4년(총 21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07년 신규사업부터 국고 70%로 조정)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96,910	-	-	96,910	24,233	-	121,143
2006	-	115,376	-	-	115,376	28,844	-	144,220
(증△감)	-	18,466	-	-	18,466	4,611	-	23,077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자체에서 사업비(국고)가 이월되는 경향이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
- '07년도 신규사업지역은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 300백만원만 지원토록 요청
- 장기사업지역은 조기에 완료토록 국고 예산지원 잔액분을 전액 신청토록 요청

(사업담당자 : 수도정책과 장이재 사무관, 연락처 : 02-2110-6878)

<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면단위지역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암반지하수를 개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여
- 면지역 소규모 농촌자연마을에 다양한 형태의 상수도 공급을 통해 식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문제 해결

○ 사업추진방향

- 오염이 되지 않은 암반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농업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
- 생활용수 개발 범위를 분산된 소규모 마을까지 확대하여 열악한 주거생활 환경 개선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희망마을 신청(주민)→대상지선정(시·군)→세부설계 및 시행 계획수립(시·군)→시행계획승인(시·도)→사업시행(시·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전국 농어촌 면지역 마을
- 사업 규모 : 7,751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비 : 44,121백만원(국고 35,297, 지방비 8,824)
 - 사 업 량 : 266개소
 - 사업기간 : 1994년~2014년

- 총사업비 : 12,951억원 (국고 8,230, 지방비 4,721)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주요사업 내용 : 암반지하수(지하수조사, 시추, 확공, 모타설치) 개발 및 이용시설(양수장옥, 물탱크, 정수기, 송·배수 관로 등)
- 시도별 배분내역

(개소, 백만원)

시도	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266	5	19	12	19	68	6	29	39	69
사업비	44,121	841	3,230	2,040	3,230	11,256	1,135	4,930	5,709	11,750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4년(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47,108	-	-	47,108	11,777	-	58,885
2006	-	35,297	-	-	35,297	8,824	-	44,121
(증△감)	-	△11,811	-	-	△11,811	△2,953	-	△14,76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기 수립된 농촌생활용수 중장기계획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균특예산에 반영된 지구를 최대한 지원하여 면단위 지역 소재 농촌지역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한 식수문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이성홍 토목사무관, 연락처 : 02-500-1968)

<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환경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율 증가로 하수도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면' 소재지를 기본단위로 사업 추진
- 시·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하수처리장 설치인가와 국고지원예산 편성과정에서 오수발생량, 수질 등 농어촌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추진

○ 사업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하수도법 제35조(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산신청(시·군→시·도→환경청)→ 예산신청 검토의견 보고(환경청→환경부)→ 예산지원(환경부→환경청→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운영(시·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면'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 사업규모 : 52개 하수처리장 건설(계속 43개소 포함)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치단체 국고보조 66,667백만원
- 지원조건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면 단위 지역
 - 국고지원금에 대한 매칭자금을 지방비로 확보(30%)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설치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단위 : 개소)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2	1	10	7	3	6	9	4	12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64,534	-	-	-	64,534	27,657	-	92,191
2006	66,667	-	-	-	66,667	28,572	-	95,239
(증△감)	순증	-	-	-	2,133	915	-	3,048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계속사업지역의 완공 목표로 우선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지역으로서 재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
- 사업기간은 2~3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예정

(사업담당자 : 생활하수과 남선광 사무관, 연락처 : 02-2110-6892)

< 3-3-2-4. 소하천정비(소방방재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기반 향상과 안전한 주민의 삶의 터전 마련

○ 사업추진방향

-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 우선 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에 기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소하천정비 및 관리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
- 상위 하천과 연계하여 수계별 완료 위주로 정비 추진
- 소하천정비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강구

○ 사업추진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 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비용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 자연재해저감시설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및 수문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시장·군수·구청장)→사업계획수립(시·도, 시·군·구)→예산확보(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사업계획 검토·확정(소방방재청)→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소방방재청)→정비사업추진(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추진
- 사업 규모(사업량) : 137개 시·군·구 427개소 184km 소하천정비
- 지원금액 및 형태 : 496억원,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정률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
 - 수해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근원적으로 피해 재발 방지
 - 상위 하천과 연계하여 수계별 완료 위주로 정비 추진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소하천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질 향상
 - 국가 정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조치 등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수해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근원적으로 피해 재발 방지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
 - 투자효과가 낮은 지역은 침수지역 토지매입 추진

- 시·도별 배분내역('06년도 소하천정비)

(단위: 개소수)

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7	1	8	3	23	30	27	37	56	75	120	44	3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16년(총 22년)
- 재원형태 : 국비50%, 지방비50%(Matching Fund)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48,096	-	-	-	48,096	48,096	-	96,192
2006	49,686	-	-	-	49,686	49,686	-	99,372
(증△감)	1,590	-	-	-	1,590	1,590	-	3,180

* 농특회계(농특세 전입금)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 도모
- 피해 발생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현 예산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재해 발생전 예방사업에 지속 투자토록, 국비 증액 방안 강구
-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특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사업담당자 : 재해경감대책팀 신영섭 주무관, 연락처 : 02-2100-5455)

< 3-3-2-5.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환경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만으로는 위생매립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위생매립시설 설치
- 농어촌지역에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

○ 사업추진방향

- 면단위의 소규모 비위생매립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군단위 또는 광역단위 (2개 군 공동설치) 처리시설을 유도하여 오염원 산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도모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정액보조사업인 관계로 지역별로 사업규모에 따라 보조율의 차이(최소 8.2% ~ 100%)가 심하고, 지원대상인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보조율 상향조정 검토

※ 매립장 1개소 건설에 평균 약 53억원이 소요되므로 현행 15억원의 국고보조는 실질소요 비용의 약 28%에 불과하여 정액보조를 유지할 경우 사업비의 평균 50% 수준인 27억원이 적정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절차

		환경부		
보조금 사업결정	통보	↓	↑	· 사업신청 및 추진실적보고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보고
		도		
보조금 재교부		↓	↑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조금 정산 및 보고
보조금 수령(국비+도비)		군		· 사업추진(국비+도비+군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기간 : '95년 - '14년(총 20년)
- 사업 시행대상 : 지방자치단체(군)
- 사업 규모 : 14개소(신규 9, 계속 5)
 - * '09년까지 160개소('05년까지 121개소)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에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 설치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14년(총 20년)
- 총사업비 : 2,293억원('05까지 기투자액 : 1,748억원)
- 재원형태 : 국비 15억원 정액(1개 사업당)지원, 총 사업비에서 국비의 부족액은 자체편성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10,500	-	-	-	10,500	30,676	-	41,176
2006	10,900	-	-	-	10,900	15,602	-	26,502
(증△감)	400	-	-	-	400	△15,074	-	△14,67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계속사업인 경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1년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 및 설계 등이 완료되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곳에 우선하여 지원
- 면단위의 소규모 비위생매립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군단위 또는 광역단위(2개군 공동설치) 처리시설을 유도하여 오염원 산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도모
- 사업비를 이월한 군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사업실적 정기점검 및 독려

(사업담당자 : 생활폐기물과 박규제 주무관, 연락처 : 02-2110-6926)

<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 사업추진방향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를 위하여 지자체의 자체 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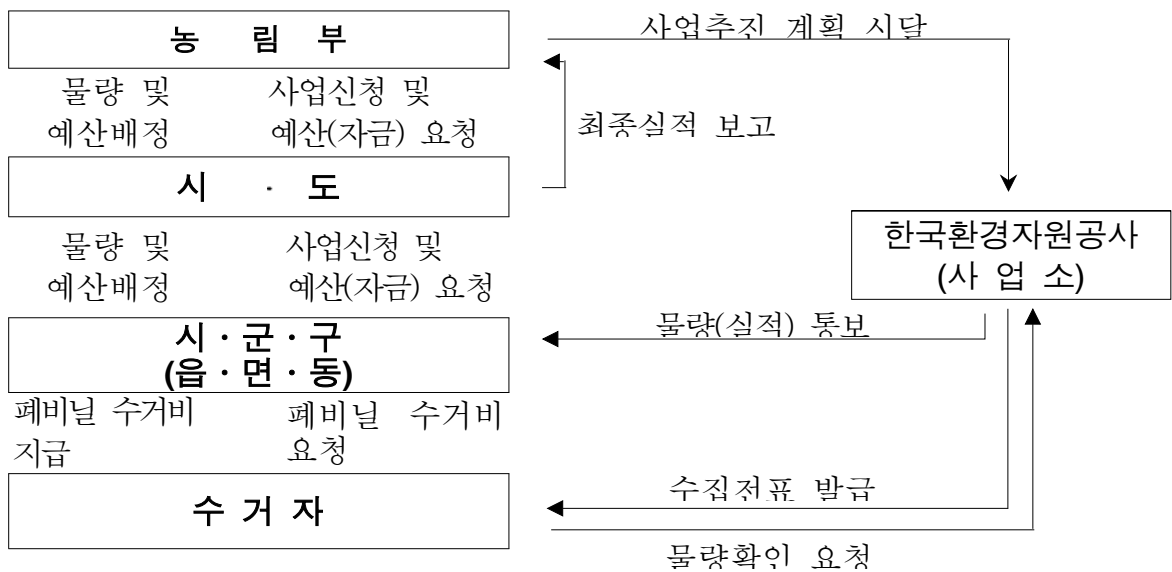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 절차



< 수행체계 >

-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대표, 또는 개인)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 수거물량 확인요청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는 수거자의 수거물량을 확인한 후, 수집전표를 수거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발급하고, 계량증명서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는 수거자 성명, 수집량,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수거자 통장사본 등을 작성 및 첨부한 후 폐비닐 수거비를 지급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체 확보한 『폐비닐 수거 보상비』와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를 수거자에게 지급(통장 입금)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수거자
- 사업규모(사업량) : 100천톤, 3,000백만원
 - 지원조건 : 30원/kg,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 사업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상 폐비닐 수거업무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수거책임이 있으나 농업인의 인식 부족과 고령화로 수거 기피, 수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규정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와 책임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 자체 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수거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계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사업량 (톤)	100,000	36	387	726	167	8,465	8,315
사업비(천원)	3,000,000	1,080	11,610	22,080	5,010	253,950	249,45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톤)	8,921	13,168	7,861	16,130	18,365	16,145	1,304
사업비(천원)	267,630	395,040	235,830	483,900	550,950	484,350	39,120

* 시·도별 폐비닐 발생량, 지자체의 자체 예산 확보액, 추진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자체 예산 확보액이 없는 지자체와 희망하지 않은 지자체는 배정대상에서 제외

○ 예 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04년까지 51억원 투자)
- 재원형태 : 국비 100% (kg당 30원 정액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2,550	-	-	-	2,550	-	-	2,550
2006	3,000	-	-	-	3,000	-	-	3,000
(증△감)	450	-	-	-	450	-	-	450

* 농특세 전입금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고품질농산물 수요확대 따라 폐비닐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폐비닐 수거 여건은 악화 예상
-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원인 폐비닐 수거활성화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

(사업담당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안규정 사무관, 연락처 : 02-500-1806)

< 3-3-3-1. 농어촌도로 정비(행정자치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을 촉진하여 농산어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추진
 - 농어민 생활에 필요한 농어촌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 해소
- * ('04) 포장연장 18,120km(포장율 : 29.4%) → ('09) 포장연장 19,270km(포장율 : 31.2%)

○ 사업추진방향

- 지역간 연결 등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 사업 추진
-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 위주의 획일적인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자연경관과 농산어촌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도로를 조성하여 농산어촌지역의 독특한 환경을 살리고 다양한 재질의 자연친화적인 공법도입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 면도, 리도 보다 농도에 대한 많은 수요를 감안 농도에 대한 더많은 지원 유도
- 사업량에 따른 일정 비율을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여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 체계개선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절차 : 기초자료조사및평가(시군) → 사업계획수립(시군) → 노선 우선 순위결정(시·군) → 예산반영(시·군) → 자체 사업시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3,961억원
- 사업규모 : 495.6km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도로 정비(면도, 리도, 농도)

○ 예산

- 사업기간 : '91년 법제정 이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지원 없음(양여금법폐지로 '05년부터 별도 지원재원 없음)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2005	-	-	-	-	-	277,509	-	277,509
2006	-	-	-	-	-	396,134	-	396,134
(증△감)	-	-	-	-	-	118,625	-	118,62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역활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조기배정 및 적기 집행 유도(연말 사업평가지 반영)
- 시행중인 사업은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

(사업담당자 : 균형발전팀 박일범 서기관, 연락처 : 02-2100-3847)

< 3-3-3-2. 교통서비스 강화(건설교통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및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차량고급화 및 이용편의 제고 등 서비스 강화

○ 사업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사업절차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에 의한 분권교부세 교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벽지노선 등의 운행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동법 제51조에 의거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 사업 규모 :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및 전국 1,423개읍면 공영버스 구입 등 지원(대당 1,800만원)
- 사업 주요내용 : 사업규모 참조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908	7	107	106	85	228	504	518	392	838	797	585	509	232
벽지보상	3,000	7	90	106	85	96	305	352	210	539	399	385	260	166
공영버스	1,908		17			132	199	166	182	299	398	200	249	66

○ 예산

- 사업기간

- 벽지노선 손실보상 : '82년 ~
- 공영버스 : '94년 ~

- 재원형태 : 지방비 10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벽지노선 손실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21,200	-	21,200
2006	-	-	-	-	-	21,200	-	21,200
(증△감)	-	-	-	-	-	-	-	-

※ '05년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분권교부세 30억, 지방비 182억원 추정)

- 공영버스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1,900	-	1,900
2006	-	-	-	-	-	1,900	-	1,900
(증△감)	-	-	-	-	-	-	-	-

※ '05년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지원(분권교부세 19억)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공영버스사업은 '05년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자체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
- 다만, 분권교부세가 '09년까지 한시적인 제도이고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므로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사업담당자 : 대중교통팀 김영현 사무관, 연락처 : 02-2110-8674)

< 3-3-3-3. 국고여객선 건조(해양수산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낙도 도서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 이용객 편의제고를 통한 수송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추진방향

- 노후 여객선은 우선적으로 대체하고 차도선이 접안 가능한 항로의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차도선으로 대체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시행 절차 : 여객선을 국고 건조후 낙도보조운항선사에 위탁관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80톤급 차도선 1척 대체 건조
- 사업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26개 낙도보조항로에 28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으로 노후선 또는 항로특성에 부적격한 여객선을 선정 연차적으로 대체 건조
 - 낙도보조항로인 통영/추도항로에 운항중인 여객선인 한려페리호(87. 3. 건조, 37톤, 여객정원 71명)를 대체 건조하여 동 항로에 투입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14년(총 20년)
 - 농특법 유효기간 연장(10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당초 '04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책특	소계			
2005	1,700	-	-	-	1,700	-	-	1,700
2006	1,600	-	-	-	1,600	-	-	1,600
(증△감)	△100	-	-	-	△100	-	-	△1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선령 10년 이상된 노후 일반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특성에 맞는 차도선 등으로 대체 지속 추진
- 매년 1~2척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여객선 대체

(사업담당자 : 연안해운과 김영신 사무관, 연락처 : 02-3674-6622)

< 3-3-4-1.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면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종합 정비(정주기반확충)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활력증진을 도모

○ 사업추진방향

- 정주민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 등 편익시설 정비
- 은퇴 도시민 및 이주 도시민의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농촌의 어메니티를 유지·복원하도록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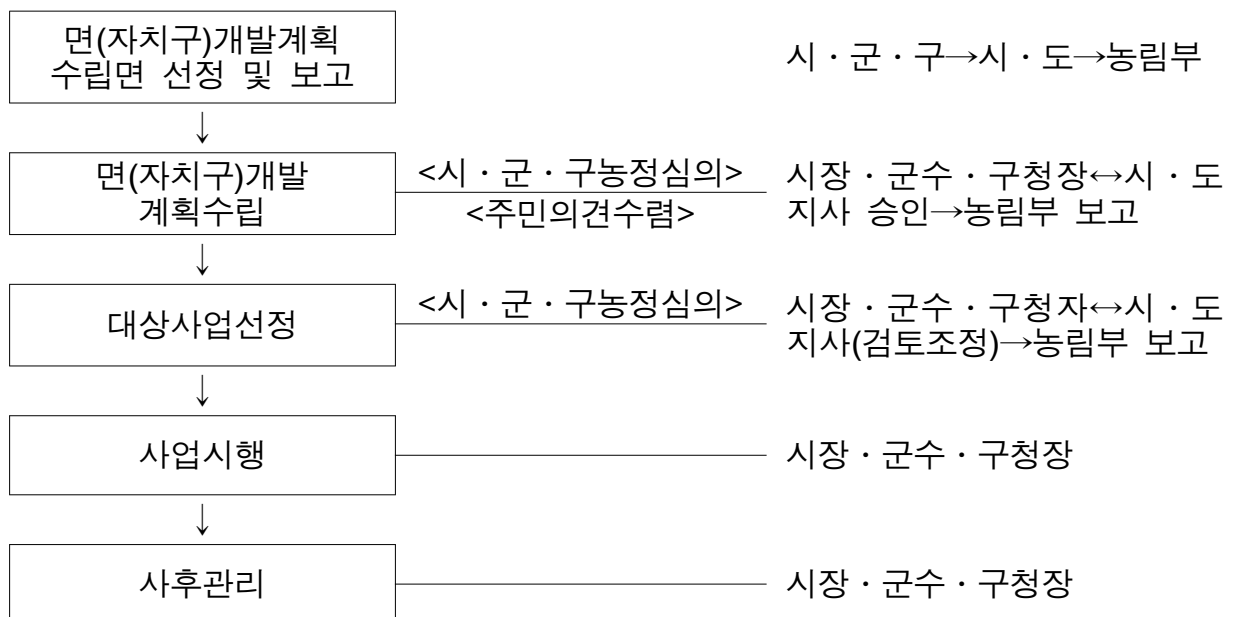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정주권개발대상 800개면(15개 자치구 포함)
- 사업규모(사업량)
 - '13까지 정주권개발대상 800개면을 정비

구 분	계	'02까지	'03	'04	'05	'06	'07~'13
사업량(면수)	800	562	56	152	338	300	(800)

※ '90~'04까지 1단계 770개면 지원완료(지방양여금), '05부터 2단계 800개 면을 대상으로 지원(균특회계)

- 지원조건
 - 보조사업 : 면당 3~5년간 30억원 보조(국고 100%)
 - 용자사업 : 주택신축 호당 3,000만원 이내(5년거치 15년상환)
주택개량 호당 2,000만원 이내(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주요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시설, 교량, 주차장 등
 - 농촌경관개선 :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설치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주택정비 : 주택의 신축 및 개량

○ 예산

- 사업기간 : '90~'13('13이후에도 지속추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163,918	-	-	163,918	-	-	163,918
2006	-	190,000	-	-	190,000	-	-	190,000
(증△감)	-	26,082	-	-	26,082	-	-	26,082

□ '07년도 추진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관개선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
 - 빈집철거 지원 및 빈공간을 소공원, 마을광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
 - 노후된 마을회관을 다기능 공간으로 리모델링
 - 콘크리트 담장 철거 및 식생담 조성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관개선사업 발굴 지원 등
- 정부차원의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통일된 비전제시와 일관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과 종합하여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시행
 - 정부부처간 지역개발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통합지침」 제정·시행 검토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이행우 토목사무관, 연락처 : 02-500-1966)

< 3-3-4-2. 오지개발촉진사업(행정자치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낙후소외지역인 오지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시설 및 문화·사회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지역의 특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기반 마련하여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생산·사회복지시설 등의 체계적 추진으로 소외된 오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 사업방향

- 시·단위 지역종합개발계획과 연계, 투자 효과를 극대화
- 지역의 고용 및 소득창출과 직결되는 사업을 최우선 선정
-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 적극 도입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시·군) → 사업계획 검토 및 취합(시·도) → 연도별사업계획 확정(행자부) → 예산지원 (행자부 → 시·도 → 시·군) → 사업시행 (시·군)

○ 사업내용(기존사업)

- 마을진입로, 마을간 연결도로, 농로개설 등 교통망 및 생산인프라
- 간이 상·하수도, 다목적 광장 등 생활환경개선
- 취업보, 도수로, 공동창고, 농산물집하장 및 판매장 등 산업기반시설

○ 예산

- 사업기간 : 2005~2009(5년)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110,000	-	-	110,000	47,114	-	157,114
2006	-	108,300	-	-	108,300	46,416	-	154,716
(증△감)	-	△1,700	-	-	△1,700	△698	-	△2,398

□ '07년도 사업의 기본방향

-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 지역 정주여건개선 및 관광·소득증대 기반 조성 확대
- 지역안배와 분산투자 방식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선
-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창출 사업을 적극발굴하여 추진

(사업담당자 : 균형발전팀 최승환 주무관, 연락처 : 02-2100-3845)

<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행정자치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서의 생산·소득 등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낙후지역의 장기적·종합적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 사업방향

- 분산투자 방식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선
- 도서별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관광인프라 구축 등 생산·소득연계사업추진
- 개발여건, 주민숙원도,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 선택과 집중방식 적극 도입
-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연육·연도교건설 등 접근성 제고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06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구선정(시·군) → 시·군별 사업계획 취합(시·도) → 연도별사업계획 수립(행자부)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심의(행자부) → 확정·시달(행자부)

○ 사업내용

- 호안도로, 연육·연도교, 마을연결도로 등 지역교통여건 개선사업
- 선착장, 물량장, 방파제 등 생산기반시설 정비
- 복지회관 건립, 하천정비, 하수처리시설 등 문화·환경시설 확충

○ 예산

- 사업기간 : 1998 ~ 2007 (10개년)
- 지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90,000	-	-	90,000	38,571	-	128,571
2006	-	90,000	-	-	90,000	38,571	-	128,571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의 기본방향

-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과 연계 생활·생산환경개선 및 관광·소득증대 기반조성 확대
- 지역안배와 분산투자방식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선
- 사업선정시 주민대표, 지역개발위원 등의 참여 활성화

(사업담당자 : 균형발전팀 전만권 사무관, 연락처 : 02-2100-3846)

<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관광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인프라 구축에 기여
-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방향

- 수요자 예측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규모의 적정성 유도
- 1관당 평균건립(20억) 비용을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80%까지 지원
 - 총사업비가 평균건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방비 추가부담

○ 사업추진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17조 및 농어촌발전종합대책 포함('94)
- 대선공약사항(2002. 12) : 공공도서관 임기 내 2배 확충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자치단체) → 예산신청서 검토(문광부, 균형위) → 예산확정(기획예산처·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문광부) → 사업집행 및 정산(자치단체) → 정산 확정(문광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2013년까지 260관 조성 목표 , 매년 6개관 신규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관 당 16억원 한도 내 총 건립비의 80%까지 국고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및 부지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건립비의 80%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 '06년도 지원 내역 : 14개관(신규 7관, 계속 7관) 10,086 백만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시 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계
지원관 수	4	2	2	1	3	2	14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3년(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9,851	-	-	9,851	1,970	-	11,821
2006	-	10,086	-	-	10,086	3,919	-	14,005
(증△감)	-	235	-	-	235	1,949	-	2,18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 확충 추진
 - 총 목표대비 연도별 실적 점검
- 보조사업자의 집행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 모색
 - '선 착공 후 지원'으로 지원방식 개선하거나 지원 조건 강화
 - 수시 집행실적 파악 등 집행독려

(사업담당자 : 도서관정책과 차혜란 주무관, 연락처 : 02-590-0544)

<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문화관광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등 인근 지역주민의 활용이 용이한 곳에 소규모 간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

○ 사업추진방향

- 전국 3,571개의 읍·면·동 단위에 2개소씩 설치 목표로 추진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생활체육시설) 및 시행령 4조
- 대통령지시사항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침통보(문화부) → 시도별 배분 금액내에서 마을추천(시·군→시·도→문화부)→대상마을 확정 통보(문화부) → 사업시행준비(마을,시·군)→예산지원(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도→시·군)→ 사업시행 및 준공(시·군 및 마을) → 정산보고(시·도) 및 시설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읍·면·동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년에 약 100 ~ 150 개소 지원('05년 127개소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20 ~ 50 백만원(기금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지역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부지의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학교 내 야간체육시설,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윗몸일으키기, 철봉 등),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및 조깅로 등 주민 선호시설의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 시·도별 읍·면·동 분포수에 따라 균등 배분 시행 예정(1/4분기)
- 사업실적 : 2005년까지 4,977개소 지원 (429억원)
- 장기계획 : 전국 읍·면·동에 2개소 지원(7,142개소)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1,079	429	20	30	30	30	540

○ 예산

- 사업기간 : '90년 - (단년도 지원)
- 재원형태 : 기금 50 %, 지방비 50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2,000	2,000	2,000	-	4,000
2006	-	-	-	2,000	2,000	2,000	-	4,000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준공토록 함(단, 여건에 따라 익년 사고 이월 집행)

(사업담당자 : 생활체육과 류성렬 주무관, 연락처 : 02-3704-9836)

<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문화관광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 대상으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으로 편중된 문화 불균형 해소
- * 강원도 정선 아리랑 학교 추억의 박물관 : 폐광지역의 함몰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활력 및 삶에 대한 의욕 고취라는 거대한 성과를 이룸 (개관 1년간 3만7000여명 관람)
- * 감자꽃 스튜디오 : 산촌 오지인 평창의 HAPPY 700 목적 달성의 매개체 역할로 지역 특성화 관광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 도모
- * 충남 서천 월기평생문화교육관, 전남 고흥 남포문화예술원 : 소외지역 폐교활용의 모델제시

○ 사업추진방향

- 주민 인근 유휴 공공시설 활용을 극대화하여 문화적 접근도 향상 및 문화 예술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문화정착 유도
- 기존의 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된 참여자가 주인되는 생비자적 공간 조성으로 소외지역 문화활성화 도모
- 정책연구 및 문화예술 전문 평가단체와의 전문적체계 도입으로 정책 목표 탈선 방지의 최적화 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consulting 위원회 조성으로 성과체계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
- 전문 회계법인의 검수·감리를 실시하여 사업비의 적절성, 투명성을 제고 하고 수혜주민들의 만족도 증가 최적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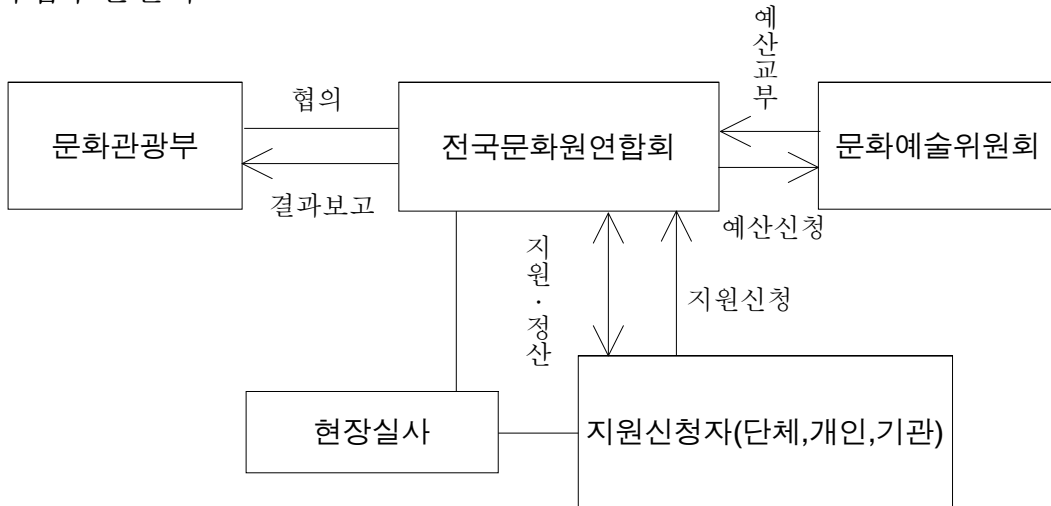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시책과 권장)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소 내외 조성
 - * 2004년 28개소, 2005년 11개소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1개소당 9천만원 내외/복권기금
- 지원조건
 -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휴공간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동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허락(동의)을 받은 곳
 -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근접성 등이 용이한 곳
 - 기 사용중인 문화공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
 - 생활문화공간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 의지 및 능력이 구축된 곳
- 사업 주요내용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대상으로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한 선정 기준에 의거 지원사업자를 선정, 유휴공간을 문화공간화로 리노베이션(90%)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10%)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구분	계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28	1	1		3	7	3	1	2	4	1	3	2
2005	11				2	1	1		2	3		1	1
2006	12	1		1	2	1	1	1	1	3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총 1년)
- 재원형태 : 기금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1,100	1,100	-	-	1,100
2006	-	-	-	1,500	1,500	-	-	1,500
(증△감)	-	-	-	400	400	-	-	4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지역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제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규모 문화공간의 폐해를 지양하고 주민과 근거리에 있는 소규모 복합 참여형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친화적 문화서비스 제공
-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를 적극활용 폐교 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로 도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사업담당자 : 지역문화과 이흥직 사무관, 연락처 : 02-3704-9552)

<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문화관광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적, 신체적, 경제적 사유로 문화현장에서 배제된 문화소의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문화 민주주의 실현
- 문화향수권 확대의 전국적 균점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적 가치와 확산을 통한 농산어촌 주민의 질 높은 삶 구현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문화소외지역 주민, 실버세대,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 사업대상 별로 사업 추진
- 농산어촌 문화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내 노인문화·복지전문가의 공동참여와 지역복지 및 문화기반시설 간 연계 강화
- 사업대상 별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사업효과 제고
- 수혜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기준 등을 제도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하고, 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 제고

○ 사업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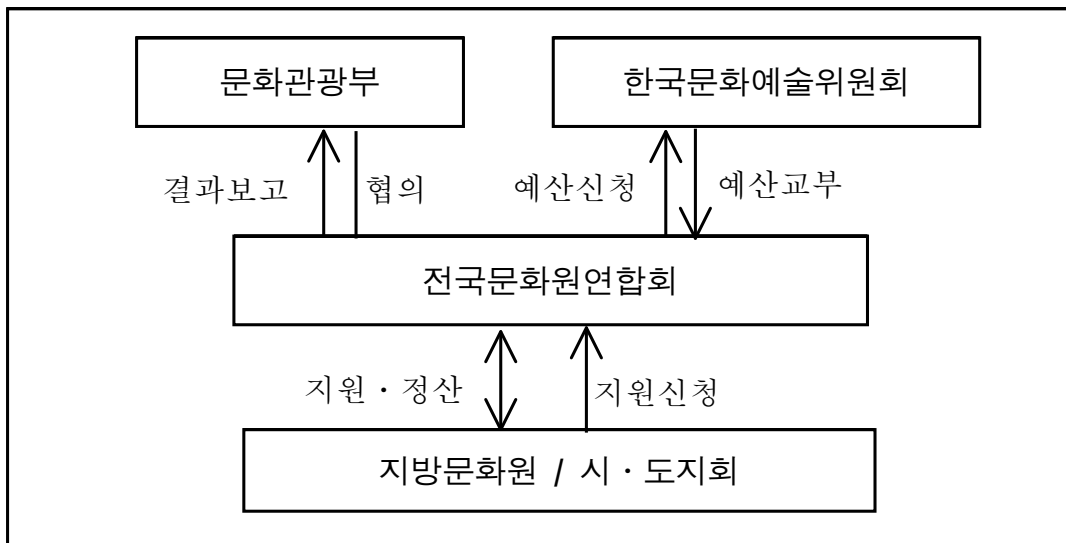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제2항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15조 (경비의 보조 등)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포함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시행주체 : 지방문화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 사업추진절차



- 시행절차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기금 신청 (전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지원 신청
(지방문화원 및 시·도지회 등 ⇒ 전국문화원연합회)
- 심사 및 지원 (전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무작위 표본추출 현장평가 실시
- 사업시행·결과보고(지방문화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정산보고 (전국문화원연합회 ⇒ 문예진흥원)

○ 사업내용 (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도서지방 등 지역적으로 문화향수에 소외된 지역 주민 및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 아동,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 사업규모 : 1,572개 프로그램 시행
 - 2004년 876개, 2005년 696개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7,096백만원, 정액보조('04년-3,664백만원, '05년-3,432백만원)
 - 프로그램 당 4,000천원 ~ 20,000천원 지원
 - 지방문화원 1개원 당 1 ~ 4개 프로그램 지원
- 지원조건
 - 역사,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관광성 프로그램은 지원 배제
 -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
 - 농산어촌지역 노인대상의 문화활동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사회 참여 촉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 지역문화 및 언어교육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새터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문화적 소양교육 프로그램
- 주요 사업내용
 - 역사문화유적탐방 프로그램 : 능과 원의 비교체험, 대가야 유적탐방, 천년고도 탐방 등
 - 예술체험·참여 프로그램 : 공연, 전시 등의 관람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판소리 배워보기 등
 - 생활문화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떡만들기, 외국인머느리 김치 담그기 등
 - 전통문화프로그램 : 향교체험, 서원체험, 한국유교문화체험, 전통문화교실 등
 -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 부래미 생태마을 체험, 갯벌생태체험, 녹색곤충 생태체험 등
- 시도별 배분내역 ('04, '05년 프로그램 시행회수)

(단위 : 시행회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04년	104	17	25	32	21	39	33	107	85	42	91	41	57	99	73	10	876
'05년	76	16	16	25	24	27	15	102	76	21	73	50	57	59	54	5	696
계	180	33	41	57	45	66	48	209	161	63	164	91	114	158	127	15	1,572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09년 (총 7년)
- 재원형태 : 기금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3,432	3,432	-	-	3,432
2006	-	-	-	3,000	3,000	-	-	3,000
(증△감)	-	-	-	△ 432	△ 432	-	-	△ 432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 지역주민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화향수권 확대 제고
-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 생산적 실버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단순 체험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연중시행 가능 프로그램 개발

(사업담당자 : 지역문화과 이세훈 주무관, 연락처 : 02-3704-9553)

<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과학기술부) >

테마과학관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학관 설립 등을 국가가 적극 보조하여 줌으로써 지방의 과학기술문화확산의 계기를 제공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인 과학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인근의 관광지, 휴양지 등과 연계가 용이한 곳을 선정

○ 사업추진근거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2(과학관육성기본계획 수립)
 - “과학관육성 기본계획(‘03.12)”에 의거 2012년까지 과학관 100개 육성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 장비의 확보를 위한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사업절차 : 사업신청(지자체) → 지원대상선정(과기부) → 기금확보(과기부) → 기금교부(과기부/과학재단) → 사업수행(지방자치단체) → 기금 지원금에 대한 정산(과기부/과학재단)

○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71,500백만원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지원조건 : 지방과학관별 10억원이내 지원하되, 건립비용과 전시시설 비용의 50%이내 지원(부지매입비 및 건립비용의 50%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주요시설 : 동식물 전시관, 영상관, 생태체험관 등
- 지원현황 : '05년까지 8개소, '06년 5개소(신규) 지원

(단위 : 개소)

구 분	'99-'01	'04	'05	'06	계
과학관수 (읍·면지역)	1	5	2	5	13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1,400	1,400	5,300	-	6,700
2006	-	-	-	3,600	3,600	11,000	-	14,600
(증△감)	-	-	-	2,200	2,200	5,700	-	7,9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자체의 사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출된 건립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인정시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사이언스 샵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과학기술을 매개로 「과학기술인-지역사회」 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 과학상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체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사업추진방향

- 지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과학상점」 설치·확대
- 중장기적으로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
- 과학상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립화 유도

○ 사업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정부는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지역 거점으로 서울 등 3개 지역에 과학문화연구센터를 운영중(서울대, 포항공대, 전북대)
- '06년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사이언스샵 추진을 위한 연구 실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이언스샵' 도입 추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6년 연구결과를 반영, '07년 사업추진방향 설정 및 추진

(사업담당자 : 과학기술문화과 박노재 사무관, 연락처 : 031-436-8614/5)

< 3-3-5-7.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으로 제고
- 점차 훼손·멸실되어 가는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체계적인 보존으로 산림자원의 학술연구 기반 조성에 기여
- 산림문화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수요 충족

○ 사업추진방향

- 국립수목원의 부속시설로 건립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학술연구와 산림문화 공간으로 조성

○ 사업추진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시행령 제3조>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조성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산림청 → 시·도) → 사업시행(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국립수목원내 산림박물관
- 사업 규모 : 6개(조성·보완) 산림박물관('05년까지 9개 완료·조성 중)건립
- 지원금액 및 형태 : 31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국립수목원내 부속시설로 건립

- 사업 주요내용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	1	1	1	1	1	1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4,000	-	-	4,000	4,000	-	8,000
2006	-	3,050	-	-	3,050	3,050	-	6,100
(증△감)	-	△950	-	-	△950	△950	-	△1,9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림박물관 조성 추진
- 지역산림사료 및 표본의 수집·전시 등 향토 산림사료를 전시함으로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사업담당자 : 산림환경보호과 임하수 사무관, 연락처 : 042-481-4246)

< 3-3-6-1. 정보화마을 조성(행정자치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생활화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정보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 말레이시아, 핀란드, OECD 세계 여러국가와 인텔, HP 등 외국IT업체에서 정보격차 해소 성공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됨
- 현재 150개 마을과 307개의 기업, 단체, 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보화마을의 소득증대 등 도·농 교류를 통한 지속적 지원 기반 확립

○ 사업추진방향

- 정보화마을을 지역정보화 거점 및 미래 농어촌 개발 모델로 육성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읍면(1,420개)에 1개 이상의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
-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마을의 여건 및 환경을 활용한 수익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정보화마을을 마을 발전 및 소득증가와 연계되도록 사업추진
- 마을별 특성에 따라 마을정보센터 구축 등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추진
-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와 자립운동을 위한 민박, 농촌체험 등 수익모델 개발 등 중앙의 운영 지원 역할 강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마을,시군구) → 사업신청(시군구) → 대상 마을 1차 평가(시도) → 대상마을 최종확정(행자부) → 예산 지원 → 사업시행 및 정보화마을 운영(행자부, 시도·시군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97억/24개 마을(국비 조성 11, 지방자치단체 조성 13)
- 사업 규모 : 24개 정보화마을 조성 (※'05년까지 280개 조성)
- 지원 조건 : 3억 (국고 : 50%, 지방비 : 50%)

○ 예산

- 사업기간 : '01년 ~ '14년(총 1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3,539	14,000	17,539	17,150	-	34,689
2006	-	-	6,227	-	6,227	3,510	-	9,737
(증△감)	-	-	△2,688	△14,000	△11,312	△13,640	-	△24,952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마을 선정·조성·운영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지원과 병행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도록 추진 유도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www.invil.org)를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어촌 관광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로 발전
-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잘 살아 보자”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 마을의 여건과 환경을 활용한 소득증대 모델이 되도록 지원
- 범 정부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중앙차원에서 향후 10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하되, 학교·사회단체와도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추진
 - 각 부처 농어촌 마을 대상 지원사업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래 농어촌 개발 모델로 설정하여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서비스정보화팀 이대영 전산사무관, 연락처 : 02-2100-3580)

<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정보통신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
- ※ '05년까지 전체 농어촌 지역(377만 가구)의 95%인 358만 가구에 초고속망 구축

○ 사업추진방향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07년까지 50가구 미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11만 가구)에 대한 망 구축 추진
- 재원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분담(25%:25%:50%)하고, 마을 규모, 이용 희망 가구 수, 시설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축 추진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 체신청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 협의회'를 통해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 및 효율적 사업추진

○ 사업추진근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부
- 사업추진절차 : 사업협약체결(정통부↔전산원) →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 협약체결(전산원↔지자체↔통신사업자) → 예산지원(전산원·지자체→통신사업자) → 사업시행(통신사업자)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 지역
- 사업규모 : 50가구 미만 초고속망 미구축 마을 1,612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354억원(국고 25%, 지방비 25%, 민간 50%)
 - ※ 지자체별 미구축 마을수에 따라 국고 지원
- 지원조건
 - 50가구 미만 초고속망 미구축 지역 중 초고속인터넷 이용 희망가구가 있는 지역
- 사업 주요내용
 - 광케이블, 옥외 합체, xDSL 장비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구축비용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마을 수)

계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612	2	3	53	227	152	382	280	79	232	199	3

○ 예산

- 사업기간 : '06~'07년(총 2년)
- 재원형태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	-	9,000	-	9,000	8,800	17,600	35,400
(증△감)	-	-	순증	-	9,000	8,800	17,600	35,400

※ 일반회계 사업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6년 4/4 분기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실태를 파악하여 '07년 사업계획에 반영
- 유선방식으로 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 독립가구에는 위성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담당자 : 정보보호산업과 신상열 사무관, 연락처 : 02-750-1271)

< 3-3-6-3. 정보화 인프라 구축(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경영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농업인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 기반 조성 및 소비자 구매편의성 제고
-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개발 및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소득증대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사업추진방향

- 정보시스템 성공사례 홍보,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교육 실시,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보화 전환 유도
-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참여 확대, 경영체 자부담 실시, 시스템 모듈화 등 적극 모색
- 농업인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를 활성화하여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확대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도, 시·군), 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농업경영체)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도, 시군) → 개발업체 선정(정보센터) → 계약(사업대상자, 개발업체, 지자체) →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수립(개발업체, 사업대상자)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업체) → 사업결과보고(도, 시군) → 사업평가 및 정산(농림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업법인 및 농업인
- 사업규모 : 14개~18개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지원금액 및 형태 : 480백만원, 국고 100%

(단, 개발비는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원조건 : 자부담이 가능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인 농업경영체

*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 ① SW 활용, Excel 이용 등으로 자체 DB관리 중인 경영체
- ② 지도계통 또는 전액 자부담으로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영체
- ③ 농업경영관련 정보화교육을 1회 이상 받은 경영체
- ④ 컨설팅 사후관리 및 평가결과 개선효과가 큰 우수 경영체
- ⑤ 후계농업인,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등 전문 경영체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계획서 컨설팅 후,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산·거래처·회계관리 및 경영분석 등 개별적 자원에 대한 통합관리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정보시스템 구축대상 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	-	-	-	3	1	2	1	1

※ 상기내역은 2월까지 선정된 결과임(사업대상자 추가선정 : 3월)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단, 개발비는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459	-	-	-	459	-	-	459
2006	480	-	-	-	480	8	20	508
(증△감)	21	-	-	-	21	8	20	49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등을 통해 관리능력 제고
- 농업법인 및 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확대실시

- ('05년) 4개 시범사업 → ('06년) 14~18개 → ('07년) 23~27개

(사업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이대영 전산사무관, 연락처 : 02-500-1631)

<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해양수산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어촌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기대효과
 - 디지털어촌 구축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열린교육 가능
 - 수산 신기술의 신속한 전파로 생산력 증대

○ 사업추진방향

- 어촌정보화사업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강화
- 어촌정보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확대
 - 원격영상시스템 유지보수 및 S/W 개발보급
- 수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바다로21 홈페이지 개설)
- 어촌정보사랑방지원 및 유지보수
 - PC 및 프린터 등 보급 및 유지관리비 지원

○ 사업추진근거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의무 명시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절차 : 본부 총괄사업 계획수립 추진, 지방청 및 과학원 사업수행 보고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어업인
- 사업 규모 : 31개 원격영상시스템 관리운영('07년부터 33개소)
어업인 정보화교육(2010년까지 100천명)
어촌정보사랑방 설치·운영(2010년까지 660개소 / 850대)
- 사업 주요내용
 - 원격영상교육시스템(31개소) 유지보수비 : 290백만원
 - 어업인정보화교육 : 260백만원
 - 어촌정보화사랑방 50개소 개설 : 95백만원
 - 바다로21개선(S/W등 기능보강) : 31백만원
 - 어업인단문자서비스(SMS) : 20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689	-	-	-	689	-	-	689
2006	696	-	-	-	696	-	-	696
(증△감)	7	-	-	-	7	-	-	7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원격영상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지속추진 : 33개소
(강진·태안사무소 추가)
- 어업인 정보화교육 : 7,000명
- 어촌정보사랑방 PC지원 : 70개소
- S/W 개선 및 SMS(문자서비스)추진

(사업담당자 : 수산경영과 김금조 지도관 , 연락처 : 02) 3674-6864)

<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영농과 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추진방향

- 컴퓨터활용 및 농업정보활용 교육은 시행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 워크샵, 토론회 등이 포함된 중기과정 및 전문교육 공모과정을 확대 실시
- 초고속망 확대에 따라 인터넷 활용가능 지역이 늘어나므로 이동버스교육은 줄여서 운영하고 원격지원교육 강화 및 반복 재택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운영
 - 원클릭으로 원격상담, 원격제어, 원격안내, 기초교육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대학 및 농업연수원 등 교육전문기관
- 사업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농림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보조사업자) → 세부사업계획 조정 및 승인(농림부)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결과보고(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및 정산(농림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 : 농업인 55천명 정보화교육 실시('06년)
- 지원금액 및 형태 : 2,501백만원, 국고 100%(단, 농협은 50%)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활용 및 농업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및 공모과정과 중기과정의 실시로 정보화능력 심화
 - 이동버스 교육,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등 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방문교육 사후 원격지원 서비스 등 온라인 교육 활성화

○ 예산

- 사업기간 : '98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단, 농협은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2,553	-	-	-	2,553	-	261(농협)	2,814
2006	2,501	-	-	-	2,501	-	222(농협)	2,723
(증△감)	△52	-	-	-	△52	-	△39(농협)	△91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교육단계별 중기과정 및 전문교육 공모과정 확대실시를 통해 심화단계 정보화 교육의 수요 충족으로 정보 활용능력 향상
- 온·오프라인 통합교육(Blended Learning)을 활성화하여, 집합교육 후의 재택·반복 교육으로 학습효과 제고

(사업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이대영 전산사무관, 연락처 : 02-500-1631)

< 3-3-7-2.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정보화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확산 촉진
- 농업·농촌 정보화촉진을 위해 인근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핵심인력 육성

○ 사업추진방향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정보119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농가방문 맞춤형교육
- 1,400여개 읍면지역에 최소 1명씩 정보화선도자 지속 발굴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각 도 및 시·군
- 사업추진절차
 - 농림부(사업총괄)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성과측정, 정보화선도자 활용 발전방안 모색
 - 지자체(사업시행) : 정보화선도자 선정·관리·교육·홍보 등 총괄, 사업추진관리, 활동비 집행, 정산보고
 - 정보화선도자(사업수행) : 해당지역 농가방문 맞춤형교육 실시, 마을단위 정보화시설 운영담당 및 정보화리더 활동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 : 방문교육 30,400회('06년)
- 지원금액 및 형태 : 800백만원(방문교육 1회당 2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 주요내용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게 방문교육 실시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명, 회)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도자	261	16	40	22	26	31	50	28	40	8
교육횟수	30,400	1,500	5,200	3,000	3,000	3,200	6,000	3,500	4,000	1,000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300	-	-	-	300	300	-	600
2006	400	-	-	-	400	400	-	800
(증△감)	100	-	-	-	100	100	-	2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정보화선도자가 농업인 교육활동 시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보화인력 발굴·육성
- 정보화선도자 활동 인원 및 농가 방문교육 확대 실시

(사업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이대영 전산사무관, 연락처 : 02-500-1631)

< 3-3-7-3.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정보서비스(www.affis.net)를 통해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농업·농촌정보화를 촉진
 - 농업인의 농산물 출하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유통효율화 지원

○ 사업추진방향

- 농업정책, 생산·기술·농업관련 동향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 농업유관기관이 보유한 농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 구축지원
- 품목별 동호회 집중 육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사업정산(농림부) → 사업수행 및 운영(보조사업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보조사업자(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다음커뮤니케이션)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농업농촌 콘텐츠 제공,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정보 수집제공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2,946백만원(국고 100%)

- 사업주요내용 :

- 농업정보서비스 등 보조사업(신선물, 농업인정보화교육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통신망 관리
-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농촌 콘텐츠 확충
- 아피스와 출하지원시스템 콘텐츠 통합 및 정보자원 최적화
- 농림부를 비롯한 30개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137개)의 농림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제공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3,935	-	-	-	3,935	-	-	3,935
2006	2,946	-	-	-	2,946	-	-	2,946
(증△감)	△989	-	-	-	△989	-	-	△989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업·농촌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 제공 및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 및 가격정보 확충
 - 연중 정보제공자에 대한 관리강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 정보센터 정보자원의 노후화에 따라 '07년말 아웃소싱 추진
- 시·도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농림정보를 수집·확충
- 농업인 정보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정보 만족도 제고

(사업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이대영 전산사무관, 연락처 : 02-500-1631)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가. 향토산업의 진흥

(1) 개 관

□ '06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역적 여건에 정통한 향토학자, 대학교수, 산업 및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전통자원의 발굴과 DB를 구축하여 향토산업 아이템을 제공하고 산업화 모델 개발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지역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추진
 - 기본계획이 수립된 19개 향토자원에 대하여 개발 로드맵 수립
-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인력과 도시민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28개소의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추진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이농예상 농어업인의 전업 및 취업 지원

□ 예산 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	-	300	-	300	-	-	30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25,995	-	-	25,995	29,813	-	55,808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1,344	-	-	-	1,344	-	-	1,344
합 계	1,344	25,995	300	-	27,639	29,813	-	57,452

□ '07년도 추진 방향

- 전국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하여 향토자원의 발굴과 DB를 구축하여 향토 산업 아이템 제공
 - 구축된 DB 아이템을 이용하여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원체계를 구축
 - 해당 아이템의 지속적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 관리를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속적인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향토자원 추가 발굴 및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
 - 기본계획수립 : ('06) 19개자원 → ('07) 30 → ('08) 45 → ('09) 50
 - 향토산업육성 로드맵 수립(보완) 및 향토제품 DB 구축 등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 '06년도에 발굴된 향토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련산업 육성으로 농가경제 활성화 도모
- 낙후지역(산업집적도가 낮은)의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낙후지역 지원조건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낙후지역의 경우 향토자원을 이용한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생산과 관광, 체험이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의식 고취로 이농예상 농어민의 전업 및 취업 적극지원

(2) 세부과제

<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전통자원의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향토산업 활성화 위한 기반조성,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해소

○ 사업추진방향

- 지역적 여건에 정통한 향토학자, 대학교수, 산업 및 마케팅 전문가 등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전통자원의 발굴과 DB를 구축하여 향토산업 아이템 제공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 (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 연구부서
- 사업규모 : 5개 시군지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3억,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향토자원 발굴·DB 개발 및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사업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	-	300	-	300	-	-	300
(증△감)	-	-	순증	-	300	-	-	3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전국에서 매년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역적 여건에 정통한 향토학자, 대학 교수, 산업 및 마케팅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자원의 발굴과 DB를 구축하여 향토산업 아이টে을 제공
- 구축된 DB 아이টে을 이용하여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 해당 아이টে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 관리를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안옥선 연구관, 연락처 : 031-299-0521)

< 4-1-1-2. 향토산업 육성(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추진

○ 사업추진방향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적극 발굴
-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방지 및 차별성 유지 :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계획수립과정의 컨설팅, 마케팅, 예산지원 등 측면지원에 역점
- '07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8년부터 본격 추진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된 세부단위사업을 포괄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06년도 추진계획

○ '07년도 시범사업 준비

- 향토자원 조사('05.10월) 및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19개 향토자원 선정('05.12월)
- 지자체 공무원대상 사업설명회 개최('06.1월) : 40명
-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보완('06.1월~5월) : 19개자원

○ '08년도 사업 준비

- 향토자원 추가조사 및 사업성 평가('06.6월~11월)
-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보완('06.12 ~'07.5월)

○ 기본계획이 수립된 19개 향토자원에 대하여 로드맵 수립('06.7월)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속적인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향토자원 추가 발굴 및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 추진
 - 기본계획수립 : ('06) 19개자원 → ('07) 30 → ('08) 45 → ('09) 50
- 향토산업육성 로드맵 수립(보완) 및 향토제품 DB 구축 등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 '06년도에 발굴된 향토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김중현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4)

<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에 공단을 조성하여 공장유치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지역 취업기회 확대, 수도권 등 대도시소재 공장의 이전촉진, 도시 교통난, 주택난, 공장입지난 완화

○ 사업추진방향

- 2014까지 총 400개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인력과 도시민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 매년 10개소 수준 준공추진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도개선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91부터 농림부등 4개부처 소관사항별로 지원
 - 농 림 부 : 농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
 - 산업자원부 : 농공단지시책 총괄,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농공단지 관리
 - 건설교통부 : 농공단지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 농공단지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7개도 25개시·군 28개단지(준공8, 계속13, 신규7)
- 사업 규모 : 단지당 30천㎡이상 330천㎡이하
- 사업 주요내용
 - 총사업비 : 55,414백만원(국비 25,995, 지방비29,813)
 - 사업규모 : 2,122천평(28개단지)
 - 지원형태 : 국비보조, 국비융자
 - 지원조건 : 평당정액지원(3~10만원/평)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시장·군수) → 지정·승인(시·도지사)
→ 지정 및 고시(시장·군수) → 공사, 준공(시장·군수)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도별	2006예산			
	사업량	사업비		
		계	균특보조	농특용자
계	28	25,995	25,995	-
강원	4	7,067	7,067	-
충북	2	3,563	3,563	-
충남	8	4,674	4,674	-
전북	4	5,631	5,631	-
전남	2	3,063	3,063	-
경북	1	104	104	-
경남	7	1,893	1,893	-

○ 예산

- 사업기간 : '84년 ~ '14년(총 31년)
- 재원형태 : 균특(보조), 농특(용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42,046	-	5,180	47,226	8,188	-	55,414
2006	-	25,995	-	-	25,995	29,813	-	55,808
(증△감)	-	△16,051	-	△5,180	△21,231	21,625	-	39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5년부터 농특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추진됨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제도개선 추진
- 낙후지역(산업집적도가 낮은)의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확대 등 제도개선
- 낙후지역의 경우 향토자원을 이용한 지역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 강화
 - 생산과 관광, 체험이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김중현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4)

<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노동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UR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예상 농어민에 대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전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농어민의 소득향상 등 가계안정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이농예상 농어업인의 전업 및 취업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절 차	주요 내용	일정
① 시·도별 계획 수립	○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율 등 훈련 성과를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05. 10월
② 훈련 실시 기관 지정	○ 시·군·구청장은 훈련기관을 시·도지사에 추천 ○ 시·도지사는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 훈련기관 지정	'05. 12월
③ 훈련과정 승인	○ 시·군·구청장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 승인 요청 ○ 지방노동관서장은 교과내용, 시설·장비 등을 검토한 후 훈련과정 승인 결정 및 통보	'06. 1 ~ 10월
④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 시·군·구청장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 훈련생에 대하여 월별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06. 1 ~ 12월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및 규모 : 농어업인 864명
- 사업기간 : 2006.1.1 ~ 12.31
- 총사업비 : 13억원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훈련실시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훈련 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는 훈련수당 지원
- 시·도별 훈련인원 및 예산 등 배분 내역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목표인원	예산액	비고
계	864	1,344,000	
경 기	131	203,777	
강 원	22	34,225	
충 북	24	37,336	
충 남	252	391,994	
전 북	65	101,112	
전 남	80	124,445	
경 북	112	174,221	
경 남	119	185,111	
제 주	59	91,779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2005	1,344	-	-	-	1,344	-	-	1,344
2006	1,344	-	-	-	1,344	-	-	1,344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확대
- 훈련 내실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의식 고취로 이농예상 농어민의 전업 및 취업 적극지원

(사업담당자 : 능력개발지원팀 조영희 사무관, 연락처 : 02-507-7238)

나.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활성화

(1) 개 관

□ '06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농산어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역사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67개 녹색농촌체험마을, 31개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 문화역사마을, 17개의 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육성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20개소) 조성 등으로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 공간 제공
- 어촌관광 기반시설 조성, 어가소득원 개발 등을 위해 어항시설과 연계시킨 어촌·어항 복합공간, 다기능어항, 어촌관광단지 등 24개소 추진
-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역사, 레포츠, 생태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사업 157개소 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경제효과 유발 도모
-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추진
- 여름휴가 캠페인, 그린맵 제작·배포,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등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지속적인 확대 유도
-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간 실무협의회 운영,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확대 등 협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 관광상품성이 있는 지역별 대표축제 및 유망축제 52개 발굴·육성 및 문화관광축제의 생산성과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예산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	6,750	-	-	6,750	6,650	-	13,400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	2,520	-	-	2,520	2,480	-	5,000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	-	-	3,500	3,500	1,750	-	5,250
어촌체험마을조성	-	6,900	-	-	6,900	6,210	690	13,800
어촌관광활성화	760	3,500	20,190	-	24,450	3,500	-	27,950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수목원 조성	-	30,022	21,391	-	51,413	25,194	-	76,607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	116,191	-	-	116,191	116,191	-	232,382
농산어촌체험박람회개최	130	-	-	-	130	-	-	130
농산어촌체험관광홍보	800	-	-	-	800	-	-	800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180	-	-	-	180	-	-	180
향토문화관광축제육성	-	-	-	3,500	3,500	3,500	-	7,000

□ '07년도 추진 방향

-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지속적 확충 및 마을리더, 참여주민의 역량 강화 도모
-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요건 완화 추진
 - 국가 및 지자체 50ha→30ha, 사유휴양림 30ha →20ha
- 어촌·어항복합공간 4개소, 다기능어항 3개소 등 공사 본격 추진
- 지역문화의 복원·선양, 생태자원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화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농산어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례, 전원생활정보 등을 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전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창출을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속 추진
-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민간의 네트워킹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역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축제를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

(2) 세부과제

<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맞는 휴양·체험 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거점으로 활용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충청북도 단양군 한드미마을의 경우, '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이후 '03년 대비 '05년에 방문객은 6.5배, 농촌관광소득은 5.3배 증가

○ 사업추진방향

-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사업을 추진
 -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자연·문화자산, 농업 및 농촌체험활동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의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 계획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관매 등 마을여건에 맞게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군, 시·도)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 사업규모 : 67개 녹색농촌체험마을('05년까지 123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2억원, 국고 50%·지방비 50%
 -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60, 지방비 40%
 -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농촌관광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 * 마을협정 체결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능력이 구축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7	7	7	4	15	9	6	9	8	2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13년(총12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4,700	-	-	4,700	4,700	-	9,400
2006	-	6,750	-	-	6,750	6,650	-	13,400
(증△감)	-	2,050	-	-	2,050	1,950	-	4,000

* 균특회계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리더, 참여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견학 등 실시
-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적용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전영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7)

<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마을 고유의 농업·농촌자원을 포함한 전통문화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과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농촌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및 공동체 유지 보전, 화합·협동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고유의 전통문화자원과 테마가 있는 마을에 대해 자원을 활용할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학습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확대
- 마을의 자연경관과 농업, 문화, 생활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보전
- 주민합의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과 마을별 내외부 지원 시스템 구축
 -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위촉, 전문가 자문 등
- 사업단계별 연차적 지원과 연계사업의 유치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군, 시·도)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농진청→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농촌전통 테마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 고유의 특성화된 자원 또는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
- 사업규모 : 31개 농촌전통테마마을('05년까지 66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2억원, 국고 50% · 지방비 50%
 -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60, 지방비 40%
 - * 1차년도 1억, 2차년도 1억을 연차별로 지원
- 지원조건
 - 농촌다운 마을경관과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마을운영에 참여할 인적자원이 있으며 마을 내의 조직 활동이 활발한 마을
 - 농촌지도기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투입되어 성과를 도출했던 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의 합의가 된 마을로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경관 조성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 마을주민 교육 : 마을 경영 및 운영, 프로그램 실행방법, 시설물 관리, 농촌관광 마인드 및 서비스, 민박 운영, 마케팅 등
 - .. 소득자원 개발 : 친환경 농특산물, 농산물 가공, 테마상품, 캐릭터 등
 - .. 홍보·마케팅 :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동 지원, 이벤트 개최, 홍보물 발간 등
 - .. 추진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빈집활용 지원, 가정원에 생활화 등 관련 시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농촌전통테마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전	인천
31	2	3	2	8	8	2	1	2	1	1	1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09년(총8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2,000	-	-	-	2,000	2,000	-	4,000
2006	2,520	-	-	-	2,520	2,480	-	5,000
(증△감)	520	-	-	-	520	480	-	1,000

* 균특회계(농특세전입금)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마을 대표자의 전문 운영자 육성과정 이수, 참여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교육 및 견학 실시 등
- 지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후 확산)
- 농촌진흥청과 지방 지도기관은 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자원과 조은희 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6)

< 4-2-1-3.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문화관광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 사업추진방향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사업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정부 문화비전(창의한국) :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 문화관광부 업무보고('05.4)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지역추진위원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도→연합회) → 대상 마을 선정(연합회)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문화원) → 예산지원(문화부→연합회→지방문화원/시·군→연합회) → 사업시행 및 문화역사마을 운영(문화원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문화역사적 소재를 보유하고,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농어촌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2개 문화역사마을 조성 추진
 - '04~'06년 안동/ '05~'07년 영광, 서귀포, 원주, 강릉, 서천, 통영/ '06~'08년 고창, 의령, 정읍(경기·충북지역 신규마을 공모·선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 255억원(관광기금 170억원/지방비 85억원)
 - 각 도별 30억원(기금 20억원·지방비 10억원) 지원
 - 기금 보조금(20억원)에 대한 지방비 50%(10억원) 분담 조건
- 지원조건
 - 마을의 문화역사적 자원이 보존·전승의 가치가 있는 마을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능력이 구축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 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시도별 배분내역

- 9개 도를 대상으로 각 도에 1개 마을 조성 원칙, 지자체 희망시 도 단위 사업비(30억원 : 기금 20억, 지방비 10억)내에서 2개 마을 조성 허용
- 2개 마을 조성시 마을별 지원규모는 해당 마을의 기반시설 현황에 따라 차등 교부 가능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06 재공모	2	'06 재공모	1	2	1	1	2	1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08년(총 5년/1개 마을당 사업기간 : 2년)
- 재원형태 : 국비 67%, 지방비 33%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3,000	3,000	1,500	-	4,500
2006	-	-	-	3,500	3,500	1,750	-	5,250
(증△감)	-	-	-	500	500	250	-	75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교육 및 홍보의 장 확대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마을 대표자와 심의·전문위원 워크숍 정례화, 참여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교육 및 견학 등 실시
- 동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확산 및 전 국민의 (농어민 포함)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도록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사업완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 언론 등과 연계한 사업 홍보와 공개적인 평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서출판과 영상기록화 추진

(사업담당자 : 공간문화과 배양희 사무관, 연락처 : 02-3704-9452)

<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해양수산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
-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

○ 사업추진방향

- 도시인들의 창조적인 여가활동,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체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촌관광 모델개발」
-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 방문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 조성

○ 사업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절차 : 마을선정 → 사업계획수립(시장·군수) → 예산지원(해수부 → 시·도 → 시·군) → 사업시행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682억원
- 사업 시행대상 : 어촌계 단위 마을
- 사업 규모 : 112개 어촌체험마을('05년까지 58개)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5억원, 국고50%, 지방비45%, 자담5%
- * 지자체에서 투자소요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증·감 요구가능

- 지원조건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신규사업예정 어촌계의 계장, 마을 이장등과 시·도(시·군) 관계공무원은 어촌관광리더·가이드교육과정(국립수산물학원 교육지원팀)의 교육을 사업전에 이수하여야 함
- 체험어장조성, 체험장비 준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등은 시·군·구, 어촌계가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고,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마을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반영시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기초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교육 훈련, 팸플렛 제작 등)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어촌체험마을 개소수)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1	1	1	1	-	7	1	4	1

○ 예산

- 사업기간 : '01년 - '13년(총 13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5,500	-	-	5,500	4,950	550	11,000
2006	-	6,900	-	-	6,900	6,210	690	13,800
(증△감)	-	1,400	-	-	1,400	1,260	140	2,800

※ 균특회계(농특세전입금)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축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 관광수요를 어촌마을로 유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마을 활력증진 도모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개선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사업담당자 : 어촌어항과 전성래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56)

<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해양수산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어촌관광 수요 창출
-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각종 교통망 확충 등 점증하고 있는 관광 수요를 특화된 어촌관광으로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어가소득원 개발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가족단위로 어촌과 바다를 즐기며 휴양할 수 있도록, 명실 상부한 관광어촌으로 변모

○ 사업형태별 추진방향

구 분	I 모델(복합공간)	II 모델(다기능어항)	III 모델(어촌관광단지)
개 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항 + 관광기능 ⇒ 다기능어항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대상지	◦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6개소('04.10.25선정) 대변항(부산시 기장군) 대포항(강원도 속초시) 홍원항(충남 서천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격포항(전북 부안군)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재 원	◦ 기존 어항개발비, 어촌종합 개발비, 어촌관광사업비를 통합 활용	◦ 기존 국가어항개발비 활용 - 필요시 민자유치	◦ 신규 확보(균특)
사업기간	◦ 6개년('04~'09)	◦ 6개년('04~'09)	◦ 6개년('04~'09)
사업규모	◦ 총 1,079억원 - 개소당 150억원 - 기본·실시설계비 29억원	◦ 총 2,957억원 - 개소당 500억원 ※ 대포항 372억원 - 기본·실시설계비 85억원	◦ 총 696억원 - 개소당 60억원 - 기본·실시·홍보등 36억원

○ 사업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23조 및 제49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지 선정(24개소)→기본설계(해양수산부)→실시설계(어항
부문:국가, 어촌부문:지자체)→사업계획 확정→예산지원→사업시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국가어항, 지방어항(소규모 항포구 포함)
- 사업 규모 : 24개소 27,950백만원
 - 기본설계 : 8개소 1,600백만원 (Ⅰ모델 4개소, Ⅲ모델 4개소)
 - 실시설계 : 9개소 5,350백만원(Ⅰ모델 4개소, Ⅱ모델 5개소)
 - 공사추진 : 7개소 21,000백만원(Ⅰ모델 3개소, Ⅱ모델 1개소, Ⅲ모델 3개소)
 - ※ 전남 마량항(Ⅰ모델) 시범사업 준공(어항부문)
- 지원금액 및 형태 : 4,732억원(국고 4,227억원, 지방비 505억원)
 - 어항부문 : 국고 100%, 어촌부문(Matching fund)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관광활성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기본설계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 사업대상 선정시 사업집행주체가
지자체인 경우는 제외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당해연도 지원대상 사업의 투자규모를 감안,
세부사업시행계획(실시설계)을 확정 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국가어항부문에 대한 사업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하고, 그 외의 어촌 어항부문에 대한 사업은 시·도지사(시·군·구)가 시행
-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대상사업중 어업인 소득기반사업은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시 관광전문가를 포함하여 어촌관광활성화가 가능한 사업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별 배분내역('04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24개소	2	2	2	1	3	2	2	3	2	3	2
I 모델	7개소	-	1	1	-	1	-	-	1	1	1	1
II 모델	6개소	1	-	-	-	(1)	1	1	1	-	1	-
III 모델	11개소	1	1	1	1	1	1	1	1	1	1	1

※ ()내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반영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09년(총 6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380	120	13,916	-	14,416	120	-	14,536
2006	760	3,500	20,190	-	24,450	3,500	-	27,950
(증△감)	380	3,380	6,274	-	10,034	3,380	-	13,41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09까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5개소
- 어촌어항복합공간 4개소, 다기능어항 3개소 등 공사 본격 추진

(사업담당자 : 어촌어항과 전성래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56)

<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산림청) >

산림휴양공간 조성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산림여가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산림휴양시설 확충
- 건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 공간 제공

○ 사업추진방향

-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민의 여가패턴 및 휴양수요를 고려한 산림휴양시설 개발·조성
- 권역별 휴양수요를 고려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양시설을 전국적으로 균형적 배치
- 가족단위 휴양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체험형, 문화형 휴양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 근거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2
- 산림기본법 제4조 및 제20조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
- 사업추진절차 : 실태조사 후 대상지 지정 신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
→ 적지평가 및 환경부 협의(산림청) → 대상지 지정(산림청)
→ 예산지원(산림청 → 해당기관) → 사업시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국가 및 지자체
- 사업규모
 - 신규설계 : 6개소(국가 2, 지자체 4)
 - 조성 1년 : 6개소(국가1, 지자체 5)
 - 조성 2년 : 6개소(국가2, 지자체4)
 - 보완사업 : 38개소(국가 18, 지자체 20)
 - 산림욕장 : 8개소(지자체 8)
- 지원조건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100%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70%, 지자체 30%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사업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 시도별 배분내역(균특사업)

(단위 : 개소)

구분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계					1		1		1				1
조성		1			1	3	2				2		1
보완		1	1			1	1	7	2	1	2	3	1
산림욕장	1			1			1		1	2	2		

○ 예산

- 사업기간 : 1988~2010
- 재원형태 :
 - 국유산림휴양시설(국비 100%)
 - 지자체산림휴양시설(국비50~70%, 지방비 30~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국유자연휴양림 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20,895	-	20,895	-	-	20,895
2006	-	-	21,391	-	21,391	-	-	21,391
(증△감)	-	-	496	-	496	-	-	496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은 일반회계 사업임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10,273	-	-	10,273	9,411	-	19,684
2006	-	17,555	-	-	17,555	12,727	-	30,282
(증△감)	-	7,282	-	-	7,282	3,316	-	10,598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은 균특회계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권역별 휴양수요를 고려하여 균형적인 안배가 되도록 대상지 지정에서부터 고려
- 산림휴양시설 확대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요건을 완화
 - 국가 및 지자체 50ha→30ha, 사유휴양림 30ha →20ha
- 산림휴양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원 창출과 관광 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관광자원 연계강화

(사업담당자 : 산림휴양정책과 최영태 사무관, 연락처 : 042-481-4211)

수목원 조성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그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식물자원의 수집·보전으로 생물다양성보전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생물유전자원확보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산림문화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수요 충족

○ 사업추진방향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수목원 조성 추진

○ 사업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시행령 제3조>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조성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산림청 → 시·도) → 사업시행(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10ha 이상의 공립수목원
- 사업 규모 : 20개(조성·보완·확대) 공립수목원('05년까지 22개 완료·조성·보완·확대 중)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125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해결된 개소
- 사업 주요내용
 - 전시시설, 증식 및 재배시설 등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계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1	1	1	1	2	1	1	3	1	1	4	2	1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8,555	-	-	8,555	8,555	-	17,110
2006	-	12,467	-	-	12,467	12,467	-	24,934
(증△감)	-	3,912	-	-	3,912	3,912	-	7,82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립수목원 조성 추진

(사업담당자 : 산림환경보호과 임하수 사무관, 연락처 : 042-481-4246)

<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문화관광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각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레포츠 자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른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 2002년 UN이 『생태관광의 해』로 정하고, 생태·녹색관광이 새로운 형태의 관광 유형으로 대두됨에 따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도모

○ 사업추진방향

-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역사, 레포츠, 생태 자원을 발굴, 관광자원화
- 대규모 자원개발 추진을 자제하고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자원개발 유도
-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 개발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 사업추진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6조, 제71조
- 관광진흥 5개년계획('99. 1)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 발굴
- 관광진흥 5개년계획('04. 3) : 지역밀착형 특화관광 개발 및 지역간 연계 개발 추진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과제('03.12) : 다양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보조금예산 통지 → 보조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지침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교부의뢰 →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 보조금 정산·금액확정 및 통보 → 집행잔액 반납조치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예산확정된 각 지자체 단위사업
- 사업규모 : 157개사업 116,191백만원 지원
 - 문화관광자원 : '06년 131개사업 102,967백만원 지원
 - 생태녹색개발 : '06년 26개사업 13,224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50%매칭 정률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한 사업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
- 사업 주요내용
 - 진입로, 주차장, 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사업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7	1	2	1	3	1	3	3	14	13	14	16	42	11	18	14

○ 예산

- 사업기간
 - 문화관광자원개발 : '99~계속
 - 생태녹색관광개발 : '03~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73,616	-	-	73,616	73,616	-	147,232
2006	-	116,191	-	-	116,191	116,191	-	232,382
(증△감)	-	42,575	-	-	42,575	42,575	-	85,150

* 균특회계(농특세전입금) 사업임.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지역문화의 복원·선양 및 생태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화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자율과 책임하에 자립형 관광개발 추진

(사업담당자 : 관광자원과 정기원 사무관, 연락처 : 02-3704-9742)

< 4-2-2-1.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체험박람회'를 통해 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인 붐 조성 및 농촌주민의 소득창출 기회로 활용
- 농산어촌 체험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농촌으로 유도하여 도농교류 확대에 기여
- 농촌지역의 체험프로그램, 친환경농산물, 특산품 등을 홍보하여 수익으로 연계시켜 지역의 활성화 계기 마련

○ 사업추진방향

- 박람회를 통해 농촌 체험관광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투자 등 종합적인 정보를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 박람회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박람회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등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등)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등 → 농림부) → 사업비검정(농림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격년 개최('07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회당 10억 수준)
- 사업 주요내용
 - 제2회 농산어촌체험박람회 기본계획수립
 - 박람회 개최 준비와 관련 시도, 농산어촌체험마을 관계기관과 추진사항 협의
 - 박람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박람회 참가마을 및 업체 모집 홍보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13년(총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575	575	-	120	695
2006	130	-	-	-	130	-	-	130
(증△감)	130	-	-	△575	△445	-	△120	△565

* 박람회 개최는 '07년 예정, '06년에는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 순감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례, 전원생활정보 등을 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전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체험 박람회 개최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전영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7)

<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의 사회적 붐 조성 및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사업추진방향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등→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등)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등 → 농림부) → 사업비검정(농림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100%(정액보조)
- 사업 주요내용
 - 도시민의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전개
 - 농산어촌 체험수요 창출을 위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및 그린맵 제작·배포 등

- 방문객이 안심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보험가입지원 및 대국민 홍보
-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통해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산어촌 체험·휴양 안내 정보 제공
-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우수모델을 창출·홍보
- 제5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마을을 선발하여 홍보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13년(총12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780	-	-	-	780	-	-	780
2006	800	-	-	-	800	-	-	800
(증△감)	20	-	-	-	20	-	-	2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창출을 위해 각종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전영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7)

< 4-2-3-0.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협조체계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운영
-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장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민의 체험·휴양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도시민의 농촌 여가수요 충족

○ 사업추진방향

-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관계부처, 지역단위, 민간단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등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등)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등 → 농림부) → 사업비검정(농림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단위 지원협조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 지원조건 : 국고100%(정액보조)

- 사업 주요내용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조체제 유지
-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필요시 수시개최, 합동 마을실태조사, 공동 개선방안 마련 등
- 지자체장 중심으로 그린포럼을 결성하여 정책제안, 공동실천방안 마련 등 공동연계 추진
- 체험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위한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확대 운영
-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평가회 실시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13년(총12년)
- 재원형태 : 국비 100%(정액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115	-	-	-	115	-	-	115
2006	180	-	-	-	180	-	-	180
(증△감)	65	-	-	-	65	-	-	65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민간의 네트워킹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전영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7)

<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관광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 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및 유망축제 발굴
- 문화관광축제 생산성 및 파급효과 극대화

○ 사업추진근거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
- '99년 관광진흥5개년계획 사업(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시장, 군수
- 사업추진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사업계획수립(축제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 → 사업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사업 규모(사업량) : 52개 문화관광축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3,5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방비 50%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52개 축제)
 - 최우수축제(5개) : 각 300백만원 지원
 - .. 보령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 우수축제(9개) : 각 150백만원 지원
 - .. 부산자갈치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함평나비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 유망축제(13개) : 각 50백만원
 - .. 대구약령시축제, 광주김치대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인제빙어축제 등
 - 예비축제(25개) : 예산지원 없이 행정 지원
 - .. 하이서울페스티벌, 강화고인돌축제, 남원춘향제, 풍기인삼축제 등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단위 : 개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2	1	2	1	1	1	1	1	3	7	5	6	4	7	5	5	2

○ 예산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재원형태 : 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2,528	2,528	2,528	-	5,056
2006	-	-	-	3,500	3,500	3,500	-	7,000
(증△감)	-	-	-	972	972	972	-	1,94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역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한 축제를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의 축제 육성

(사업담당자 : 관광산업과 강지태 주무관, 연락처 : 02-3704-9753)

다.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1) 개 관

□ '06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470ha를 추진하여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므
로서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
 - 경관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10a당 170천원 직불금 지급
- 농촌지역의 자원별, 권역별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 콘텐츠를 활용한 체계적
개발에 필요한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 농촌어메니티 자원 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체계 개발
-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마을) 모델하우스 건립·전시, 한국농촌경관주택 건축
대전 개최 등을 통해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홍보·보급 추진과 은퇴도시민,
농산어촌 지역주민 등 수요자 관심 제고
- 자생식물단지 2개소, 생태숲 21개소를 조성하여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특색있는 숲을 지속 조성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의 신규 도입, 기존 시책조정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
 - 농산어촌 경관의 유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농촌경관지표 제정 기초작업 수행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하므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경작지 소재 읍·면거주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
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
 - 173천ha(밭, 과수원, 초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ha당 밭 400천원, 초지 200천원 지급

□ 예산 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경관보전직불	600	-	-	-	600	240	-	840
어메니티 모델 개발	-	-	400	-	400	-	-	400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경관주택 발굴	-	-	-	-	-	-	550	550
자생식물식재 및 생태숲조성	-	12,320	500	-	12,820	12,820	-	25,640
조건불리지역 직불	52,306	-	-	-	52,306	22,019	-	74,325

□ '07년도 추진 방향

- 경관보전직불제는 시범사업 기간('05~'07)임을 감안 '06수준(470ha)을 시행
- 개발된 어메니티 계획모델과 현장보급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로 지자체 지역 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주택)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산 어촌 경관주택 건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의 개발 및 보급 추진
-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숲 조성을 지속 추진
- 농산어촌 경관시책 추진 및 경관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농산어촌 경관지표 제정 등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추진
 - 경관보전 관련시책을 지역주민 참여와 지자체 주도의 아름다운 농산어촌 가꾸기로 업그레이드 추진
-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조건불리지역 적용 경사도 : ('06) 경사도 14% → ('07) 7%

(2) 세부과제

< 4-3-1-0. 경관보전 직불제(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 시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
 -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거양

○ 사업추진방향

- '05~'07 기간중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방안을 보완한 후 '08년 이후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주민들이 스스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마을계획을 심사·평가한 후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업인
- 사업추진절차 : 대상지역 신청(주민→시·군→시·도→농림부) →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 → 경관보전협약 체결(지자체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연접) 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사업 규모 : 470ha
 - *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후 집단화 규모, 경관관리계획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 사업 주요내용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
 - * 직 불 금 : 170천원/10a(국고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07년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별 확대 추진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600	-	-	-	600	240	-	840
2006	600	-	-	-	600	240	-	840
(증△감)	-	-	-	-	-	-	-	-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시범사업 기간임을 감안하여 '06년 수준(470ha) 시행
- 지속적으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검토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한준희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1)

<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의 농촌어메니티 수요에 대응한 수용여건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산어촌지역 종합 개발 및 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한 자원화·소득화 기술 지원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원별, 권역별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 콘텐츠를 활용한 체계적 개발에 필요한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06~'09)
- 농촌어메니티 자원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체계 개발
- 개발 모델의 효과적인 현장 보급 및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한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5153호)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12호) 및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54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 및 제 8조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3유형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기반 기술 개발
- 지원금액 및 형태 : 4억,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촌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 3유형
 - 농촌어메니티 자원 기반형 공간정비시스템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체계 개발
 - 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을 위한 자원의 시각화 기법 개발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	-	400	-	400	-	-	400
(증△감)	-	-	순증	-	400	-	-	4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그동안의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 연구의 성과와 진행중인 농촌어메니티 자원도('05-'09년까지 600지역 1,230읍면 완료 계획)를 활용하여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확대
- 개발된 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
- 개발된 어메니티 계획모델과 현장보급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로 지자체 지역 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강방훈 연구사, 연락처 : 031-299-0513)

<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주택이 농산어촌 경관의 유지·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전시 및 관련 콘테스트 등을 통하여 은퇴도시민, 농산어촌 주민 등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실제 수요자가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축하도록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

○ 사업내용

-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마을) 모델하우스 건립·전시를 통한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홍보·보급 추진
 - 농어촌연구원내 3천평 규모(대지 3천평, 50평 규모 주택 약 10동)의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마을) 모델하우스 조성·전시
- 2006한국농촌경관주택 건축대전(가칭)을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은퇴도시민, 농산어촌지역 주민 등 수요자의 관심을 제고
 - 국내외 건축가들의 지명 초청전 및 작품설명회, 일반인 대상 농산어촌 경관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농산어촌 경관주택 관련 심포지움 등 실시
- 사업비 : 1,650백만원

- 주요 사업계획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기반 조성('06) : 200백만원
 ※ 모델하우스에 건축되는 주택은 민간자본 유치 추진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유지관리('06~'10) : 1,000백만원(매년 200백만원)
- 건축대전 행사비용('06) : 150백만원
- 표준설계도 개발 비용('07) : 300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0년(총 5년)
- 재원형태 : 한국농촌공사 자체부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	-	-	-	-	-	-
2006	-	-	-	-	-	-	550	550
(증△감)	-	-	-	-	-	-	550	550

□ '07년도 추진계획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단지 내에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주택) 종합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도시민 등에게 농산어촌 경관주택 건축을 위한 상담 실시
- 은퇴도시민, 전원마을 정주 희망자 등을 모집하여 농어촌어촌 경관주택 모델 하우스 견학 실시
- 2006 한국농촌경관주택 건축대전(가칭)의 초청작가전 및 공모전의 설계 아이디어를 활용한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의 개발 및 보급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박종민 토목사무관, 연락처 : 02-500-1966)

< 4-3-4-0. 자생식물 단지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자생식물자원의 보전과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 복원으로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식물자원의 산업화 촉진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 산림문화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공간 수요 충족

○ 사업추진방향

-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학술연구와 자연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업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3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산림청 → 시·도) → 사업시행(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50ha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생태숲
 - 1ha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자생식물단지

- 사업 규모
 - 자생식물단지 : 2개소(설계 1, 조성 1) 자생식물단지('05년까지 -)조성
 - 생태숲 : 21개(조성 중) 생태숲('05년까지 16개 조성 중)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생태숲 : 123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자생식물단지 : 5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해결된 개소
- 사업 주요내용
 - 관찰로, 전문소원, 시험포지 시설 등
- 시도별 배분내역
 - 생태숲

(단위 : 개소)

계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	1	1	2	2	2	3	2	4	3	1

- 자생식물단지

(단위 : 개소)

계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	-	-	-	-	-	-	1	1	-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생태숲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7,439	-	-	7,439	7,439	-	14,878
2006	-	12,320	-	-	12,320	12,320	-	24,640
(증△감)	-	4,881	-	-	4,881	4,881	-	9,762

· 자생식물단지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	-	500	-	500	500	-	1,000
(증△감)	-	-	500	-	500	500	-	1,00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학술연구와 자연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숲 등 조성 추진

(사업담당자 : 산림환경보호과 임하수 사무관, 연락처 : 042-481-4246)

<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 경관 관련 연구, 시책개발 및 정책 집행과정을 일관성있는 추진체계로 통합
-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보전·증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강화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의 신규 도입, 기존 시책 조정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
- 농산어촌 경관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지식·정보의 교류·확산 및 홍보 활동을 강화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06년도 추진계획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과 로드맵 마련

- 농산어촌 경관의 유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농촌경관지표 제정 기초작업 수행

○ 지역주민·지자체 등 지역 차원의 경관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삶의질 향상특별법” 제30조에 의한 경관협약 보급·활성화 매뉴얼 마련

○ 경관법 제정 추진(건설교통부)과 관련, 관계부처와 공동 시행령 마련, 농산어촌지역의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등 공동입법 추진

○ 농산어촌 경관관련 연구, 정책개발 및 현장 적용 등 정책추진역량을 조직화

-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연구원등과 공동으로 작업팀 구성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경관시책 추진 및 경관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농산어촌 경관지표 제정 등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 등 기시행중인 관련 시책을 지역주민 참여와 지자체 주도의 아름다운 농산어촌 가꾸기로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정책과 김영준 서기관 , 연락처 : 02-500-2051)

<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 지원
 - 조건불리지역은 낮은 농업생산성과 낮은 소득수준, 지속적인 인구감소,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지원도 부족하여 지역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
-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마을공동기금 조성(보조금중 30%이상) 등을 통해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조건불리지역의 입지조건에 맞고 특색있는 농촌개발 및 활성화 추진

○ 사업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되,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자에게 지급
 - * 단, 경작지와 소재지가 다른 농가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법정리를 포함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직불금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천이행 의무부과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계기 제공
 - 환경보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업생산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 의무 부과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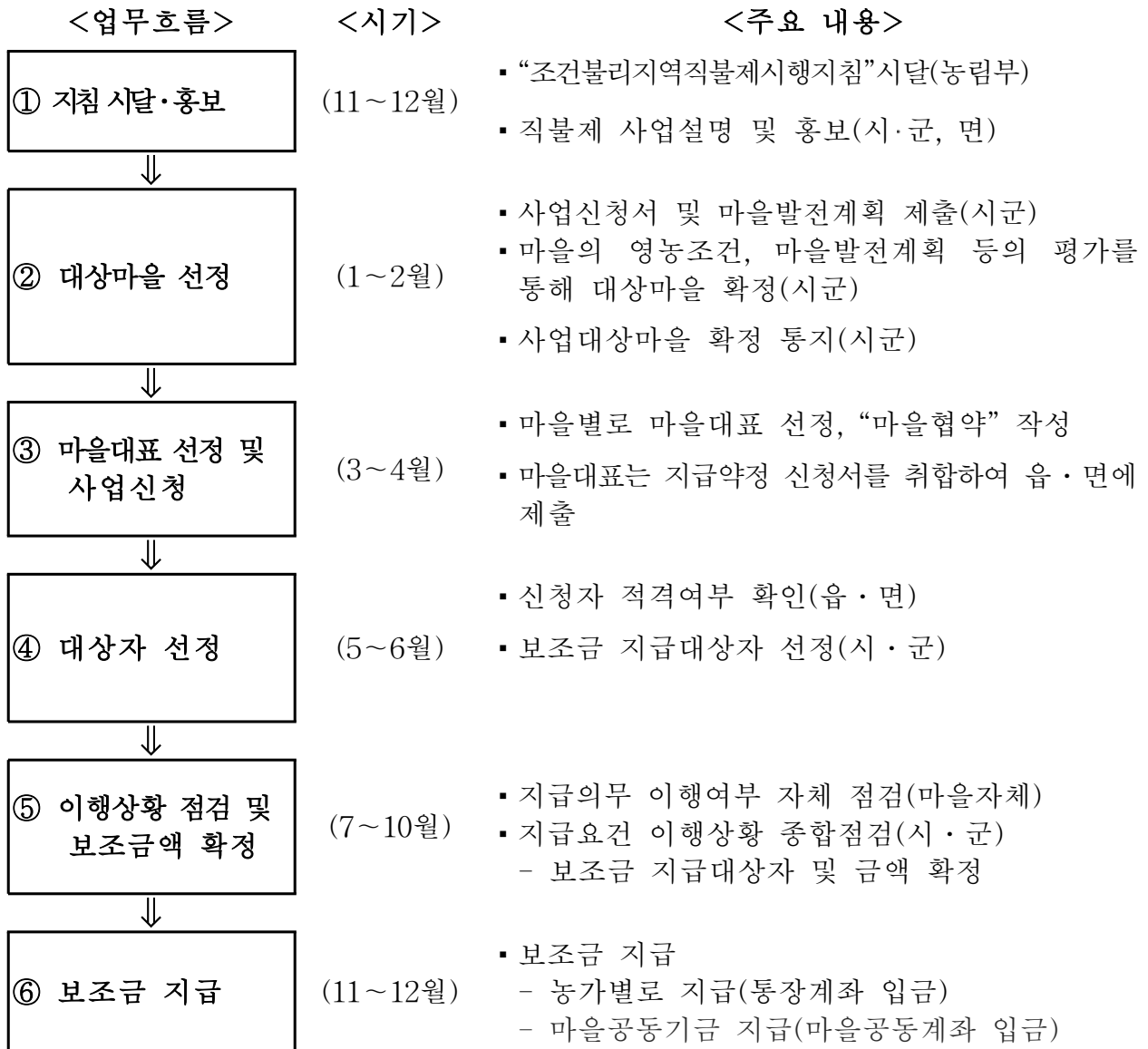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대상 : ① 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내 농지
- ②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내 농지
- ③ 제주 토지이용적성등급 4-5등급내 농지

- 사업규모 : 173천ha(밭, 과수원, 초지)
 -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 제외
- 지급단가 : 밭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 지급요건 : 마을공동기금 조성(보조금 30%이상), 농지관리 의무 등 이행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6,693	19	497	49	919	11,565	4,755	1,128	1,974	8,466	8,499	3,470	5,272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5	12,264	-	-	-	12,264	3,727	-	15,991
2006	52,306	-	-	-	52,306	22,019	-	74,325
(증△감)	40,042	-	-	-	40,042	18,292	-	58,334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경사도 완화 등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추진
 - 경사도 : ('06) 경사도 14% → ('07) 7%
 - 예 산 : ('06) 523억원(173천ha) → ('07) 820억원(299천ha)
 - *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부안에 반영
- 지방비 부담비율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은 현행 30% 유지
-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갱신에 따른 경사도 수정분석과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의 업무추진

(사업담당자 : 농지과 이영식 사무관, 연락처 : 02-500-1672)

라. 도·농교류 활성화

(1) 개 관

□ '06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1사1촌운동은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화
 -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를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 촉진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개발·확충 및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
- 도농교류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교육·훈련, 도시자본 투자유치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도농교류 및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마련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장, 은퇴농장 등 25개 전원마을 조성
- 도시은퇴자들이 농어촌에 살 수 있는 은퇴자 마을의 상품화 및 홍보를 통한 농산어촌 이주 촉진을 위해 「은퇴자마을 조성 콘테스트」 개최
-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추진

□ 예산 내역

< 2006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 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	-	26,000	-	-	26,000	5,200	-	31,200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2,205	-	-	-	2,205	-	-	2,205
도농교류센터 운영	755	-	-	-	755	-	-	755

□ '07년도 추진 방향

- 1사1촌운동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 전경련 등 민간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개발·확충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다양한 도농교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전원마을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종합하여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시행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포함한 정부부처간 지역개발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통합지침」 제정·시행 검토
-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은퇴 도시민 등의 농촌인구유입 효과를 분석하고 전원마을에 유입된 도시민들이 해당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2) 세부과제

< 4-4-1-0. 1사1촌 운동(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1사1촌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전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 사업추진방향

-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과 참여를 독려
- 중장기적으로 도농교류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

-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운영하여 1사1촌운동 발전전략 마련
- 실태점검 강화 등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 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화

○ 홍보 및 마케팅, 유공자시상 등을 통한 도농상생 분위기 확산

- 도농교류 활성화 및 참여를 위해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도농교류·우수마을 등 정부포상실시, 농촌체험행사·수기공모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우수사례집 제작·홍보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다양한 형태의 자매결연 추진
 - 1사다촌, 다사1촌, 1학교1촌 등 다양한 교류 추진
- 도농교류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충
 - 농협주관으로 농촌마을 지도자 교육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 농촌사랑지도자 교육원(농협대) 신설 운영
 - 농촌마을대표, 1사1촌 관련 기업·단체 및 도시소비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총 2만명, '06년도 1만명, '07년도 1만명)
- 예산 : 비예산사업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 전경련 등 민간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이영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0)

< 4-4-2-0.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민이 농산어촌에 주택을 가지고 노후, 여가를 농산어촌에서 보내도록 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마련(전원마을조성사업)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장, 은퇴농장 등 조성
- 도시은퇴자들이 농어촌에 살 수 있는 은퇴자 마을의 상품화 및 홍보를 통한 농산어촌 이주 촉진을 위해 「은퇴자마을 조성 콘테스트」 개최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은퇴자마을조성 콘테스트 개최 방안 방침

□ '06년도 추진계획

<전원마을조성사업>

○ 사업추진계획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사업추진절차
 - 후보지선정 → 대상지 신청 및 선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 지정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준공 →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기간 : 2004~계속

- 사업규모

- '06년도는 25개 전원마을에 조성을 추진하고, '13까지 전국적으로 300지구의 전원마을 조성

구 분	계	'04	'05	'06	'07~'13
사업량(지구수)	300	2	28	25	245

※ 사업량은 착수 기준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조건

- 보조사업 : 지구당 10~20억원을 2~3년간 지원
- 용자사업 : 주택신축 호당 3,000만원 이내(5년거치 15년상환)
주택개량 호당 2,000만원 이내(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주요내용

- 전원마을(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동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사면·녹지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보조사업비로 조성
- 은퇴·이주도시민 등 전원마을 입주예정자는 보조사업비로 조성된 주거 단지에 거주할 주택을 본인 부담으로 건축한 후 거주

○ 예 산

- 사업기간 : 2004~계속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사유담보합)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	27,710	-	-	27,710	2,855	-	30,565
2006	-	26,000	-	-	26,000	5,200	-	31,200
(증△감)	-	△1,710	-	-	△1,710	2,345	-	635

<은퇴자마을조성 콘테스트>

○ 사업추진계획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협조기관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사업추진절차
 - 콘테스트 참가신청(시·군) → 은퇴자마을 조성계획마련(시·군) → 은퇴자마을 조성계획제출(시·군) → 예비콘테스트(농림부, 시·군) → 콘테스트 참가 준비(시·군) → 콘테스트 개최(농림부, '06.10월경)

○ 사업내용(신규사업)

- 도시 은퇴자들이 이주하여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농촌지역 시·군의 신청을 받아 은퇴자마을조성 콘테스트를 개최·홍보함으로써 은퇴 도시민 등의 농촌지역 거주를 촉진
- 일시 및 장소(잠정) : '06.10.11~14, 코엑스
- 규모(잠정) : 실내 1,600여평(340부스)
- 참가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 시·군, 한국농촌공사, 기타 관계부처청 등
 - ※ 은퇴자마을 조성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공동화 개선에 있으므로 인구의 집중화·과밀화가 심각한 수도권 지역 소재 농촌지역 시·군은 제외

○ 예산

- 콘테스트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로 조달하되, 지자체별 전시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 '07년도 추진계획

-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종합하여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시행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포함한 정부부처간 지역개발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통합지침」 제정·시행 검토
-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은퇴 도시민 등의 농촌인구유입 효과를 분석하고 전원마을에 유입된 도시민들이 해당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박종민 토목사무관, 연락처 : 02-500-1966)

<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붐 조성
- 도시·농촌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에 대한 참여 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개발·확충
-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속적인 전개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등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농촌주민, 도시민 등
- 사업규모 :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추진
- 사업주요내용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 체험기 공모전을 매년 개최
 - 농촌을 방문하고 이해하며, 농업·농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 제공

-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을 정례화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홍보
- 1사1촌 운동,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단체 및 개인을 선정·포상하여 자긍심 고취 및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 농림어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여름 휴가철 집중 홍보를 통해 도농교류 사회적 붐 조성 및 새로운 여가·휴가 문화의 정착계기 마련
- 농업인과 도시민간 상호교류를 통해 이해증진과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농·소·정협력사업 추진
- 소비자단체, 여성농업인단체 등 주관으로 도시소비자, 청소년 등의 농업·농촌현장체험 등 추진

○ 예산

- 사업기간 : '03년이후 (계속) (* 농·소·정협력사업은 '99년이후)
- 재원형태 : 정액 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1,774	-	-	-	1,774	-	-	1,774
2006	2,205	-	-	-	2,205	-	-	2,205
(증△감)	431	-	-	-	431	-	-	431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개발·확충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이영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0)

<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관광·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농외소득의 증대 및 농촌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
 -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교육·훈련, 도시자본 투자유치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도농교류 및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도농교류센터 운영

- 사업주요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추진 등 마을 사후관리
-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농촌체험행사, 농촌에 내집갓기 운동, 그린투어 포럼,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농촌휴가캠페인, 농산어촌체험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
-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등 1사1촌 운동 추진 지원
- 1사1촌 운동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대상사업 발굴·지원, 정보제공 등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촉진
-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3년이후 (계속)
- 재원형태 : 정액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305	-	-	-	305	-	-	305
2006	755	-	-	-	755	-	-	755
(증△감)	450	-	-	-	450	-	-	450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다양한 도농교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사업담당자 : 농촌진흥과 김성률 주무관, 연락처 : 02-500-1972)

< 4-4-4-0. 도농교류촉진법(농림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1사1촌자매결연 및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농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가능

○ 사업추진방향

- 농촌체험관광 및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이 민간주도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부여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6년도 추진과제

○ 입법추진계획

- 입법추진주체 : 농림부
- 입법계획 : 법안마련('06.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06.7) → 규제 및 법제처심사 등('06.11) → 국회제출('06.12)

○ 주요 법안내용(안)

-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에 대한 특례 및 지원규정 마련
- 도농자매결연 및 교류협력활동에 대한 지원확대
- 귀농·귀촌희망 도시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도농교류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및 자격제도 도입
-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 예산 : 비예산사업

□ '07년도 사업 기본방향

- 법 제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정책과 김민아 사무관, 연락처 : 02-500-1953)